

연구보고서

#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확보 방안 연구(1) - 보육시설 운영업을 중심으로 -

임진석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요 약 문

### 연구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1월

### 핵심 단어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연구과제명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관리 체계 확보 방안 연구(1)

### 1. 연구 배경

- 최근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업종 중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통계청) 기준 전국에 약 40,00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성행(盛行) 중임
- 하지만 대부분이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2018년(통계청) 기준 약 3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의 종사자 약 146만 명 중 약 33만 명(약 23%)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대부분이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없고 안전 담당자 부재로 관련 종사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리고 약 15개의 관계 법령과 약 8개의 소관부처 등에서 소관 업무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의 주체는 보육(영유아)

중심이고, 보육 종사자의 안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육 종사자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원인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 2. 주요 연구내용

- 보육시설 운영업의 특성 및 특수성
- 보육시설 운영업의 설립유형, 종사형태
- 보육시설 운영업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종사자 안전 관련 법적 근거 검토
- 국외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 관련 법적 근거 및 내용 검토
-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
-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관리 실태 분석

## 3. 연구 활용방안

- 직접적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보건 역할과 기관 협업 차원의 역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차원의 역할,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신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진행
- 공단 본부 사업의 영역 확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과 관련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확보 및 보호 방안 마련
- 산업재해 예방정책 추진에 기여

####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임진석 과장
  - ☎ 052) 703-0846 (연구책임자 전화)
  - E-mail : ido0304@kosha.or.kr



# 차 례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목적 .....   | 1  |
|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 2  |
| 1) 연구의 필요성 .....  | 2  |
| 2) 연구방법 .....   | 3  |
| 3) 연구추진체계 .....   | 4  |
| 3.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 4  |
| 1) 국내 선행연구 .....  | 4  |
| 2) 국외 선행연구 .....  | 12 |
| 3) 소결 .....   | 15 |
| II.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찰 .....                       | 17 |
| 1. 한국표준 산업분류체계상 정의 및 종류 .....                             | 17 |
| 1)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17 |
| 2) 중분류 : 사회복지 서비스업(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18 |
| 3) 소 및 세분류 : 보육시설 운영업(직장 보육시설 운영) .....                   | 18 |
| 2. 한국표준 직업분류체계상 정의 및 종류 .....                             | 19 |
| 1) 대분류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                      | 19 |
| 2) 중분류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돌봄·보건 및<br>개인 생활 서비스직 ..... | 20 |
| 3) 소 및 세분류 : 보육교사, 보육 및 교사보조 서비스 종사원 .....                | 20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정의 및 종류 .....                           | 22 |

|  |           |
|--|-----------|
| 1)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                   | 23        |
| 2) 민간(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보육시설(어린이집) .....    | 23        |
| 3) 가정 보육시설(어린이집) .....                     | 24        |
|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                     | 24        |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및 종류 .....        | 24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             | 24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종류 .....             | 25        |
|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 26        |
| 1) 설립근거 및 목적 .....                         | 26        |
| 2) 가입대상 및 공제료 납부기준 .....                   | 27        |
| 3) 연혁 .....                                | 27        |
| 4) 주요 사업 및 내용 .....                        | 29        |
| 6. 소결 .....                                | 35        |
| <br>                                       |           |
| <b>Ⅲ.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b>    | <b>36</b>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법적 근거 .....       | 36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관리 법제 .....            | 37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안전교육 법제 .....           | 44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치 및 실내시설 설비 법제 .....    | 45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 .....  | 55        |
| 1) 헌법 .....                                | 55        |
| 2) 근로기준법 .....                             | 56        |
| 3) 산업안전보건법 .....                           | 60        |
| 3. 국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제도 ..... | 70        |
| 1) 호주 .....                                | 70        |

|   |           |
|---|-----------|
| 2) 미국 .....                                   | 75        |
| 3) 스웨덴 .....                                  | 79        |
| 4) 네덜란드 .....                                 | 80        |
| 4. 소결 .....                                   | 81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        | 81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관련 법적 검토 결과 .....    | 86        |
| 3) 산재은폐에 대한 검토 결과 .....                       | 86        |
| <b>IV.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현황 .....</b>     | <b>88</b> |
| 1. 기타 사업(대) 종사자 재해 현황 .....                   | 88        |
| 2. 서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 재해 현황 .....                  | 89        |
| 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중) 종사자 재해 현황 .....          | 91        |
|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처리 현황 .....          | 92        |
| 1) 2014년~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감소 현황 ..... | 93        |
| 2)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현황 .....      | 94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재율 .....                   | 97        |
| 5.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           | 99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           | 99        |
| 2) 발생형태별 대표 재해사례 .....                        | 109       |
| 6. 소결 .....                                   | 116       |
| 1)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대상과 산재보험 청구대상 비교 .....        | 116       |
| 2)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와 처리건수 동일 여부 .....             | 117       |
| 3)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118       |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업재해 발생 유형 분석 결과 .....      | 118       |

|   |     |
|---|-----|
| <b>V.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현황</b> .....             | 125 |
| 1. 보육통계상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              | 125 |
| 1)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현황 .....                | 125 |
| 2)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 127 |
|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계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br>현황 ..... | 131 |
| 1) 고용보험의 의미 .....                                 | 131 |
| 2) 산재보험의 의미 .....                                 | 132 |
|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가입 현황 .....        | 134 |
| 3. 소결 .....                                       | 136 |
| <br>  |     |
| <b>VI.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조사 현황</b> .....           | 137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실태조사 개요 .....               | 137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               | 141 |
| 1) 근로조건 .....                                     | 141 |
| 2) 근로계약 .....                                     | 148 |
| 3)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관련 .....                         | 152 |
| 4) 근로조건 등에 고지 관련 .....                            | 153 |
| 5)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 .....                 | 156 |
| 6) 근로자 안전 및 건강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재 배치 여부 .....          | 157 |
| 7) 근로환경(업무환경) .....                               | 160 |
| 8) 보육교사 건강상태 및 업무상 재해 관련 .....                    | 180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심층면담 결과 .....                   | 195 |
| 1) 어린이집 재해 발생 위험성 .....                           | 195 |
| 2) 근로환경 및 안전교육 실태 .....                           | 198 |

|  |            |
|--|------------|
| 3) 심층면담 소결 .....                               | 203        |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           | 205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개요 .....        | 205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결과 .....        | 206        |
| 5. 소결 .....                                    | 209        |
| <br>   |            |
| <b>VII.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b>          | <b>214</b> |
| 1. 산재보험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제도의 이원화에 따른<br>문제 ..... | 214        |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재율 .....                    | 214        |
| 2) 추가적인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 .....                    | 216        |
| 3) 소결 .....                                    | 217        |
| 2. 정부 부처 요청사항 .....                            | 218        |
| 1) 고용노동부 .....                                 | 218        |
| 2) 보건복지부 .....                                 | 218        |
| 3.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                | 219        |
| 4. 안전보건공단 차원 .....                             | 220        |
| 1) 단기(안) .....                                 | 220        |
| 2) 중장기(안) .....                                | 223        |
| 5. 기관 협업 차원 .....                              | 225        |
| 1) 안전보건공단과 육아정책연구소 .....                       | 225        |
| 2) 안전보건공단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 225        |
|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컨설팅) 모형 개발 .....               | 226        |
| 4) 대체교사 지원 .....                               | 226        |

|                 |     |
|-----------------|-----|
| VIII. 결 론 ..... | 227 |
| 참고문헌 .....      | 229 |
| ABSTRACT .....  | 235 |
| 부록 .....        | 237 |

## 표 차 례

|  |    |
|--|----|
| <표 I-1> 보육시설 운영업 실태 연구보고서 현황 .....                       | 5  |
| <표 I-2> 보육시설 안전 프로그램 및 매뉴얼 연구보고서 현황 .....                | 7  |
| <표 I-3> 특수형태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 8  |
| <표 I-4> 취약계층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 9  |
| <표 I-5> 보육교사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 9  |
| <표 I-6> 업무로 인한 상해 여부(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 10 |
| <표 I-7>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사고 처리 실태<br>(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 11 |
| <표 I-8> 병의원 이용시 어려운 점(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 12 |
| <표 I-9> 보육 교사 관련 물리적 환경기준 .....                          | 12 |
| <표 II-1>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보육시설 운영업종 현황 .....                   | 18 |
| <표 II-2>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보육시설 종사자 분류 현황 .....                 | 22 |
| <표 II-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요 연혁 .....                          | 28 |
| <표 II-4> 컨설팅 분야별 주요점검 사항 .....                           | 34 |
| <표 II-5> 연도별 공모사업 .....                                  | 34 |
| <표 III-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적 근거 현황 .....            | 37 |
| <표 III-2> 「영유아보육법」 안전 관련 법령 .....                        | 39 |
| <표 III-3> 「아동복지법」 안전 관련 법령 .....                         | 41 |
| <표 III-4> 「도로교통법」 안전 관련 법령 .....                         | 43 |
| <표 III-5>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관련 법령 .....                       | 44 |
| <표 III-6> 「영유아보육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 47 |
| <표 III-7> 「건축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 50 |

|  |     |
|--|-----|
| <표 III-8> 「소방시설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 52  |
| <표 III-9> 「환경보건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 54  |
| <표 III-10>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br>(제 2 조의 2 제 1 항 관련) ..... | 63  |
| <표 III-1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시간 및<br>조건 .....             | 71  |
| <표 III-1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br>처벌 규정 .....         | 72  |
| <표 III-13> 영유아 돌봄에서 위험 업무 .....                                  | 74  |
| <표 IV-1> 2014 년~2018 년 기타 사업 종사자 재해 현황 .....                     | 88  |
| <표 IV-2> 2013-2017 년도 서비스 관련업종 산업재해 현황 .....                     | 89  |
| <표 IV-3> 2014 년~2018 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재해<br>현황 .....         | 91  |
| <표 IV-4> 2014 년~2018 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현황 ...                   | 93  |
| <표 IV-5> 2014 년~2018 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현황 ...                   | 94  |
| <표 IV-6> 연도별 보육교직원 상공 급여청구 건수 .....                              | 97  |
| <표 IV-7> 2018 년 기준 종사자수 및 산재건수 등 현황 .....                        | 98  |
| <표 IV-8> 연도별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 신청 현황 ...                     | 99  |
| <표 IV-9> 2013 년~2017 년 연도별 재해 건수 .....                           | 100 |
| <표 IV-10> 요양일 수 별 재해 현황 .....                                    | 101 |
| <표 IV-11> 연령별 재해 현황 .....  | 102 |
| <표 IV-12> 연령 별 재해 발생형태 현황 .....                                  | 103 |
| <표 IV-13> 연령별 질병이환자 발생 유형 .....                                  | 104 |
| <표 IV-14>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 .....                                    | 104 |
| <표 IV-15> 기인물별 재해 현황 .....                                       | 105 |

|  |     |
|--|-----|
| <표 IV-16>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                                    | 107 |
| <표 IV-17> 질병이환자 발병 유형 .....                                    | 108 |
| <표 IV-18> 넘어짐 재해사례 .....                                       | 110 |
| <표 IV-19> 근골격계 재해 사례 .....                                     | 111 |
| <표 IV-20> 부딪힘 재해 사례 .....                                      | 112 |
| <표 IV-21>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례 .....                                | 113 |
| <표 IV-22> 절단·베임·찢림 .....                                       | 114 |
| <표 IV-23>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                                 | 115 |
| <표 V-1>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현황<br>(보건복지부 보건통계) ..... | 126 |
| <표 V-2>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br>(보건복지부 보건통계) .....  | 128 |
| <표 V-3>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중 원장 제외 현황<br>(보건복지부 보건통계) .....     | 130 |
| <표 V-4>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                          | 135 |
| <표 V-5>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중 원장 제외 현황<br>(보건복지부 보건통계) .....     | 135 |
| <표 VI-1> 시설유형별 모표본 .....                                       | 138 |
| <표 VI-2> 표본 설계 및 연구의 최종표본 .....                                | 138 |
| <표 VI-3> 표본 설계 및 연구의 최종표본 .....                                | 139 |
| <표 VI-4> 표본실태조사 항목 .....                                       | 139 |
| <표 VI-5> 심층면담 현황 .....   | 140 |
| <표 VI-6> 총 근로시간 .....  | 141 |
| <표 VI-7> 1일 총 휴게시간 .....                                       | 143 |
| <표 VI-8> 점심식사 시간 .....   | 144 |

|  |     |
|--|-----|
| <표 VI-9> 휴게 시간 .....                               | 145 |
| <표 VI-10> 휴게 장소 .....                              | 146 |
| <표 VI-11> 당직 근로시간 .....                            | 147 |
| <표 VI-12> 한달 평균 야근한 일 수 .....                      | 148 |
| <표 VI-13> 근로 계약 유형 .....                           | 149 |
| <표 VI-14> 비정규직 계약 기간 .....                         | 150 |
| <표 VI-1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 151 |
| <표 VI-16> 계약서 명시 항목 .....                          | 152 |
| <표 VI-17> 가입된 보험 및 공제 내용 .....                     | 153 |
| <표 VI-18>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설명 여부 .....                   | 154 |
| <표 VI-1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br>제공 정도 .....  | 155 |
| <표 VI-20> 제공 받은 안전과 건강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          | 156 |
| <표 VI-21>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 .....           | 157 |
| <표 VI-22> 근로자 안전 및 건강 관련 안내 책자 및<br>교재 배치 여부 ..... | 158 |
| <표 VI-23> 배치된 안내 책자 및 교재를 활용한 설명 교육 여부 ....        | 159 |
| <표 VI-24> 직업의 위험도 평가 .....                         | 160 |
| <표 VI-25> 노출정도: 심한 소음 .....                        | 161 |
| <표 VI-26> 노출정도: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              | 162 |
| <표 VI-27> 노출정도: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킴 .....              | 163 |
| <표 VI-28> 노출정도: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킴 .....                 | 164 |
| <표 VI-29> 노출정도: 계속 서 있는 자세 .....                   | 165 |
| <표 VI-30> 노출정도: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              | 166 |
| <표 VI-31> 노출정도: 화가 난 부모를 상대 .....                  | 167 |

|   |     |
|---|-----|
| <표 VI-32> 노출정도: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 상대 .....     | 168 |
| <표 VI-33> 노출정도: 정서적 불안 상황 .....             | 169 |
| <표 VI-34> 업무상황: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 걱정함 .....    | 170 |
| <표 VI-35> 업무상황: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함 ... | 171 |
| <표 VI-36> 업무상황: 업무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 부족 .....     | 172 |
| <표 VI-37> 업무상황: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 173 |
| <표 VI-38> 업무상황: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음 .....         | 174 |
| <표 VI-39> 업무상황: 감정을 숨기고 일함 .....            | 175 |
| <표 VI-40> 업무수행 중 폭력 .....                   | 176 |
| <표 VI-41> 업무수행 중 폭력 : 언어폭력 주체 .....         | 178 |
| <표 VI-42> 업무수행 중 폭력: 성적관심 주체 .....          | 178 |
| <표 VI-43> 업무수행 중 폭력: 위협 주체 .....            | 179 |
| <표 VI-44> 업무수행 중 폭력: 모욕적 행동 주체 .....        | 180 |
| <표 VI-45> 건강상태 .....                        | 181 |
| <표 VI-46>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 1 .....               | 182 |
| <표 VI-47>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 2 .....               | 182 |
| <표 VI-48>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 경험 .....          | 183 |
| <표 VI-49> 업무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결근 경험 ...  | 184 |
| <표 VI-50>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           | 185 |
| <표 VI-51>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 .....   | 186 |
| <표 VI-52>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날 .....            | 187 |
| <표 VI-53> 업무상 재해 경험 여부 및 횟수 .....           | 188 |
| <표 VI-54> 업무상 재해 발생형태 .....                 | 189 |
| <표 VI-55> 업무상 재해 치료기간 .....                 | 190 |
| <표 VI-56> 업무상 재해 처리방법 .....                 | 191 |

|   |     |
|---|-----|
| <표 VI-57> 업무상 재해 후 근무 지속 여부 .....                           | 192 |
| <표 VI-58>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 .....                                | 193 |
| <표 VI-59> 근무 시 병의원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 .....                       | 194 |
| <표 VI-6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9 조 별표 1 설치기준 .....               | 206 |
| <표 VII-1> 2014 년~2018 년 산업재해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상해<br>처리 건수 ..... | 215 |
| <표 VII-2> 2018 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추정 산재율<br>현황 .....      | 216 |
| <표 VII-3> 연도별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 신청건수<br>현황 .....        | 217 |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도별 사업 범위 .....                                  | 32  |
| [그림 II-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도별 사업 범위 .....                                  | 32  |
| [그림 II-3] 컨설팅 진행 절차 .....   | 33  |
| [그림 III-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체계 .....                             | 36  |
| [그림 III-2] 호주 교육과 서비스 영역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지침<br>개요 .....                  | 73  |
| [그림 III-3] 아동돌봄센터 대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                                  | 78  |
| [그림 III-4] 3개 부처 관리 주체, 유형, 법적 근거 현황 .....                            | 82  |
| [그림 III-5] 2개 부처 관리 주체, 유형, 법적 근거 현황 .....                            | 82  |
| [그림 III-6] 설립주체, 형태, 관리 주체 현황 .....                                   | 83  |
| [그림 III-7] 규제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현황 .....                              | 85  |
| [그림 IV-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어린이집 산재 비율 .....                              | 91  |
| [그림 IV-2] 2014년~2018년 기타사업(대) 및 보건 및 사회복지<br>서비스업(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92  |
| [그림 IV-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및<br>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 .....        | 95  |
| [그림 IV-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서류<br>제출안내 .....                    | 96  |
| [그림 IV-5] 연도별 급여청구 및 산업재해 건 수 .....                                   | 98  |
| [그림 IV-6] 201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추정 산재율 .....                                | 98  |
| [그림 IV-7] 연도별 재해 건수 그래프(2013년~2017년) .....                            | 100 |
| [그림 IV-8] 요양일수별 재해 현황(2013년~2017년) .....                              | 101 |

|  |     |
|--|-----|
| [그림 IV-9] 연령별 재해 현황 .....                            | 102 |
| [그림 IV-10]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 .....                       | 105 |
| [그림 IV-11] 기인물별 재해 현황 .....                          | 106 |
| [그림 IV-11]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                         | 108 |
| [그림 IV-13] 질병이환자 발병 유형 .....                         | 109 |
| [그림 IV-14] 산업재해 발생형태 및 기인물 연계성 분석 결과 .....           | 120 |
| [그림 IV-15] 산업재해 직업병 및 요양일수·연령 연계성<br>분석 결과 .....     | 122 |
| [그림 IV-16] 산업재해 요양일수, 연령, 규모 연계성 분석 결과 .....         | 124 |
| [그림 V-1] 2014 년~2018 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설립 유형별<br>현황 ..... | 127 |
| [그림 V-2] 2014 년~2018 년 보육교직원 현황 .....                | 129 |
| [그림 V-3] 2014 년~2018 년 보육교직원 원장 제외 현황 .....          | 130 |
| [그림 VI-1] 근무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율 .....                     | 211 |
| [그림 VI-2]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           | 213 |
| [그림 VII-1] 연도별 급여청구 건수 및 산업재해 건수 .....               | 215 |
| [그림 VII-2] 2018 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추정<br>산재율 ..... | 216 |
| [그림 VII-2]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로드맵 .....             | 220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現 정부의 무상보육(0세~5세까지) 추진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취학전(0세~5세) 영유아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보육하는 시설로서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비거주형 아동보호시설로 대부분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교사까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도록 명시되었으며, 대부분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어려운 실정이고, 휴게 시간 보장에 따른 인력수급 조차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증가 되면서, 전국에 약 40,000개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종사자\*(보육교사 등)도 약 25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 종사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규정<sup>1)</sup>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 보육교직원 임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별표3] 제2호 보육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1) 2021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규정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업내 종사하는 모두가 직접 적용대상자임

보육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 약 17,605개소였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수가 2017년 약 40,238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종사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약 33만 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특성상 종사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담당자 부재로 체계적인 종사자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이면서,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안전을 담보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일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종에 대한 정확한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무상보육(0세~5세까지) 추진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약 17,605개소였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수가 2017년 약 40,238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종사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약 33만 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업의 특성상 관련 종사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며, 보육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95% 이상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어, 종사자 안전관리 전문가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종사자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종 종사자(보육교사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방법

### ■ 자체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 및 조사
-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별 소관법률 검토 및 분석
- 안전보건 관련법을 비롯한 문헌분석 및 조사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설 현황 파악, 실태조사 실시
  - 전국단위 약 40,000개소 중 약 200~300여 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 표본 실태 파악을 통한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출
- 안전재해 사고유형 분석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마련
  - 유사 업종 종사자 안전관리 매뉴얼 등 분석 및 검토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 부분위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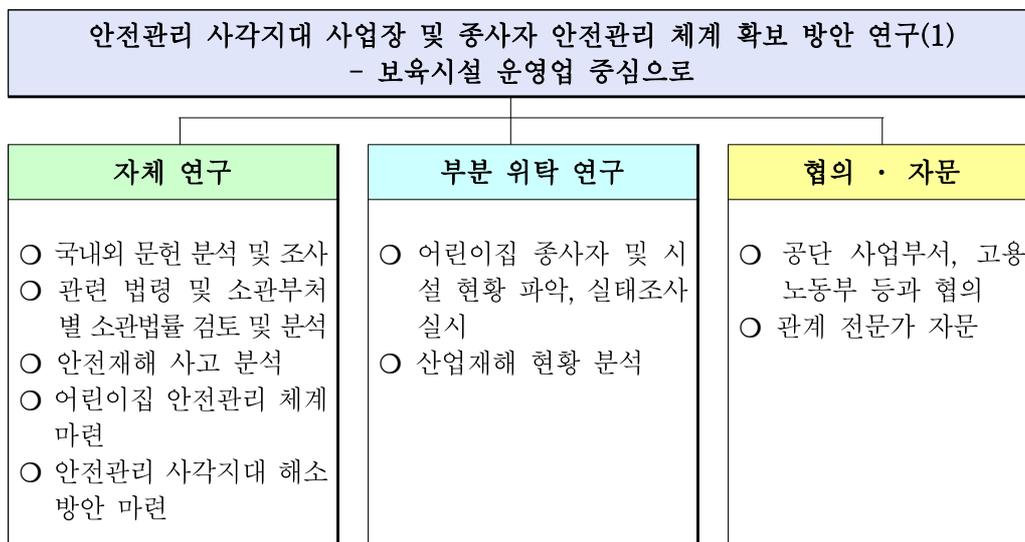
- 전국단위 약 40,000개소 중 약 200~300여 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 표본 실태 조사 및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심층면담 15명 실시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및 종사 시설 검토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중 약 95%를 차지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의 약 10% 수준인 30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환경 및 종사자 안전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보육교사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 파악하기 위한 표본 실태조사를 기반하여,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여부 및 해소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아래 연구추진체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3) 연구추진체계



## 3.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1) 국내 선행연구

2004년~2018년까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보육시설(어린이집) 실태 관련

2004년~2018년까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 선행연구(총 9건)을 살펴

본 결과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 직원 등)를 제외한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관리 실태만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1>과 같다.

**<표 I-1> 보육시설 운영업 실태 연구보고서 현황**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주요내용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1  | 어린이 실내 활동<br>공간 실태조사 및<br>관리대책 | - 위해물질 실태조사<br>- 실내 환경 종합 측정 가이드라인<br>- 환경안전관리 대책  | 2010.<br>11  | 한국환경<br>공단       |
| 2  | 2009 전국보육<br>실태조사              | - 보육시설 운영실태<br>- 영유아 현황<br>- 보육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관리   | 2009.<br>10  | 보건<br>복지부        |
| 3  | 보육시설 영유아<br>건강관리방안 마련<br>연구    | -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세부기준<br>마련<br>-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수행체계 마련<br>-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마련   | 2007.<br>11. | 여성<br>가족부        |
| 4  | 어린이 단체급식의<br>품질개선 연구           | - 영유아단체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br>실태조사<br>- 영유아 단체급식의 영양 및 위생관리<br>현황조사<br>- 영유아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표준화<br>및 위생관리 기준 제시<br>- 영유아 단체급식의 식생활지도 지침서<br>개발<br>- 급식관리 운영지침서 및 위생관리 지<br>침서 개발 | 2007.<br>11. | 식품<br>의약품안전<br>처 |
| 5  | 보육시설 안전<br>심층조사 연구             | - 보육시설 안전관련 문헌분석<br>- 보육시설 안전 심층조사<br>- 보육시설 수요자 조사<br>- 보육시설 공급자 조사<br>- 수요자 중심의 사고예방 대책 및 안전관<br>리 전략 모색   | 2007.<br>10. | 여성가족부            |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주요내용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6  | 보육시설 안전사고<br>예방 및 보상에<br>관한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 문제분석</li> <li>-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도입의 타당성 검토</li> <li>- 보육시설안전공제회 대안 분석</li> <li>-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제도 설계</li> <li>-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도출</li> </ul> | 2006.<br>12. | 여성<br>가족부                  |
| 7  | 지역사회 영유아<br>건강·영양·안전<br>지원시범사업<br>-보육시설을<br>중심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에서의 바람직한 건강·영양·안전 프로그램 형태와 운영방안 모색</li> </ul>  | 2006.1<br>2. | 육아정책<br>개발센터               |
| 8  | 보육시설<br>안전·영양관리<br>실태조사 및 정책에<br>대한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영양 국내 사례조사</li> <li>- 보육시설 안전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시설환경, 안전관리, 건강관리, 영양관리)</li> <li>- 보육시설 안전 및 영양관련 정책 수립</li> </ul>   | 2004.<br>12. | 여성부                        |
| 9  | 어린이<br>안전점검활동<br>평가 및 실천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원년 선포관련 보육환경 안전수준 점검체계 및 질적 향상 도모</li> </ul>   | 2004.<br>2.  | 대통령<br>비서실<br>어린이안전<br>점검단 |

## (2) 보육시설(어린이집)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관련

2003년~2018년까지 보육시설(어린이집)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관련 연구(총 9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건강안전, 신변안전 등의 프로그램과 매뉴얼 위주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앞의 실태조사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2> 보육시설 안전 프로그램 및 매뉴얼 연구보고서 현황**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주요내용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1  | 보육시설<br>안전매뉴얼 연구  | - 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br>- 보육시설 안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   | 2008.<br>11  | 보건복지부                |
| 2  | 통학, 학원버스<br>운전자를 위한<br>주머니 속의<br>교통안전                     | -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사고<br>(사고원인, 행동특성, 사고유형)<br>- 어린이 교통사고 시 조치요령<br>- 통학버스 관련 법규와 안전운행   | 2007.<br>6.  | 도로교통<br>안전관리<br>공단   |
| 3  | 유치원 환경위생<br>관리 매뉴얼  | - 유치원 실내 공기 질의 중요성<br>- 유치원 실내 공기 질 관리<br>- 유치원 실내 공기 질 관리지침                        | 2007.<br>6.  | 서울특별시<br>학교보건<br>진흥원 |
| 4  | 교통안전교육<br>지침  | - 유아의 교통안전교육<br>(보행, 교통수단과 탈 것, 질서)<br>-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br>- 보호자 교통안전교육                | 2006.<br>6.  | 경찰청                  |
| 5  | 안전교육 강사를<br>위한 유아용<br>소방안전교범                              | - 화재안전/ 교통안전과 규칙지키기<br>- 생활안전/ 자연재해/ 자기보호   | 2006.<br>1.  | 서울특별시<br>소방<br>방재본부  |
| 6  | 보육시설<br>운영매뉴얼 및<br>영유아 보육<br>프로그램 개발<br>영유아의 건강 및<br>안전보호 | - 안전(관리, 교육, 응급처치, 사고대비/<br>처리)<br>- 건강보호<br>- 영양위생(급간식, 주방설비, 식품구매<br>위생관리)        | 2005.<br>1.  | 서울특별시                |
| 7  | 보육시설 교통안전<br>및 재난대비교육<br>프로그램                             | - 교통 및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br>- 부모안전교육자료(교통, 재난)<br>- 보육시설 통학버스운전자용 지침서<br>-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2004.<br>9.  | 여성부                  |
| 8  | 안전한 보육환경<br>조성을 위한<br>안전교육 프로그램                           | - 연령별 안전교육프로그램  | 2004.<br>9.  | 서울특별시                |
| 9  | 유아를 위한<br>안전교육자료  | - 유아용 교통안전교육자료<br>-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자료<br>-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리플렛<br>- 유아를 위한 교통안전 그림 자료    | 2003.<br>12. | 교육<br>인적자원부          |

## (3) 특수 고용형태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

2007년~2018년까지 특수 고용형태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표 I-3>과 같이 연구대상에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3과>과 같다.

**<표 I-3> 특수형태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연구대상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1  |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주방장, 조리사, 음식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의료복지 종사자 | 2015.<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2  | 특수형태 근로종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 - 영화 및 방송 종사자                                    | 2012.<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3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형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2) | - 화물운송 종사자, 간병인, 배달원, 대리운전                       | 2008.<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4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 - 레미콘운수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캐디                 | 2007.<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4) 취약계층 관련

2006년~2018년까지 취약계층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표 I-4>와 같이 그 연구대상 중에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취약계층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연구대상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1  | 산업재해 취약계층<br>분석 : 2014년<br>산업안전보건<br>이슈를 중심으로 | - 불안정 근로자, 고령근로자, 지식근로자  | 2014.<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2  | 취약계층근로자의<br>노동시장 및<br>근로환경 특성 연구              | - 여성취업자  | 2011.<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3  | 취약계층 근로자의<br>화학물질<br>유해위험정보 인식                | - 소규모 사업장 정보 전달 관련   | 2008.<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4  | 산재취약계층<br>실태분석                                | -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br>근로자, 여성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br>자영업자, 특수고용 근로자 | 2006.<br>11 | 산업안전<br>보건연구원 |

## (5) 보육교사 관련

2011년~2018년까지 보육교사(돌봄교사, 보육교직원 등) 관련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표 1-5>와 같다. 연구내용상에도 보육교사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보육교사 관련 연구보고서 현황**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연구내용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1  | 어린이집과<br>유치원의 안전관리<br>실태와 개선방안   | - 실내외 안전관리 실태<br>- 교육안전 관리 실태<br>- 안전관리 인식과 교육     | 2015     | 육아정책<br>연구소 |
| 2  | 보육직원(건강,<br>영양, 안전담당)<br>직무분석 연구 | -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법제도<br>- 보육교직원 직무활동 사례<br>- 직무내용과 요구 | 2014     | 육아정책<br>연구소 |

| 구분 | 연구<br>과제명                                | 연구내용  | 발행<br>연도 | 발행처         |
|----|--|---|----------|-------------|
| 3  | 돌봄서비스<br>종사자의 산업재해<br>실태와 보호방안           | -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특성<br>- 돌봄서비스 근로환경<br>- 사회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간병서<br>비스 등 종사자 현황 | 2013     | 한국노동<br>연구원 |
| 4  | 사회서비스 산업<br>노동시장 분석<br>- 돌봄서비스를<br>중심으로- | - 돌봄 노동의 특징과 노동시장<br>-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br>- 근로조건 개선 정책과제 등                 | 2012     | 한국노동<br>연구원 |
| 5  | 돌봄서비스 분야<br>근로조건에 관한<br>연구(2)            | - 설문조사의 통한 노동실태<br>- 심층면접을 통한 노동실태<br>- 관리실태 등                          | 2011     | 한국노동<br>연구원 |
| 6  | 돌봄서비스 분야<br>근로조건에 관한<br>연구(1)            | - 돌봄서비스 노동시장<br>- 근로조건 국제비교<br>- 실태조사                                   | 2011     | 한국노동<br>연구원 |

(6) 보육교사 인권 관련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총 1,643명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업무로 인한 상해 여부’설문결과 지난 1년간 보육교사 업무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응답에서 “있다 951명(64.7%), 없다 519명(35.3%)로 아래 <표 I-6>과 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6> 업무로 인한 상해 여부(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단위 : 건, %)

| 구분      | 있다<br>빈도(%) | 없다<br>빈도(%) | 합계<br>빈도(%)  |
|---------|-------------|-------------|--------------|
| 국공립보육시설 | 71(74.0)    | 25(26.0)    | 96           |
| 법인보육시설  | 54(73.0)    | 20(27.0)    | 74           |
| 직장보육시설  | 36(75.0)    | 12(25.0)    | 48           |
| 민간보육시설  | 446(64.1)   | 252(35.9)   | 701          |
| 가정보육시설  | 341(61.9)   | 210(38.1)   | 551          |
| 전체      | 951(64.7)   | 519(35.3)   | 1,470(100.0) |

\*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또한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사고 처리 실태 관련 설문에서는 “견딜만한 질병은 그냥 참고 넘어 간다 1,014명(72.6%),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교사 본인 자비 처리 한다 163명(11.7%), 산재처리 안하고 어린이집 치료비 및 공상 처리 한다 12명(0.9%)고 응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7>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I-7>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사고 처리 실태**  
(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단위 : 건, %)

| 내 용  | 빈도(%)        |
|--|--------------|
| 견딜 만한 질병은 그냥 참고 넘어간다                         | 1,014(72.63) |
|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다                                 | 65(4.7)      |
| 산재 처리를 안하고 어린이집에서 치료비 및 공상처리한다               | 12(0.9)      |
| 작은 질병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 등은 사고는 산재처리 한다     | 95(6.8)      |
|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모든 질병 및 사고에 대해 교사본인이 자비 처리한다. | 163(11.7)    |
| 기타   | 47(3.4)      |
| 합계   | 1,396(100.0) |

\*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병원 이용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병원 갈(치료할) 시간이 없음 1,024명(71%), 원장 및 동료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331명(22.9%)로 나타났고, <표 I-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8> 병의원 이용시 어려운 점(2014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단위 : 건, %)

| 내 용                       | 빈도(%)        |
|---------------------------|--------------|
| 치료비 부담                    | 33(2.3)      |
| 병원 갈(치료할) 시간이 없음          | 1,024(71.0)  |
| 가까운 곳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음       | 28(1.9)      |
| 원장(시설장) 및 동료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 331(22.9)    |
| 기타                        | 27(1.9)      |
| 합계                        | 1,443(100.0) |

\*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 국외 선행연구

(1) 미국

미국의 어린이집(보육시설) 교사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 기준(NAEYC Early Childhood Program Standards and Accreditation, 2012)에서 제시하고 있다.<sup>2)</sup>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9>과 같다.

**<표 1-9> 보육 교사 관련 물리적 환경기준**

| 구분    | 영역                | 내용                                    |
|-------|-------------------|---------------------------------------|
| 교육 과정 | 인지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교실, 가정, 지역사회의 안전규칙과 안전 절차 확인          |
| 교수    | 풍부한 학습 환경 실제      | 안전 환경 실제                              |
| 교사    | 교직원의 준비, 지식, 기술   | 초임 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중 건강, 안전, 응급상황에 대한 절차 등 |

2) [www.naeyc.org/academy/files/academy/file/AllCriteriaDocument.pdf](http://www.naeyc.org/academy/files/academy/file/AllCriteriaDocument.pdf), P.71-97.

| 구분         | 영역               | 내용   |
|------------|------------------|--|
| 물리적<br>환경  | 실내·외 시설·설비<br>안전 | 유아를 감독할 수 있는 실내 환경, 동반기구,<br>미끄럼틀의 낙하지점에 안전표면 깔기   |
|            | 실외 환경 설계         | 바깥 이동로, 울타리나 담장 설치, 유아들의 감독이<br>용이한 배치, 추락, 날카로운 물건, 빠져나온 쇠붙이<br>등으로부터 보호, 안전조사관의 문서화된 평가 등                                |
|            | 건축과 물리적인<br>설계   | 실내·외 모든 영역에서 위험한 물건 제거, 바닥에<br>미끄럼 방지, 비상 조명, 응급기구 준비, 유아 감독<br>철저, 기관 운행 차량 점검 철저, 유아의 질식 예방,<br>욕실에 막음벽 설치, 새로운 건물의 환기 등 |
| 리더십과<br>운영 | 정책과 절차 관리        | 문서화된 지침과 절차: 비상사태 시 안전대책,<br>현장학습 시 비상연락망  |
|            | 안전 지침과 절차        | 유아의 출발, 도착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 재난이나<br>비상사태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
|            | 개인지침             | 직원고용 시 지침 등  |

위의 <표 I-9>의 내용처럼 보육교사 대상으로 안전교육 규정상 아동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교직원(교사 등)은 1년에 10시간 아동의 안전, 아동 발달과 시설의 기능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약물)과 일상건강관리규정(MAT : Medication Administration Training)<sup>3)</sup>에 따라 보육프로그램 허가 취득자와 제공자 및 교직원, 의약품 처방 관리자의 경우 반드시 MAT 과정(실습 및 시험)을 완료(수료)하여야 한다. 그리고 MAT 교육훈련을 받은 보육 교직원은 응급 상황시 에피네프린(에피펜) 주입 등 시술할 수 있으며, MAT 자격은 18세 이상 전문 해석 능력을 갖춘 보육 교사로서 의무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교육 받을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https://www.childcaredutchess.org>(미국 아동 보육위원회 홈페이지)

## (2)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보육기관의 경우 시청과 시청소속 환경부(Miljöförvaltningen)와 소방방재청(Brandskyddsmyndigheten)의 별도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 보육기관은 환경청에서 별도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sup>4)</sup>

보육기관 교사의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사립 보육기관은 시 또는 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기관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sup>

## (3) 네덜란드

네덜란드 GGD/GHOR(공중보건 및 안전 협회)는 보건과 안전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협회(NGO)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총 25개소이며,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특히 안전의 경우 재난, 항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 소방 등의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보육기관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관리,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며, 1년에 1회 피검기관에 조사관 파견 등 기관을 평가(7 가지 영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6)</sup>

## (4) 일본

일본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어린이가정국(子ども家庭局)과 여성국이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기관 관련하여 벽지 보육원, 계절 보육원, 직장내 보육시설, 기업 위탁형 보육사업, 역전 보육사업, 재택보육서비스 사업, 가정보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시설의 사

---

4) 도남희 외 3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015, 81면 인용.

5) 도남희 외 3명,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015, 82면 인용.

6) <https://www.ggdghor.nl/english/>

7) <https://www.mhlw.go.jp/index.html>(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고방지 및 사고 발생시 대응을 위한 지침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up>8)</sup>

### 3) 소결

국내 선행연구 총 32건과 국외 선행연구 4개국(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을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국내 선행연구

국내 선행연구 총 32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의 경우 보육시설의 환경실태와 영유아 안전실태를 중심으로 9건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② 보육시설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관련하여 9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보육시설 운영과 생활안전, 교통안전, 건강안전, 신변안전 즉 영유아를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③ 특수 고용형태 및 서비스업종 종사자 관련 연구는 4건 수행되었으며, 그 대상이 15개 직종 종사자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취약계층 관련 연구도 4건이 수행되었고, 11개 계층을 대상으로 고령근로자, 지식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학습지도사 등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⑤ 보육교사 관련 연구로는 6건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이 영유아 안전관리실태 및 직무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육교사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국외 선행연구

국외 선행연구 총 4개국인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을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규정, 지침 및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미국은 “안전교육 규정”과 보육시설에

8) <http://www.pref.okayama.jp/page/592169.html>(일본 오카야마 현 홈페이지)

대한 평가기준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일상건강관리규정에 의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안전 및 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②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 보육기관”, “사립 보육기관” 모두 관할 시청과 소방재청, 환경청에서 종사자 안전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국공립 보육기관”보다 “사립 보육기관”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네덜란드는 NGO 성격의 공중보건 및 안전협회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25개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1년 1회 조사관을 파견하여 보육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I.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무엇인지, 그 대상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첫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대한 분류와 정의 및 종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분류와 정의 및 종류를 정리하고, 셋째, 이러한 분류와 정의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및 종사자의 정의와 종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및 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II장의 목적이며, 본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1. 한국표준 산업분류체계상 정의 및 종류

#### 1)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표 II-1>과 같이 표준 산업분류상 대분류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의 건강 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업”과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 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sup>9)</sup>

9)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2) 중분류 : 사회복지 서비스업(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표 II-1>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업(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 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으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3) 소 및 세분류 : 보육시설 운영업(직장 보육시설 운영)

<표 II-1>과 같이 표준 산업분류상 소 및 세분류로 “보육시설 운영업(직장 보육시설 운영)은 보호자로부터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탁아시설, 비거주형 보육시설, 비거주형 아동보호시설, 비거주형 아동전용 보호시설, 비거주형 어린이 놀이방, 비거주형 어린이 보육서비스, 비거주 보육 위주 민간 어린이집, 직장 탁아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0)</sup>

**<표 II-1>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보육시설 운영업종 현황<sup>11)</sup>**

| 분류코드<br>(업종코드) | 구분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Q. 86~87       | 보건업 및<br>사회복지 서비스업 |           |                 | 보육시설<br>운영업 |
| Q. 87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Q. 872         |                    |           | 비거주 복지시설<br>운영업 |             |
| Q. 8721        |                    |           | 직장 보육시설<br>운영   |             |

10)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11)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2. 한국표준 직업분류체계상 정의 및 종류

### 1) 대분류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표 II-2>와 같이 표준 직업분류상 대분류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하며,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하고 있다.<sup>12)</sup>

#### (2) 서비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앞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표 II-2>와 같이 표준 직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 관련 서비스, 돌봄 및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이·미용, 혼례·장례 등 개인 생활서비스, 운송 및 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sup>13)</sup>

12)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13)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2) 중분류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표준 직업분류상 중분류로 “보건 관련 종사자”로 환자의 진료 혹은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이나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하거나 영양기법과 응용에 관하여 연구, 개선 또는 개발하여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도 분류되어 사회복지학과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종교 관련 종사자는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sup>14)</sup>

(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앞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 종사자”로 중분류된 보육시설 종사자 중 일부는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으로 나누어지며, 노인, 장애인이나 환자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아동 보육 서비스 직군, 미용, 결혼 및 장례, 반려동물 관리 등 개인 관련 생활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어 있다.<sup>15)</sup>

3) 소 및 세분류 : 보육교사, 보육 및 교사보조 서비스 종사원

(1) 보육교사

표준 직업분류상 소 및 세분류로 “보육교사”는 공공 또는 민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보육교사는 아동상담소, 어린이집, 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양 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위탁된 영아

---

14)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15)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의 건강상태, 발육경과를 계속 관찰하여 연령, 발육정도에 적합한 보육 계획을 세우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지도하며, 유아의 정서 및 지능 발달을 위하여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틀, 그네 등의 설비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16)</sup>

### (2) 보육 및 교사보조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보조 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아동 복지시설, 키즈 카페, 탁아기관 등 보육 관련 시설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를 보조한다. 그리고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학시 또는 야외 활동 시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영유아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관찰하고 제공되는 식사와 같은 개별 영유아의 활동 및 상태에 대한 기록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사 교육 보조원”은 교실 안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실습 또는 실험 수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교보재를 준비하거나 시청각 장비를 조작하고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수거하거나, 학생의 지적, 신체적, 행동적 활동과 장애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의 발달을 제고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연하거나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sup>17)</sup>

### (3)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아동 복지시설, 키즈카페, 탁아기관 등 보육 관련 시설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자와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종사원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하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련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16)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17)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는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와 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가정집에서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육아 도우미는 제외된다.<sup>18)</sup>

**<표 II-2>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보육시설 종사자 분류 현황<sup>19)</sup>**

| 분류코드  | 대분류            | 세분류           |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보육교사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보육원교사, 교육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보육원선생, 교육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보육원원장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선생, 보육원, 교육   |
| 24720 |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사, 보육원, 교육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아이돌보미, 보육관련시설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시설보조보육사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시설보조보육교사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선생, 보조보육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생활보조원,보육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보조보육교사        |
| 42121 | 4.서비스 종사자      | 보육보조교사        |
| 42199 | 4.서비스 종사자      | 보육종사원         |
| 95120 | 9.단순노무 종사자     | 보육도우미         |
| 95120 | 9.단순노무 종사자     | 가정보육사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정의 및 종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대한 정의 및 종류를 구분하기 앞서, “보육시설 운영업”과 “어린이집”이라는 용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인 “어린이집”으로 병행 명시하여 설명하겠다.

18) <https://kssc.kostat.go.kr/>(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19)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설립주체에 따라 그 정의 및 종류가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정의 및 종류

- ▷ 국·공립 :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장)
- ▷ 민간 : (설립주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 가정 : (설립주체) 개인
- ▷ 직장 : (설립주체) 사업주(단독 또는 공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국·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제외된다.<sup>20)</sup> 그 규모는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며,<sup>21)</su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의미한다.

2) 민간(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보육시설(어린이집)

민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고, 법인·단체 등의 시설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어린이집)이 해당된다. 그 규모는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며,<sup>22)</sup>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인가 신청<sup>23)</sup>을 받은 법인만 설립이 가능하다

20)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23)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3) 가정 보육시설(어린이집)

가정의 경우 개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sup>24)</sup>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민간 보육시설(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인가 신청<sup>25)</sup>을 받은 자만이 설립이 가능하다.

###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도 포함된다. 규모는 영유아 5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sup>26)</sup>로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처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인가 신청<sup>27)</sup>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및 종류

앞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를 구분하는데, 그 명확성이 부족하고, 관련 직무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와 종류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앞의 한국표준 직업분류상에도 매

---

24)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5) 「영유아보육법」 제13조.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27)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제5호 보육교직원 정의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음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종류

(1) 어린이집 원장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사업주인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보육교사(담임교사 및 특수교사, 대체교사)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중 대다수(약 73%, 24만 여명)를 차지하는 보육교사(2급)는 전문대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보육교사 3급)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조리원(영양사 및 취사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중 조리원(취사원)의 경우 보육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 즉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는 조리원(취사원) 1명을 두어야 하며,

8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하고, 100명 이상은 영양사 1명도 두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명시하였다.

#### (4)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치료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간호사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평가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등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사무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 이라함은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사무원이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치료사), 조리원(영양사, 취사원) 등을 제외한 직원을 의미한다.

##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1) 설립근거 및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목적과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정관의 제2조에 공제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 또는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게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안정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가입대상 및 공제료 납부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에서는 공제회의 가입자는 원장으로 규정하고, 제4항의 각호에서는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출자금과 공제금의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장은 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②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③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관련 공제료는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現 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연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2009년 7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어린이집안전공제사업을 시작하고, 2011년 1월부터 아이사랑종합공제를 개시, 2012년 2년 화재공제, 2014년 02월 제3자 치료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 상품 출시, 2018년 3월 화재담보 재공제 도입 2019년 03월 풍수해특약(2천만원 신설)하여 공제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2011년 8월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이 당연 가입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가입범위도 확대 되었다.<sup>28)</sup>

**<표 II-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요 연혁**

| 연도   | 주요연혁  |
|--|---|
| 2008. 05.<br>12.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추진회 창립총회<br>-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설립근거 마련(제31조의2)  |
| 2009. 03~09.<br>06.<br>06~08.<br>09.<br>11.        | - 법인설립지원위원회 구성·운영<br>-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2009. 07. 01 시행)<br>- 공제상품 설계 및 공제규정 등 마련<br>- 창립발기인 총회<br>- 법인설립(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제 14호)  |
| 2010. 01.<br>04.<br>04~08.<br>07.<br>07~08.<br>11. | -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실시<br>- 안전사고 예방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 개최<br>- 공제상품 추가 개발 연구용역<br>- 공제회 회원우대 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한국건강관리협회)<br>- 어린이집 우수 안전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br>- 안전공제사업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및 유공자 포창 |
| 2011. 01.<br>08.                                   | - 아이사랑종합공제개시(가스/놀이시설/보증공제 추가)<br>- 당연가입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2012. 02. 05. 시행)  |
| 2012. 02.<br>02.                                   | - 화재공제 개시<br>- 당연가입 법령 시행   |
| 2013. 02.<br>06.                                   | - 지정기부금 단체 등제(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br>- 제2기 임원진 임기 개시  |
| 2014. 02.<br>09.<br>11.                            | - 특약상품 추가 출시<br>(제3차치료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br>- 어린이집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체결<br>(한국전기안전공사)<br>-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대국민토론회 실시   |
| 2015. 04.<br>04.<br>06.                            | -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br>-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br>(교통안전공단)<br>- 아이사랑카드기부금 이관 및 기금사업관리   |
| 2016. 04.<br>05.<br>06.                            | -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LG U+, K-weather)<br>-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시작<br>- 제3기 임원진 임기 개시  |
| 2017. 05.<br>10.                                   | - 아동안전교육협의체 협약체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br>- 주거래은행 협약체결(신한은행)   |
| 2018. 03.  | - 화재담보(풍수해 포함) 재공제 도입   |
| 2019. 03.<br>06.                                   | - 풍수해특약[2천만원 신설]<br>- 제4기 임원진 임기 개시   |

\*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4) 주요 사업 및 내용<sup>29)</sup>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의 제4조의 각호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
-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의 지급
-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사안 지원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통계 및 정보 관리

\*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1) 공제사업

###### ① 보육교직원상해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및 보육 외의 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에서 생명 또는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사망, 장해 시 1.5억 한도로 보상하며(단, 보육 외 활동 중 발생 시 3천만원의 한도), 2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90%의 한도로 보장한다.<sup>30)</sup>

###### ② 영유아생명신체담보

영유아생명신체담보는 상해담보와 배상책임담보로 구분되는데, 이 중 상해담보는 어린이집이 위탁을 맡아서 보육중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29)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30)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서 100% 보상한다. 배상책임담보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또한, 별도 특약으로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담보 특약, 형사소송지원특약 등을 보장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sup>31)</sup>

### ③ 화재

화재보장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건물담보는 사고 발생 시 감정평가액을 한도로, 집기담보는 시설규모에 따라 가입범위를 차등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재배상특약과 풍수해특약으로 보상범위를 넓힐 수 있다.<sup>32)</sup>

### ④ 놀이시설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한도는 8천 만원이며, 대물배상의 한도는 2백 만원으로 정하고 있다.<sup>33)</sup>

### ⑤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이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대인은 8천만원, 대물은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sup>34)</sup>

31)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32)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33)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34)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2) 안전사고 예방

① 이동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관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안전체험관과 인형극을 운영하여 교육 및 문화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실내외 재난·지진·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VR영상을 이용하여 화재 및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을 교육하는 재난안전교육, 이동식 지진관을 통해 지진상황을 체험하고 대피요령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지진체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탑승, 보호장비 착용, 교통 표지판 등을 교육하는 자전거보호장비체험,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무단횡단사고 예방교육과 횡단보도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교통안전교육, 안전한 승하차 방법, 안전벨트 체험, 차량 사각지대 및 차량에 혼자 갇혔을 경우의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차량사고 예방교육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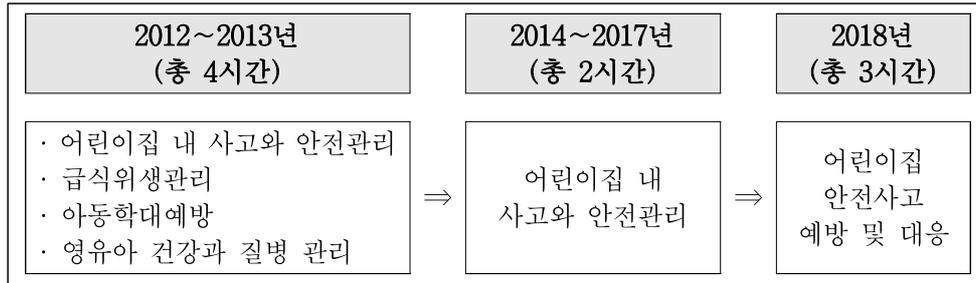
이를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상·하반기 연2회에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으며, 연간 100회, 15,000명의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sup>35)</sup>

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건강·안전 영역의 교과목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sup>36)</sup>

35)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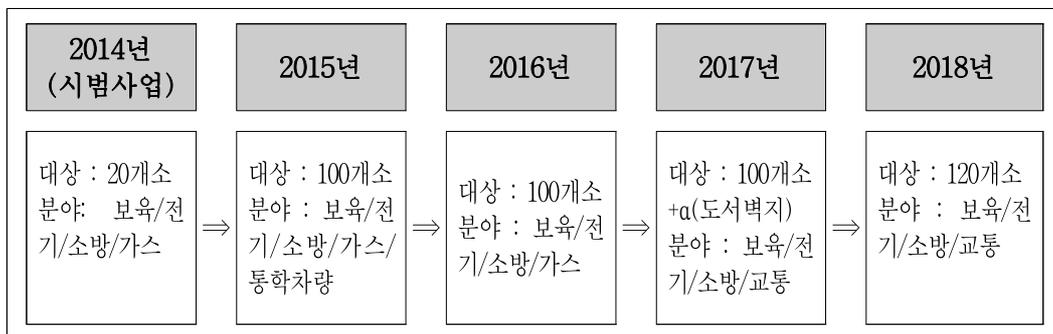
36) <http://www.csia.or.kr/>(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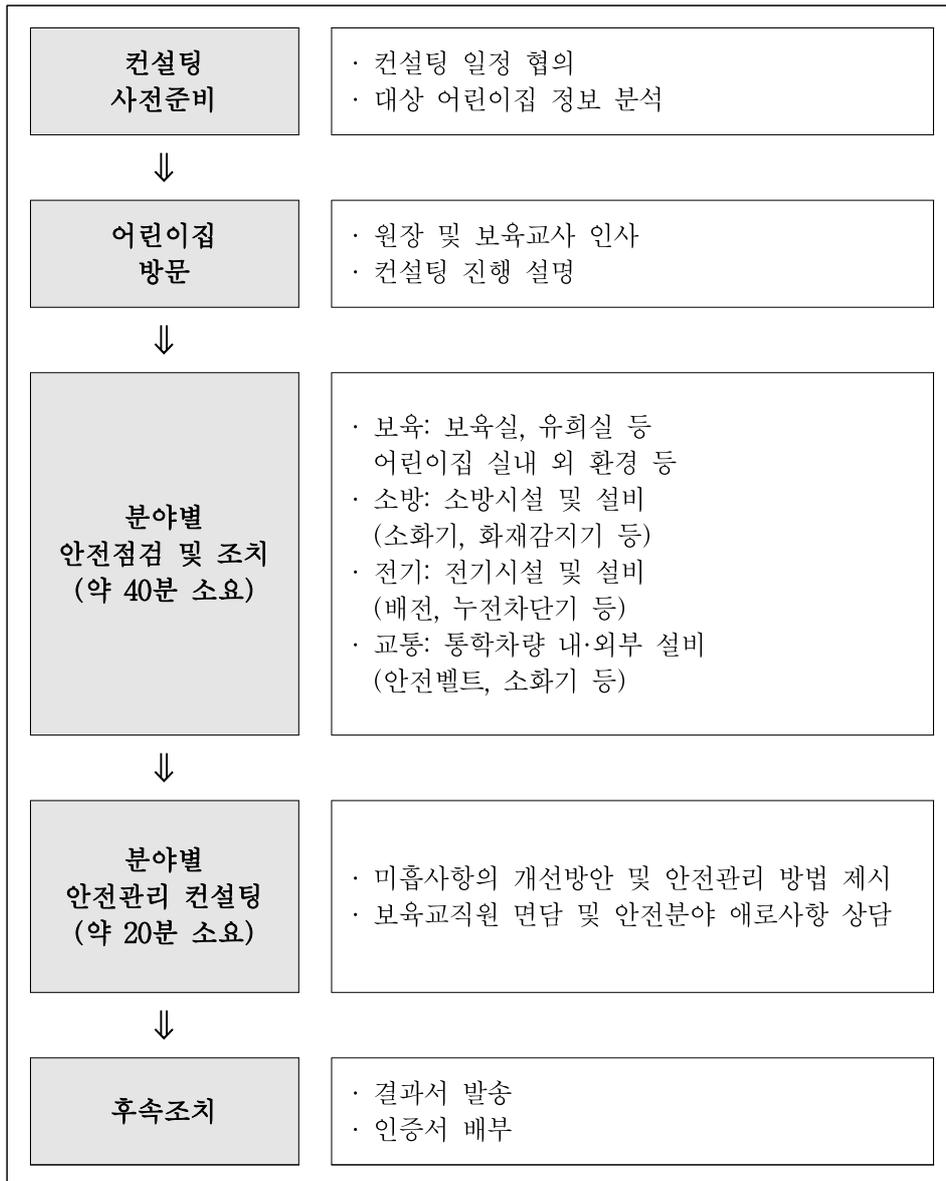
**[그림 II-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도별 사업 범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보육현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시범사업, 20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2017년 매년 100개소, 2018년에는 12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수행하였다(그림 II-2 참조). 안전관리 컨설팅은 보육, 소방, 전기, 교통의 4분야로 나누어 점검하며, 보육의 점검범위는 보육실, 유아실 등 어린이집 실내 외 환경이며, 소방의 범위는 소방시설 및 설비, 전기의 범위는 전기시설 및 설비, 교통은 통학차량 내·외부 설비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각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활동을 위한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지문을 제공하며, 결과서를 제공하여 점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그림 II-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연도별 사업 범위**



[그림 II-3] 컨설팅 진행 절차

**<표 II-4> 컨설팅 분야별 주요점검 사항**

| 분야 | 점검범위                      | 컨설팅 내용   |
|----|---------------------------|--|
| 보육 | 보육실, 유아실 등 어린이집 실내 외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보육활동을 위한 어린이집 분야별 안전 위해요소 점검</li> <li>✓ 안전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사항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지문 제공</li> <li>✓ 컨설팅 종료 후 결과서 제공으로 점검사항 체계적 관리 지원</li> </ul> |
| 소방 | 소방시설 및 설비(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  |
| 전기 | 전기시설 및 설비(배선, 누전차단기 등)    |  |
| 교통 | 통학차량 내 외부 설비(안전벨트, 소화기 등) |  |

**(4) 공모사업**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집 현장의 우수 안전 사례 및 영유아 안전 관련 주제의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공제회의 연도별 공모사업은 <표 II-5>과 같다.

**<표 II-5> 연도별 공모사업**

| 연도별   | 공모전  |
|-------|--|
| 2010년 | 2010년 안전사고 예방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br>2010년 어린이집 우수 안전 사례 공모전 |
| 2012년 | 2012년 어린이집 우수 안전 사례 공모전                                |
| 2013년 | 2013년 영유아 안전 UCC 공모전                                   |
| 2014년 | 2014년 어린이집 등·하원안전 공모전                                  |
| 2015년 | 2015년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진공모전                                  |
| 2016년 | 제1회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
| 2017년 | 2017 아이사랑 안심보육 공모전                                     |

## 6. 소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표준 산업분류체계상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무엇인지와 한국표준 직업분류체계상의 정의 및 종류,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정의와 종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즉 보육교직원의 공제사업을 주관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한국표준 산업분류체계와 한국표준 직업분류체계에서 보육시설 운영업종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② 한국표준 산업분류체계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립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분류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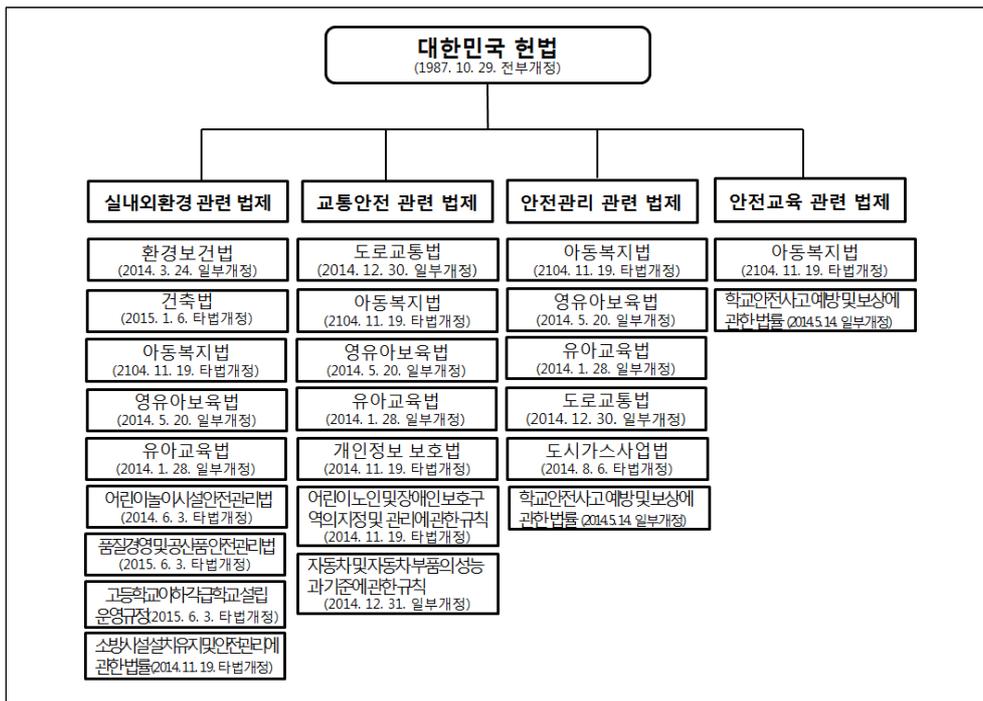
③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를 구분하는데 그 명확성이 부족하고, 관련 직무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이렇게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과 관련 종사자의 정의와 분류, 설립주체, 구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논란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 Ⅲ.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법적 근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법제는 아래 [그림 III-1]과 같이 실내외 환경 관련 법제와 교통안전 관련 법제, 안전관리 관련 법제, 안전교육 관련 법제 등으로 구분이 되며, 총 15개 법제에서 영역별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관 부처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8개 부처가 소관 업무별로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그림 III-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체계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관리 법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는 <표 Ⅲ-1>과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에서 다양한 전문 영역별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 자료)와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 등에서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적 근거 현황**

| 구분                 | 현행 법적 근거 |   |
|--------------------|----------|---|
|                    | 소관 부처(청) | 법령  |
| 안전관리               | 보건복지부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br>·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br>·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
|                    | 경찰청      | ·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b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  |
|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br>· 아동복지법 31조 제 1, 3항,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1, 2항 및 별표 3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br>· 아동복지법 제 75조 제3항 제2호(과태료) |
| 설치 및<br>실내<br>시설설비 | 보건복지부    | · 영유아보육법 제 15조<br>·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                    | 국토교통부    | · 건축법 제52조<br>· 건축법시행령 제61조<br>·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                    | 행정안전부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br>·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br>·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환경부      |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br>· 환경보건법 제29조<br>· 환경보건법 제33조 제1항<br>·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2호<br>·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

##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는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는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영유아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그 외에도 차량안전관리에 있어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할 의무 및 교사와 영유아의 안전벨트 착용의무,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의 보호자 인도의무를 부여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영유아보육법」상 안전관리 규정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직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 부여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의 선택적 납부 가능 규정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 III-2> 「영유아보육법」 안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 <p>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p> <p>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p> <p>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li> <li>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li> <li>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li> </ol>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p>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p> <p>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p>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p>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p>사. 보험(공제)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li> <li>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li> <li>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li> <li>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li> </ol> <p>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p> <p>가. 안전관리</p>   |

| 조문 | 내용   |
|----|--|
|    | <p>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p> <p>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p> <p>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p> <p>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p> <p>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p> <p>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p>7) <u>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라.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p> <p>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p> <p>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p> <p>4) <u>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u></p> <p>5) <u>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u></p> |

| 조문 | 내용   |
|----|--|
|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7)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u>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u> 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안전관리 관련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규정이다(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의 범위는 어린이집 시설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어린이집은 아동보호구역에 해당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이 된다(아동복지법 제3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표 III-3> 「아동복지법」 안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32조 |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br>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br>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br>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br>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br>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br>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br>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 조문                        | 내용   |
|---------------------------|--|
| <p>아동복지법<br/>시행령 제29조</p> | <p>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p> <p>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아동보호구역</u>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li> <li>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li> <li>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li> </ol>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li> </ol> |
| <p>아동복지법<br/>시행령 제30조</p> | <p>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p> <p>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u>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

(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설치되지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의 주변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도로교통법 제14조).

<표 III-4> 「도로교통법」 안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p>도로교통법 제52조</p>      | <p>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p> <p>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p> <p>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
| <p>도로교통법 제12조</p>      | <p>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p> <p>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li> <li>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li> <li>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li> <li>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li> </ol> |
|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p> | <p>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p> <p>① <u>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u>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안전교육 법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법제는 <표 III-5>과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9 자료)에 제시되어 있으며, 안전교육 기준인 실시주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안전(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해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1조).

**<표 III-5>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31조                     |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br>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br>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br>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br>4. 재난대비 안전<br>5. 교통안전<br>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br>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

| 조문                            | 내용   |
|-------------------------------|--|
|                               |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br>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아동복지법<br>제75조 제3항<br>제2호(과태료) | 제75조(과태료)<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치 및 실내시설 설비 법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등 근거법령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기준이 맞추어져 있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이러한 설치기준은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설치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므로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 어린이집 설치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설치기준에서 보육교사 관련 규정은 교사실에 관한 것인데,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설치기준에서는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비상계단은 영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용은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사용할 시 미끄럼 안전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상계단의 기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19 보육사업 안내」에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 및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에서는 비상계단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 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하고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디딤판의 유효너비와 높이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으므로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 공통기준에서는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보육교직원이 사용하기에는 낮아 사용에 불편할 수 있다.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에서도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하고,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에 맞춘 기준이므로 보육교직원이 사용하기에는 그 너비 및 높이가 낮아 미끄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III-6> 「영유아보육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p>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br/> <u>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u></p>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p>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br/>                     ① <u>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u><br/>                     ② <u>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u></p>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p>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br/>                     가. 일반기준<br/>                     1) <u>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br/>                     3) <u>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u><br/>                     다) 목욕실<br/>                     ② <u>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u><br/>                     ③ <u>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br/>                     마) 교사실<br/>                     ① <u>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u><br/>                     ② <u>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u><br/>                     바) 놀이터<br/>                     ① <u>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u></p> |

| 조문            | 내용   |
|---------------|--|
|               | <p><u>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p> <p>(i)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p> <p>(v) <u>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p> <p>아) 비상재해대비시설</p> <p>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p> <p>(ii)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u>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u>,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p> |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

| 조문                                 | 내용   |
|------------------------------------|--|
|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br>*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br>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를 원칙으로 함</li> </ul>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 ①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함<br>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br>*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br>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br>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2) 건축법

「건축법」 제5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sup>37)</sup>에 포함되는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건축법 제52조).

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집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7)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의하고 있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노유자시설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노유자시설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표 III-7> 「건축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건축법 제52조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br>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br>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br>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br>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 |

| 조문  | 내용  |
|---|---|
|   | <p>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p> <p>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
| <p>건축물의<br/>피난·방화구조<br/>등의 기준에<br/>관한 규칙<br/>제24조</p> | <p>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p> <p>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동립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u>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u>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p> <p>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p> <p>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p> |

(3)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20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수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업무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이 포함된다(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표 III-8> 「소방시설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화재예방,<br>소방시설설치<br>유지 및<br>안전관리에<br>관한 법률<br>제12조     |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br>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br>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화재예방,<br>소방시설설치<br>유지 및<br>안전관리에<br>관한 법률<br>시행령 제19조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br>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3의2. <u>노유자시설</u>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 조문  | 내용   |
|---|--|
| <p>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p> | <p>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p> <p>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li> <li>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li> <li>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li> <li>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li> <li>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li> <li>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li> </ol> <p>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

(4) 환경보건법

어린이집은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며(환경보건법 제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검사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환경보건법 제29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확인검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평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 III-9> 「환경보건법」 설치 및 실내 시설설비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환경보건법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8. “ <u>어린이활동공간</u> ”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u>어린이집</u>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br>2. 「 <u>영유아보육법</u>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br>⑤ 환경부장관은 <u>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u>   |
| 환경보건법 제29조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br>① 환경부장관은 <u>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br>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br>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br>3. 검사기관 |
| 환경보건법 제33조 제1항           | 제33조(과태료)<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br>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2호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br>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 <u>유아교육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   |

| 조문                                | 내용   |
|-----------------------------------|--|
|                                   | <p>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li> <li>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 이행명령</li> </ol>   |
| <p>환경보건법<br/>시행령 제22조<br/>제3항</p> |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li> <li>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li> <li>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li> <li>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li> <li>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li> <li>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li> <li>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li> </ol>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

### 1) 헌법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안전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기준을 선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까지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헌법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에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1) 목적 규정(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 규정에서 표명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 대상은 “근로자”이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즉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중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보육교사 등)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대상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보호대상인 근로자이다.

## (3) 근로조건 규정(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은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세부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근로시간, 임금 및 산출근거, 퇴직, 모성보호, 교육지원, 작업장 환경, 재해범위 및 지원, 표창 및 제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로 10인 미만 근로자로 구성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포괄하지 못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sup>38)</sup>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76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로 표명하고 있다.

## ◆ 근로기준법 제76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근로계약 규정(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

3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사하여야 할 업무사항 등이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중 보육교직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부분에서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보수교육 수료증
- 나.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4.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며, 어린이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안전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산업안전보건법

#### (1) 신규제정 이유 및 규정내용<sup>39)</sup>

1980년대 중화학 공업의 발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 증가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 또한 유해 물질의 대량 사용과 작업 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되었다. 1981년 제정 당시 핵심규정은 아래와 같다.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 제9028호.

-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함
- ②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③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④ 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측정 기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함
- 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을 정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목적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행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2020년 1월 16일 시행)]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적용 대상이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의 대상이다.

(3) 정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국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됨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2020. 01. 16. 시행)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분류 근거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그 범위는 아래 <표 Ⅲ-10>에 해당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Ⅲ-10>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2조의2 제1항 관련)**

|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br>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br>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br>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br>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br>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br>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r>다. 정보서비스업<br>라. 금융 및 보험업<br>마. 전문서비스업<br>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  |

|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br>아. 사업지원 서비스업<br>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br>가. 농업<br>나. 어업<br>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br>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br>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br>바. 녹음시설운영업<br>사. 방송업<br>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br>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br>차. 연구개발업<br>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br>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br>파. 협회 및 단체<br>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br>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br>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br>다. 국제 및 외국기관   |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
|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라 일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도 있으나, 그 설립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위 <표 III-10>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의 ‘특별교육만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직접 적용되는 업종이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안전이 담보되는 법적 보호대상이다.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 관련 기준 및 개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에서 정하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1항), 또한 “사업주는 기록한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산재은폐라고 할 수는 없다. 산재은폐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적발도 어렵고, 산재발생 사실을 기피하는 이유가 사업장의 특성(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요인이 이해 관계자별(근로자, 사업주 등) 영향력과 상관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들도 직접적으로 은폐행위를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sup>40)</sup>

① 산재은폐의 개념 이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4면~85면 참조.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기록·보존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i)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ii)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iii)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iv)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기록 서류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동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별도로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2 후단)을 통해 재해 재발방지 계획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경우와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형태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한 경우 산재발생기록의무를 갈음해주고 있다. 산재발생 기록의무를 위반하여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68조 제1호).<sup>41)</sup> 행정형벌의 적용은 산재발생 기록의무 위반이 아니라 은폐를 목적으로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sup>42)</sup>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보고의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보고대상 산재의 범위(휴업 3일 이상 재해),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04, 09면 참조,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6면 참조.

42)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5면~89면 참조.

재발방지 계획이 기록된 서식이 산업재해조사표임을 확인할 수 있고 산재발생 보고의 기한(1개월)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즉시과태료 부과제도의 예외적 조치로서 시정명령(15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기한(즉시보고) 그리고 제4항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 확인사항과 건설업의 경우 확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산재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요구하는 산재는 산재발생 기록의무대상 중 휴업 3일 이상 재해 및 사망재해에 국한하고 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고대상 재해가 중대재해이면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2조 제2항)를 그 밖의 재해는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2조 제3항 제1호)를 부과하고 있다. 구법은 산재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동일하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3일 동안 휴업한 경미한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미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해 유형별 제재 수준의 차별화를 통해 규제강화를 실시하였다.<sup>43)</sup>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은 i)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한 사업주, ii)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

43)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04, 07면 참조,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7면 참조.

정해야 하는 사업주, iii)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iv)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로 예시하고 있다.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 홍보 및 사업장 지도와 안내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1개월) 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제도 정착에 애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유인 및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에서 산재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일정기간 내(15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 후, 기간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하는 합리화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법적 지식과 관련한 실무상 법령준수에 관한 동기부여와 법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충분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sup>45)</sup>

## ② 산재은폐와 산재미보고의 관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산재발생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재은폐가 되며,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재미보고가 된다. 산재발생 기록의무 사항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즉, 산재미보고와 산재은폐의 구분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산재미보고의 범위에 산재발생의 은폐행위도 포섭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은폐한 것은 미보고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sup>46)</sup>

4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2017. 04, 31면 이하 참조.

45)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8면~89면 참조.

따라서 산재은폐(악의적 고의적 산재미보고)와 단순미보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이므로 구분이 불명확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할 의사로 행해지는 미보고의 발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형평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 논리 구성 및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 행정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단순 미보고와 달리 산재은폐는 은폐행위 특유의 개념적 표지로서 고의성과 부당성이 발견된다. 산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전제된 것이다. 그리고 최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제도 미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예외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 및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사업장 등의 경우 산재보고제도를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 ③ 산재은폐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재발생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산재은폐가 되며,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재미보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산재미보고와 산재은폐에 대한 구분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산재은폐 유형과 판단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은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이라는 개념과 은폐 개념은 명확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은폐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가벌성의

46)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9면 참조.

47)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포럼 제16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86면 참조,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90면 참조.

근거로서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폐의 동기, 계기, 배경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결국 부정한 목적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 사실 은폐행위와 부당이득과의 법적 이해관계를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산재은폐를 한다’는 단선적인 접근을 시도하기엔 여전히 자의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만 은폐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폐행위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8)</sup>

### 3. 국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제도

#### 1) 호주

호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과 기업단위의 노사협상 또는 산업별·직종별 근로기준 협약(Industrial Award)에 의해 대체적으로 표준화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협약은 모든 산업과 직종별로 특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고용기준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협약 이외에 작업장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2011년 개정된 “직장 보건 및 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작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sup>49)</sup>고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 기존의 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48)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2018. 03, 89면~92면 참조.

49) The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the WHS Act) provides a framework to protect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all workers at work. It also

을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퀸즐랜드 주의 경우, ‘보육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침(health and safety tips for childcare workers)’<sup>50)</sup>을 통해 보육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업종 관련 협약에 명시된 규정에서 근로시간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1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시간 및 조건**

| 항목         | 규정   |
|------------|--|
| 평일 주간 근로시간 | - 4주당 152시간(주당 평균 38시간 이내 근무)<br>-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근무   |
| 초과 및 휴일 근무 | - 평일 초과 근무 시 저녁 초과 시(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112.5%,<br>- 심야 초과 시(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15% 임금률 적용<br>- 토요일은 150%, 일요일은 200%, 그리고 공휴일은 200% 임금률 |
| 비정규직       | [시간당 근무하는 비정규직] 휴가 적립 없는 대신 정규직의 125% 임금률 적용   |
| 교대근무자      | 저녁 교대자는 115%, 심야 교대근무자는 130%, 토요일은 150%, 일요일은 175%, 그리고 공휴일은 250%의 임금률 적용  |
| 식사 휴식      | 점심 및 저녁 식사 휴식은 최소 30분 이상<br>식사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음  |

출처: Fair Work Ombudsman(2006),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Employees(State) Award, Fair Work Australia; Fair Work Ombudsman(2010), Social, Community, Home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Industry Award 2010, Fair Work Australia(박찬임 외(2015), p. 222에서 재인용).

protects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other people who might be affected by the work.

50) WorkCover QUEENSLAND Queensland Government hom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Electrical Safety Office Workers' Compensation Regulator.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처벌 규정은 크게 3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는 고용주가 보건 및 안전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피고용인이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노출된 경우는 고용주는 60만 호주 달러 및 5년 징역형에 처한다. 두 번째 범주는 고용주가 보건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고용인이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노출된 경우로 고용주는 3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피고용인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없더라도 고용주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sup>51)</sup>

**<표 III-1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처벌 규정**

| 위반범주 | 규정   | 작업장        | 고용주                   |
|------|--|------------|-----------------------|
| 제1범주 | 고용주(작업장)가 보건 및 안전에 관해 전혀 개의치 않은 상태에서 피고용인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여 피고용인이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노출된 경우 | 300만 호주 달러 | 60만 호주 달러 벌금 및 5년 징역형 |
| 제2범주 | 고용주(작업장)가 보건 및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고용인이 사망, 부상 및 질병에 노출된 경우                           | 150만 호주 달러 | 30만 호주 달러             |
| 제3범주 | 고용주(작업장)가 보건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만 호주 달러  | 10만 호주 달러             |

자료 : WorkCover NSW(2012), Guide to the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Act, Safety Work Australia(박찬임 외(2015), p. 223에서 재인용).

호주 정부는 Child Australia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개발된 교육과 서비스 영역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지침(Work health and safety in education and care services)을 배포하고 있다.

51) WorkCover NSW(2012), Guide to the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Act, Safety Work Australia.

관련 지침서에는 산업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 상담, 위험관리, 위험요인확인, 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2] 호주 교육과 서비스 영역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지침 개요**

자료 : Child Australia(2012). Work Health and Safety In Education and Care Services, p. 10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급계획, 주요 사건 관리, 응급조치, 사고 보고서, 작업장 조사, 전기안전, 인간공학, 스트레스 관련 같은 것을 고려해

야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상담영역에서는 주기적인 직업안전 미팅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직원 교육에서는 실무 훈련(On the Job training)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위험요인 확 관련해서는 물리적 환경, 기계/전기안전, 화학, 생물학, 심리적 안전 영역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 확인, 안전 항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Child Australia(2012) 영유아 돌봄 업무의 6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13> 영유아 돌봄에서 위험 업무**

| 순번 | 위험 업무   |
|----|---|
| 1  | 영유아 들어올리기: 유아용 침대나 요람, 식탁 등에서 영유아를 꺼낼 때 무리한 동작이 발생함                         |
| 2  | 심하게 낮은 자세에서 근무, 영유아 책상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작업하게 되어 무리한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
| 3  | 무거운 교재 교구나 장비를 옮기는 경우   |
| 4  | 부적절한 물품 및 장비보관으로 인해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고, 무리가 가는 자세로 물품을 꺼내게 됨                     |
| 5  | 사무실이 성인특성에 안맞게 구성되어 무리가 가는 자세로 일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발생하게 됨        |
| 6  | 영유아들이 제작한 미술품 등을 배치하거나 공간에 대한 환경 미화할 때 물건이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청소중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기도 함 |

이외에 교육 및 아동 돌봄서비스업 종사자는 여러 다양한 사람과 접촉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홍역, 수두, 백일해 등이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2) 미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회사(주정부기금 출자)<sup>52)</sup>의 안전 및 세미나의 산업별 안전 규정에서 “육아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 CHILDCARE WORKER SAFETY

- Workers in childcare facilities educate and care for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 age children. Childcare may not seem like a hazardous occupation, but every workplace has hazards and risks. Childcare work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own safety while they nurture children.
- Use good ergonomics to reduce the risk of strain or sprain injuries. To protect your back, try to find ways to reduce lifting like using steps up to the changing table, sink, or fountain. To comfort a child, kneel down to their level instead of bending over toward them or lifting them. Avoid bending or hunching over when wiping or setting low tables or cots; bending your knees and keeping your back straight protects your back during these tasks.
- Working around small furniture, numerous toys, and small children increases the risk of slips, trips and falls; wear sturdy, comfortable shoes with good traction. Walk slowly and avoid rushing while carrying loads or children, which can obstruct your view. Clean up scattered toys on the floor between activities. Ensure that spills are cleaned up immediately and rugs are secured; everyone in the childcare facility is responsible for reducing slip, trip and fall hazards.
- Infection control reduces the spread of germs. Wash your hands after handling sick children, changing diapers, helping children in the bathroom, before preparing food, before eating, and before leaving for the day. Frequently wash down tables, counters, and sinks with a mild bleach solution. Smocks or aprons reduce germ transmittal, especially with infant care. Consider vaccination against

52)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chicken pox, hepatitis B, measles, rubella, mumps, polio, tetanus, and diphtheria, all of which can cause serious illness.

- Lice infestation is contagious and common in childcare. The tiny insects are transmitted through skin-to-skin contact or by sharing combs, brushes, towels, hats, helmets, and bedding; sharing personal items should be avoided. Lice are not dangerous and don't carry disease; they infest the skin, especially the scalp, and cause extreme itchiness and rashes. Treatment requires special shampoos and fine combing the hair to remove lice and their nits (eggs).
  - For protection against bloodborne pathogens such as hepatitis or HIV, practice universal precautions when you change diapers, help children toilet, wipe noses, brush teeth, give health exams, and administer first aid. Always wear gloves during these tasks. Latex gloves are commonly used for universal precautions and when cooking or serving food; know the symptoms of latex allergy, such as watery eyes and skin irritation. Ensure that the latex gloves you use are powdered to reduce skin contact and that there are non-latex alternatives available.
  - When supervising children in outdoor play areas, be aware of sun safety. Wear a hat and sunscreen to protect against harmful UV rays; covered or shaded play areas are ideal. Outdoor play can lead to heat or cold stress, depending on the climate and season. Wear several light layers of clothing and watch for symptoms of environmental stress.
  - Childcare is a vital service to care for the future generation; you are a teacher and a role model to the children in your charge. While you focus on your own health and safety on the job, model safe behavior and ensure that the childcare setting is safe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Maintain childcare sites free of hazards such as containers of standing water, unstable or improperly padded climbing structures, and access to chemicals or medicines. It is vital to maintain constant supervision over children; they should never be isolated from the group or restrained in any way that could pose a strangulation hazard. The emotional impacts of a child's injury or death in the childcare setting are devastating and far-reaching; protect yourself and the children you care for - for safety's sak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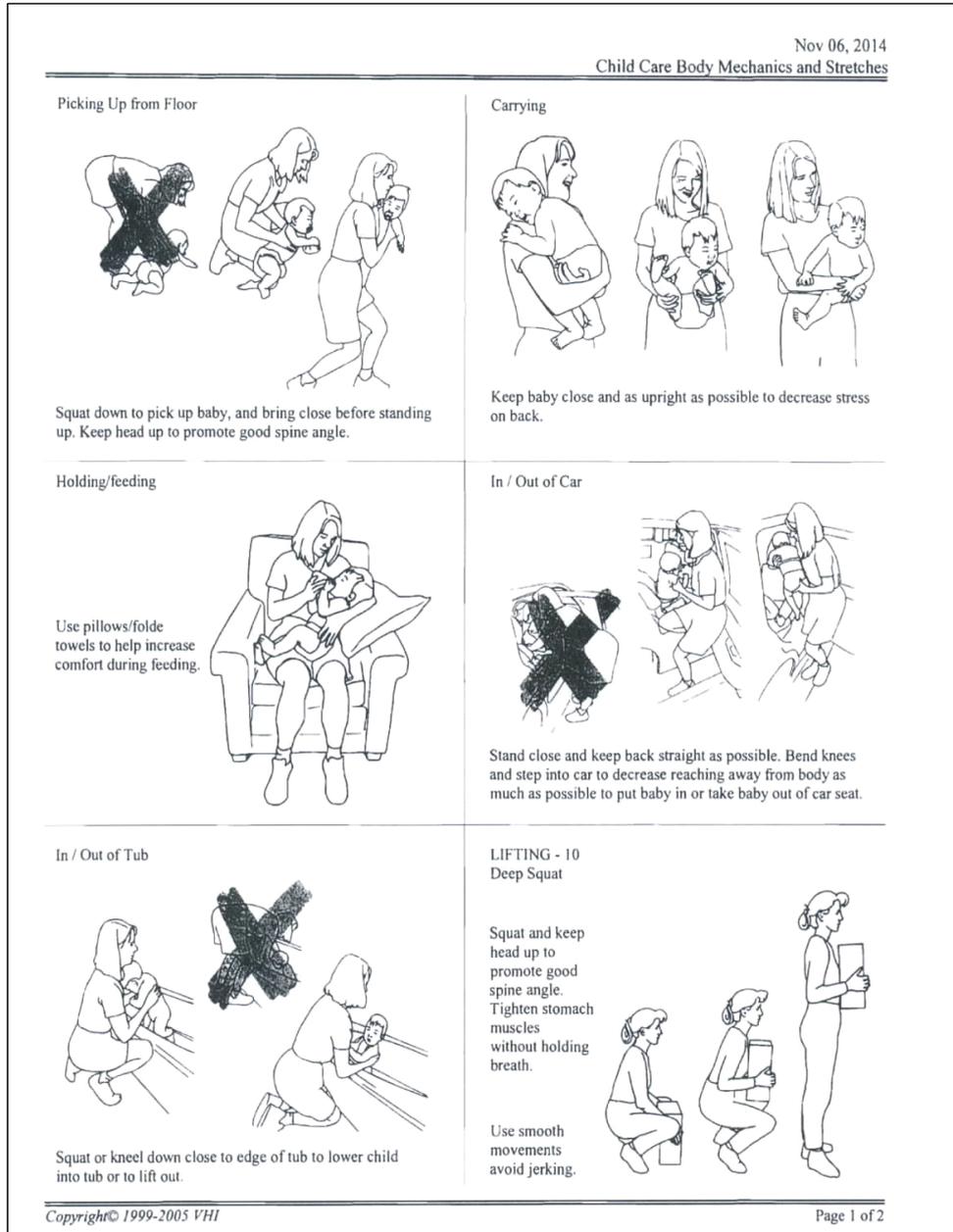
위의 내용 중 일부를 해석하면, “보육시설의 근로자는 유아, 유아 및 취학 연령 아동을 교육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험한 직업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작업장에는 위험이 있으며, 육아 근로자 역시 양육하는 동안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기술사용 예시와 감염통제, 야외놀이공간의 안전 등 본인(자신)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켄터키주 보건부에서는 아동 돌봄센터 직원들에 대한 웰빙과 안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터뷰, 직위 웰빙 수준 조사, 업무환경 조사, 트레이닝, 목표설정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단순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정서, 학습, 신체 등 다양한 영역의 웰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처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간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아동 돌봄센터 직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명시하고 있다.<sup>53)</sup>

---

53) Northern Kentucky Health Department(2015). A Guide to worksite wellness and safety in the child care setting, p 44.



[그림 III-3] 아동돌봄센터 대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 : Northern Kentucky Health Department(2015). A Guide to worksite wellness and safety in the child care setting, p. 44.

### 3) 스웨덴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제도는 7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 시설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시설은 대부분 공립이다. 1973년 취학 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아학교(förskola, preschool)로 명시되고 있다.<sup>54)</sup>

스웨덴의 보육교사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양성과 정과 활동분야에 따라 크게 유아교사,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레크리에이션 교사로 구분된다. 스웨덴 유아학교(förskola, preschool)는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운영되는 종일제시설이지만, 교대근무나 시간차 근무 등 교사의 근무를 통해 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유지한다(여성가족부, 2006). 즉 교사의 근무시간은 연간 1,700시간, 주당400시간, 일일 8시간이다. 또한 1일 근무시간 중 교사에게 오전, 오후 각 각 15분간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만 관심을 두고 규정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도 존중하고 있다. ‘직업안전 및 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and Health)’는 1987년부터 유아학교(förskola, preschool) 및 레저타임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안전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sup>55)</sup>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는 성인의 신장에 맞춰야 한다. 이 외에도 교사를 위한 안전 규정은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교사 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샤워장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 보육교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스웨덴 지역 노조(Swedish Municipal Workers’ Union)’는 1910년 이래로 2005년까지 57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스웨덴 노동조합 중 가장 큰 조합으로,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역 사업

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2004. 12, 70면~88면 참조.

55)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스웨덴의 육아정책”, 2015. 12, 2면.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조합원에는 보육 종사자, 운전 기사, 소방관, 노인돌봄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고, 농장노동자 협동조합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노동조합 구성원의 80%가 여성이고, 대부분 30세 미만이다. 이들 대부분은 복지 등 아동과 노인 돌봄 노동자로 근무 한다.<sup>56)</sup>

스웨덴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건강·안전 지침)은 어린이를 드는 어색한 자세, 소음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보육 교사들이 직면하는 직업 관련 재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을수록 소음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들이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소위 소음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군에 배치될 정도의 것인데, 이 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청각 손실이나 이명 등의 피해를 받는다. 지역사회와 정부는 이러한 소음의 위험을 평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에서 작업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었으나 레저기관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sup>57)</sup>

Botkyrkavägen의 시립 유치원 가구 및 장비에 대한 지침도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 직원의 건강, 안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 높이가 성인에 적합해야 하며, 작업 자세 및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내용과 관련한 법률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sup>58)</sup>

#### 4)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GGD/GHOR을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GGD는 보건과 위생을 위해 약 80년 전에 설립된 기관으로 NGO의 성격을 지닌다. 해당 기관은 25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각 지방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안

56) <http://www.world-psi.org/en/swedish-municipal-workers-union-kommunal>

57) <http://www.world-psi.org/en/swedish-municipal-workers-union-kommunal>

58) <http://www.world-psi.org/en/swedish-municipal-workers-union-kommunal>

전 부문으로, 재난이나 항공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 소방관, 앰블런스 등을 부르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59)</sup>

사회복지 부문으로, 주거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며, 방역 부문으로 공창(prostitution)이나 문신 사업에 대한 보건, 위생 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수행하며, 보육기관에 대한 위생 검사도 실시한다.<sup>60)</sup>

보육기관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만들고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며, 1년에 1회, 피검기관이 모르게 조사관이 방문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평가는 7가지 영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sup>61)</sup>

#### 4. 소결

앞에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안전 관련 법적 근거(안전관리 법제, 안전교육 법제, 설치 및 실내시설 설비 법제)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 (1) 관리주체 및 유형별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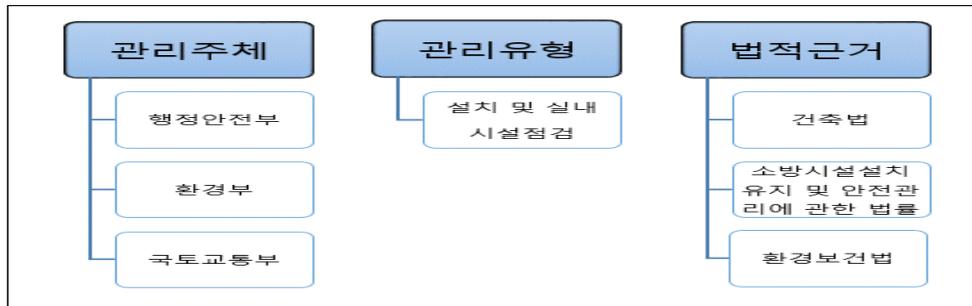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의 관리주체, 관리 유형, 법적근거를 아래 [그림 Ⅲ-4, Ⅲ-5]과 같이 정리하였다. 총 5개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유형은 총 4개

59)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네덜란드의 육아정책”, 2016. 12, 23면~38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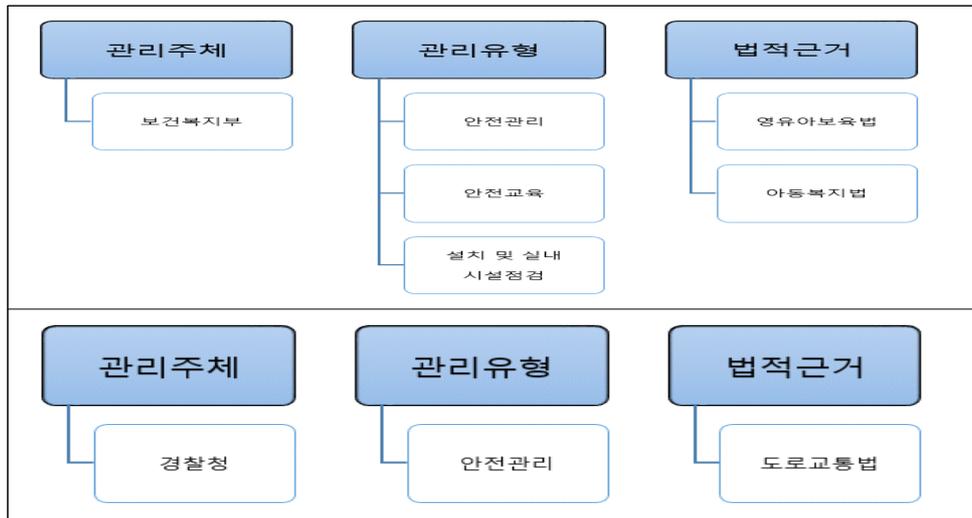
60)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네덜란드의 육아정책”, 2016. 12, 23면~38면 참조.

61)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네덜란드의 육아정책”, 2016. 12, 23면~38면 참조.

유형으로 설치 및 실내 시설점검,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련 법적 근거는 총 6개 법령으로 건축법,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림 III-4] 3개 부처 관리 주체, 유형, 법적 근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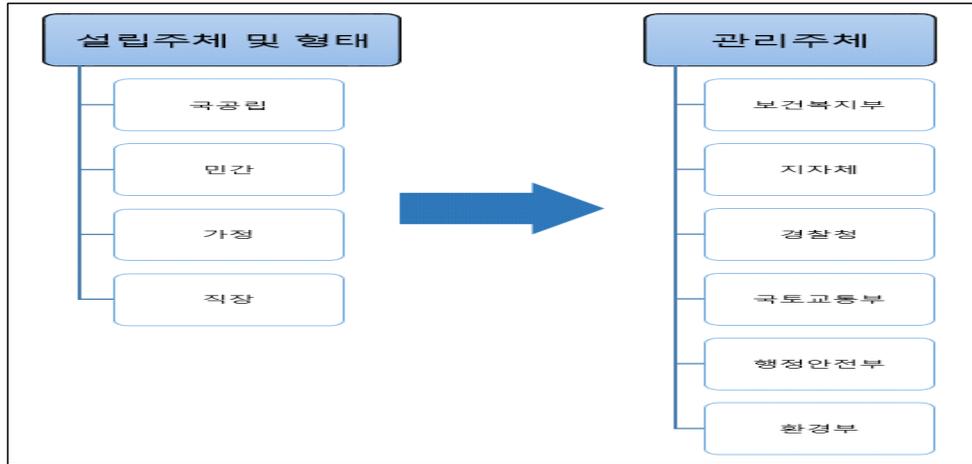


[그림 III-5] 2개 부처 관리 주체, 유형, 법적 근거 현황

(2) 설립주체 및 형태와 관리주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립주체 및 형태와 관리주체는 [그림 III-6]와 같이 설립주체 및 형태는 총 4개이며, 국공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민간

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가정의 경우 개인사업주, 직장의 경우 사업주 등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관리 주체는 총 6개 부처에서 관리한다.



**[그림 III-6] 설립주체, 형태, 관리 주체 현황**

(3) 규제별 법령 검토 결과

①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설  
치 및 실내 시설점검,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VII-7 참조]

②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안전교  
육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경찰청 소관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및 과태료,  
안전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VII-7 참조]

④ 지방자치단체 소관 법령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설치 및 실  
내 시설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⑤ 환경부 소관 법령인 「환경보건법」과 「환경보  
건법 시행령」에서 시설내 설치된 기구 및 제품, 재료 등에 대한 안전 등을 명시하  
면서 총 7개 법령별로 소관부처가 다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 기  
준, 지침이 약 18개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안전 등에 관한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
| <b>영유아보육법</b> |  |
| 일반법률<br>(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제 15조</li> </ul>   |
| 시행규칙<br>(3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li> </ul>                                       |
| <b>아동복지법</b>  |  |
| 일반법률<br>(2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31조 제1,3항</li> <li>• 아동복지법 제 75조 제3항 제2호(과태료)</li> </ul>  |
| 시행령<br>(4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li> <li>•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3</li> <li>•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li> <li>•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li> </ul> |
| <b>도로교통법</b>  |  |
| 일반법률<br>(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 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li> </ul>  |
| 시행규칙<br>(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li> </ul>   |
| <b>건축법</b>    |  |
| 일반법률<br>(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52조</li> </ul>   |
| 시행령<br>(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li> <li>• 건축법시행령 제61조</li> <li>• 건축법시행령 제64조</li> <li>• 건축법시행령 제119조</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li> </ul>     |

|                                     |  |
|-------------------------------------|--|
| <b>환경보건법</b>                        |  |
| <b>일반법률<br/>(3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li> <li>•환경보건법 제29조</li> <li>•환경보건법 제33조 제1항</li> </ul>  |
| <b>시행령<br/>(2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2호</li> <li>•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li> </ul>   |
| <b>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b> |  |
| <b>일반법률<br/>(1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li> </ul>   |
| <b>시행령<br/>(3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li> <li>•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li> <li>•화재예방,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li> </ul>   |
| <b>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b>        |  |
| <b>일반법률<br/>(3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li>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li>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li> </ul>   |
| <b>기타법</b>                          |  |
| <b>기타법률<br/>(12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li> <li>•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li> <li>•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li> <li>•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li> <li>•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li> <li>•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li> <li>•도시가스사업법</li> <li>•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i> <li>•개인정보 보호법</li> <li>•정보통신공사업법</li> </ul> |
| <b>기타 시행령<br/>(1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li> </ul>   |

[그림 III-7] 규제별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현황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관련 법적 검토 결과

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라 일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할 경우도 있으나, 그 설립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②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는 모든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면서, 어린이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안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의 ‘특별교육만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직접 적용되는 업종이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안전이 담보되는 법적 보호대상이다.

## 3) 산재은폐에 대한 검토 결과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법문구만으로 해석한다면 산업재해 발생한 사실을 기록, 보존하지 않을 경우(산재은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는 산재미신고에 해당이 된다.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산재은폐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의 제반사항 즉 고의와 과실까지 연계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까지 검토하여야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산재발생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재은폐가 되며,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재미보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산재은폐 판단기준은 악의적 고의적 산재미보고와 고의성이 없는 단순미보고 등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산재은폐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발생 기록의무위반과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 하는 2가지 유형이 아닌 고의, 과실 및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산재은폐 유형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 각 장에서 산재은폐와 관련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단순히 산재은폐로 단정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 IV.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현황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사업(대) 전체의 종사자 산업재해 건수와 순차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 전체 종사자 산업재해 건수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건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타 사업(대) 종사자 재해 현황

2014년~2018년 기타 사업(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았다. 2014년(30,335명), 2015년(29,734명), 2016년(29,692명), 2017년(30,595명), 2018년(37,505명)으로 <표 IV-1>와 같다.

그리고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601명과 2016년도 전년 대비 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903명, 2018년 6,910명으로 전년 대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V-1>와 같다.

**<표 IV-1> 2014년~2018년 기타 사업 종사자 재해 현황**

(단위 : 명, 증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
| 기타의 사업(대) | 30,335 | 29,734<br>(-601) | 29,692<br>(-42) | 30,595<br>(↑903) | 37,505<br>(↑6,910) | 157,861 |

## 2. 서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 재해 현황

2014년~2018년 최근 5년간 서비스 관련업종 사고 건 수는 총 162,19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산재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전체 서비스 관련 사고업종 중 33.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이 22.4%, 어린이집이 해당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8,200건으로 11.2%를 차지하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고 중 약 17%인 3,158건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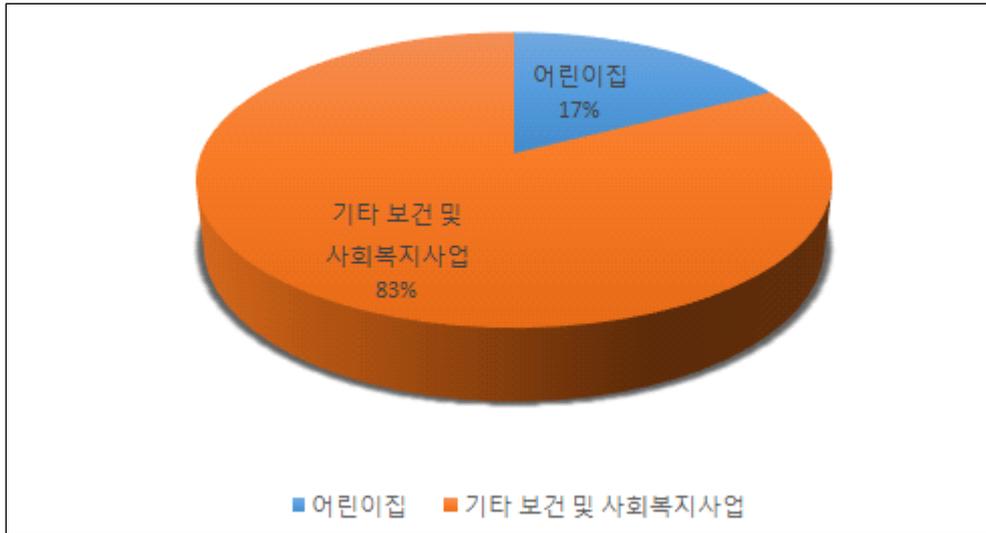
**<표 IV-2> 2013-2017년도 서비스 관련업종 산업재해 현황**

| 업종               | 빈도            | 점유율         |
|------------------|---------------|-------------|
| 음식및숙박업           | 54,933        | 33.9        |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 36,334        | 22.4        |
| <b>보건및사회복지사업</b> | <b>18,200</b> | <b>11.2</b> |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10,690        | 6.6         |
| 사업서비스업           | 10,022        | 6.2         |
| 교육서비스업           | 6,526         | 4.0         |
|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 3,767         | 2.3         |
| 택시및경차량운수업        | 2,866         | 1.8         |
| 개인및가사서비스업        | 2,771         | 1.7         |
| 운수부대서비스업         | 2,657         | 1.6         |
| 퀵서비스업            | 2,109         | 1.3         |
| 자동차에의한여객운수업      | 1,995         | 1.2         |

| 업종          | 빈도      | 점유율   |
|-------------|---------|-------|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 1,843   | 1.1   |
| 금융업         | 1,362   | 0.8   |
| 농업서비스업      | 1,100   | 0.7   |
| 택배업         | 868     | 0.5   |
| 부동산업        | 700     | 0.4   |
|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611     | 0.4   |
|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 452     | 0.3   |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448     | 0.3   |
| 임대업         | 402     | 0.2   |
| 보험및연금업      | 336     | 0.2   |
| 광고업         | 303     | 0.2   |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 252     | 0.2   |
| 경영건설팅서비스업   | 227     | 0.1   |
|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  | 226     | 0.1   |
|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  | 126     | 0.1   |
| 어업서비스업      | 34      | 0.0   |
| 코리안 서비스     | 18      | 0.0   |
| 예술전문서비스업    | 13      | 0.0   |
| 합계          | 162,191 | 100.0 |

주 1. 산재통계 소업종 기준

2. 서비스 관련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기준과 산재통계 신고 업종 기준으로 연구진이 선정함.



[그림 IV-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어린이집 산재 비율

### 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중) 종사자 재해 현황

2014년~2018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중)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았다. 2014년(2,935명), 2015년(2,891명), 2016년(2,851명), 2017년(2,930명), 2018년(3,671명)으로 <표 IV-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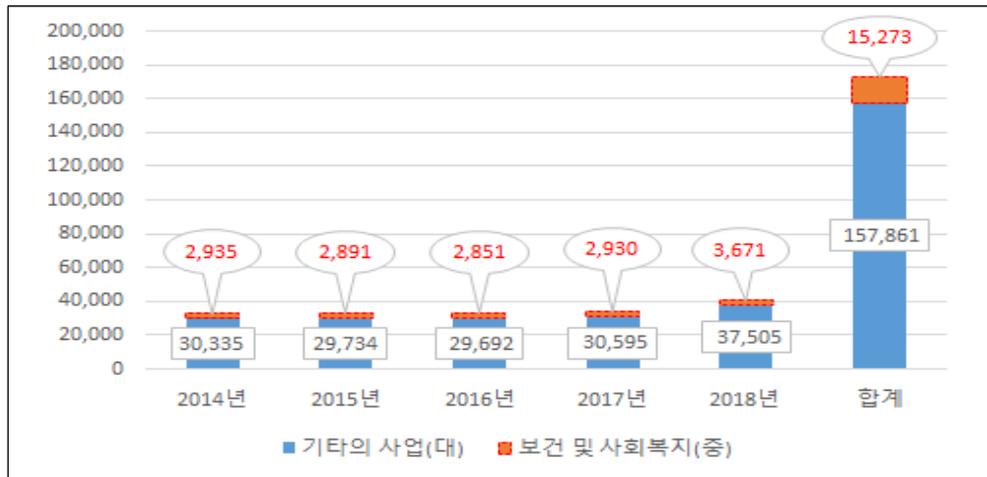
또한 2015년은 전년대비 44명, 2016년은 전년대비 4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년은 79명, 2018년 741명으로 전년대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V-3>와 같다.

**<표 IV-3> 2014년~2018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재해 현황**

(단위 : 명, 증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
| 보건 및 사회복지(중) | 2,935 | 2,891<br>(-44) | 2,851<br>(-40) | 2,930<br>(↑79) | 3,671<br>(↑741) | 15,273 |

기타사업(대)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중 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중)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약 10%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2014년~2018년 기타사업(대) 및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기타사업(대)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총 157,861명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소)종의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비율도 약 1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그림 IV-2]와 같다.

####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처리 현황<sup>62)</sup>

앞의 II장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부분의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경우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육교직원

6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 상해 즉 산업재해 발생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을 청구하여, 상해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청구(2019.09.09.)를 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다.

1) 2014년~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현황<sup>63)</sup>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은 그 보상범위가 사망, 장해시 1억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며, 의료비는 2천만원 한도(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장기간은 공제상품 가입 후 공제로 납부한 다음날부터 가입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나타났으며, 공제료는 11,500원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담보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피공제자)이며,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및 보육 외의 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는 2014년(16,654개소), 2015년(16,527개소), 2016년(19,091개소), 2017년(19,839개소), 2018년(21,510개소)의 어린이집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4>와 같다.<sup>64)</sup>

**<표 IV-4>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현황**

(단위 : 개소, 증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상품가입 개소수 | 16,654 | 16,527<br>(-127) | 19,091<br>(↑2,564) | 19,839<br>(↑748) | 21,510<br>(↑1,671) |

\*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

6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6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또한 2014년~2018년까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27개소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16년 2,564개소, 2017년 748개소, 2018년 1,671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4>와 같다.<sup>65)</sup>

## 2)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현황<sup>66)</sup>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제공받은 2014년~2018년까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통계자료상에서는 2014년(1,398건), 2015년(1,435건), 2016년(1,767건), 2017년(1,786건), 2018년(2,221건)으로 5년간 총 8,607건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5>와 같다.<sup>67)</sup>

### <표 IV-5>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현황

(단위 : 건, 증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
| 급여청구 건수 | 1,398 | 1,435<br>(↑37) | 1,767<br>(↑332) | 1,786<br>(↑19) | 2,221<br>(↑435) | 8,607 |

\*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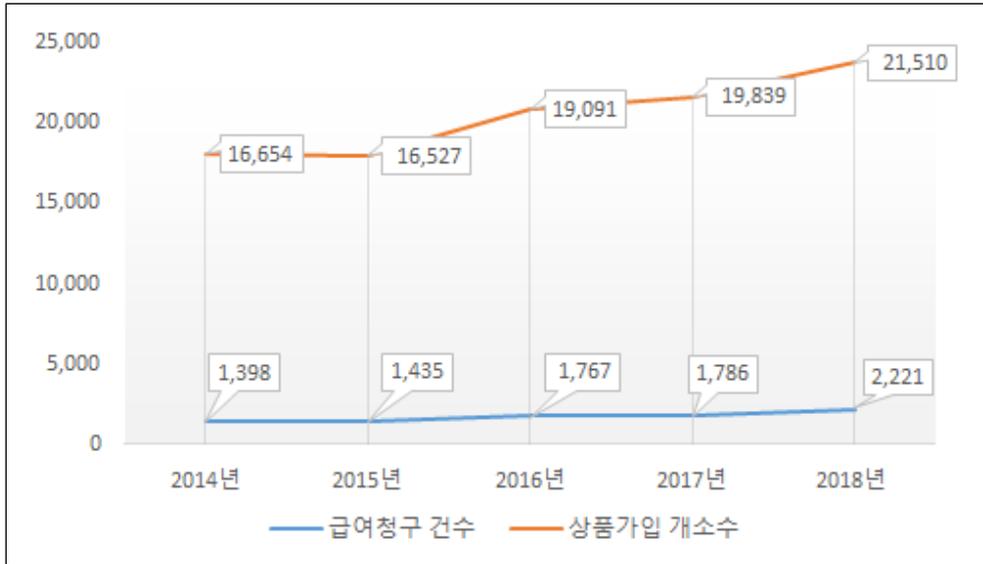
이러한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 역시 앞의 <표 IV-5>와 같이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증가와 동일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도 2015년부터 전년 대비 37건, 2016년 332건, 2017년 19건, 2018년 4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5>와 같다.<sup>68)</sup>

6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66)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6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68)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2019.09.30)



**[그림 IV-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 및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

\*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

위 [그림 IV-3]과 같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와 상해보험 청구 급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개소가 증가할수록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중복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이나 청구서류 제출 안내[그림 IV-4]에서 표명하고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해 사고(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아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비정형적인 산업재해 은폐 유형이며, 공식적인 산업재해 미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 청구서류 제출안내

보육교직원 상해

| 구분        | 필요서류   |        |                             |           |      |          |                                   |          |       |
|-----------|--|--------|-----------------------------|-----------|------|----------|-----------------------------------|----------|-------|
| 통원치료      | 1. 초진차트(응급실 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br>2.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치료 항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br>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환자의 성함이 기재된 병원·약국영수증(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가)<br>4. 진단서(병원, 약국 등 총 수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br>5. 통장사본<br>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           |      |          |                                   |          |       |
| 입원치료      | 1. 초진차트(응급실 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br>2. 입원비 세부내역서<br>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환자의 성함이 기재된 병원·약국영수증(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가)<br>4. 진단서(병원, 약국 등 총 수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br>5. 상급병실사용확인서<br>(병실부족으로 무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면 7일내보장, 사유기재 必)<br>6. 통장사본<br>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           |      |          |                                   |          |       |
| 사망 및 장해   | 별도안내   |        |                             |           |      |          |                                   |          |       |
| 지급계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운영비 계좌</td> <td>필요없음(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td> </tr> <tr> <td>원장(개인 계좌)</td> <td>통장사본</td> </tr> <tr> <td>대표자 개인계좌</td> <td>1. 통장사본<br/>2.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고유번호증)</td> </tr> <tr> <td>교직원 개인계좌</td> <td>통장 사본</td> </tr> </table> | 운영비 계좌 | 필요없음(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원장(개인 계좌) | 통장사본 | 대표자 개인계좌 | 1. 통장사본<br>2.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 교직원 개인계좌 | 통장 사본 |
| 운영비 계좌    | 필요없음(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                             |           |      |          |                                   |          |       |
| 원장(개인 계좌) | 통장사본   |        |                             |           |      |          |                                   |          |       |
| 대표자 개인계좌  | 1. 통장사본<br>2.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      |          |                                   |          |       |
| 교직원 개인계좌  | 통장 사본  |        |                             |           |      |          |                                   |          |       |

※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육교직원 상해만 보장 가능하며,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 치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중 90% 지급됩니다. 단 치료 치료비 및 한방치료비의 경우 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 중 90% 지급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보장 제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공제회 홈페이지-자료실-양식다운로드(<http://www.csia.or.kr/csia-board/download.do>)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바랍니다.(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다운로드(<http://www.csia.or.kr/csia-board/download.do>))



### 청구서류 발송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해당 담보    | 팩스번호         | 이메일            |
|----------|--------------|----------------|
| 보육교직원 상해 | 02-6919-9043 | iyg@csia.or.kr |

※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발송 시 영수증 여백에 어린이집 명, 보내시는 서류의 매수를 기재하시고, 절실 수신된 경우 발송하신 팩스번호로 자동으로 회신안내문이 전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0611로 연락바랍니다.

**[그림 IV-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서류 제출안내**

(자료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재율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 수는 매년 평균 500건 정도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재통계율을 산출하면 보육통계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0.19, 산재통계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0.2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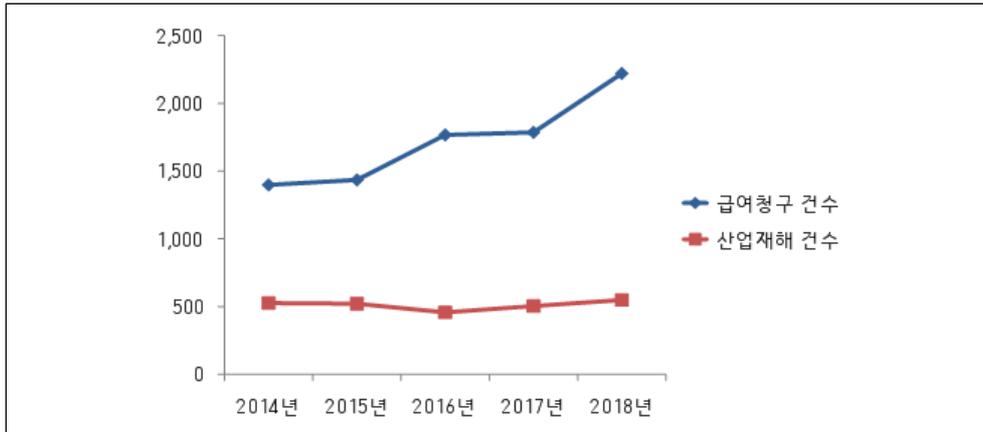
하지만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공제회에 보육교직원 상품으로 급여 청구 건수는 매년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공제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보육교사 대상 급여청구 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급여청구건 수 15만 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급여 건수는 총 14만 건으로(헬스인뉴스 2019.11.4.일자 뉴스<sup>69)</sup>) 지급율이 약 94%수준이다. 이 중 보육교직원 대상 상품은 일반 의료실비보험과 청구요건과 구비서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미뤄볼 때 대부분의 급여청구 건수는 실지급된 급여청구 건수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 공제회 급여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도 산재율을 계산하면 보육통계 종사자 수를 모수로 하였을 때는 0.94, 산재통계 종사자 수 근거로 하였을 때는 1.05로 2018년 발표된 산재율 0.5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어린이집 공제회에 미가입된 어린이집이 45% 된다는 것을 추정해 볼 때 은폐되어 있는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6> 연도별 보육교직원 상품 급여청구 건수**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급여청구 건수 | 1,398 | 1,435 | 1,767 | 1,786 | 2,221 |

출처: 어린이집 통계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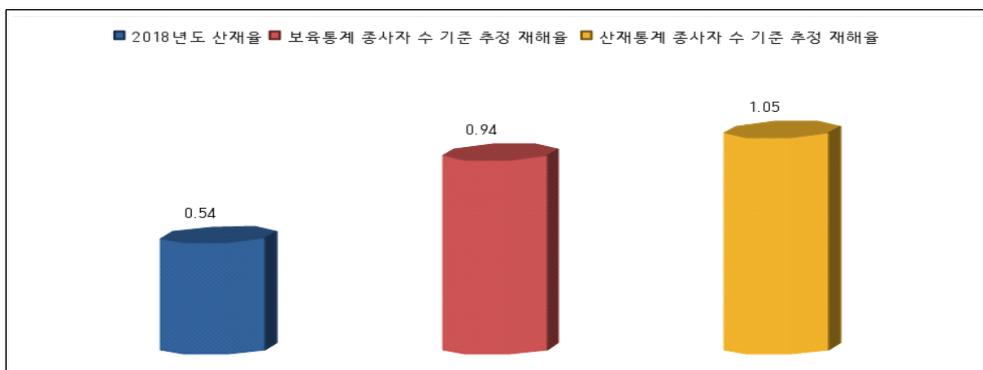
69)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0>



[그림 IV-5] 연도별 급여청구 및 산업재해 건 수

<표 IV-7> 2018년 기준 종사자수 및 산재건수 등 현황

| 구분                     | 보육통계 종사자 수 | 산재통계 종사자 수 |
|------------------------|------------|------------|
| 종사자수                   | 294,249    | 263,347    |
| 산재건수                   | 549        |            |
| 산재율                    | 0.19       | 0.21       |
|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 건수<br>(은폐) | 2221       |            |
| 추정 산재율<br>(공제회 포함)     | 0.94       | 1.05       |



[그림 IV-6] 201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추정 산재율

더 많은 은폐가 있을 것을 추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육아종합지원센터<표 IV-8 참고>에서 질병, 사고로 대체교사를 지원한 건 수이다. 2017년 7월까지 질병 및 사고를 사유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진 않았으나 2017년 8월부터 지원해 준 결과 2018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7,194건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질병 및 사고로 신청한 건수가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으나 산재통계 건 수 및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자료이고,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 모두 대체교사 건수를 모두 지원하지 못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로 밝혀진 것 외에 산재 관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IV-8> 연도별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 신청 현황**

| 지원사유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br>8월~12월 | 2018<br>1월~12월 |
|-------------------------|-----------------|-------|-------|-----------------|----------------|
| 본인 질병 등<br>사고<br>(신청건수) | 해당 사유로<br>지원 안함 | 1,117 | 7,194 |                 |                |

## 5.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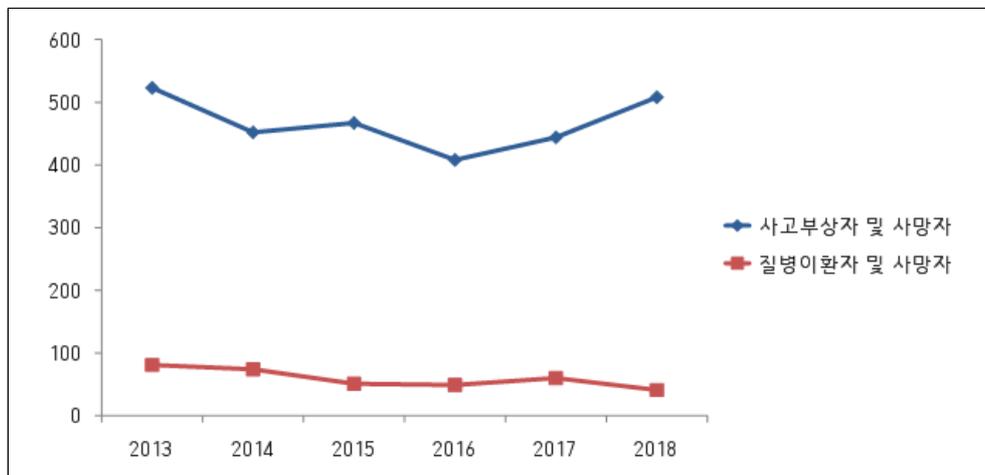
#### (1)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재해(2013년~2017년)

최근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 수는 3,158건이고 매년 사고부상과 질병이환 건수가 평균 5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건 중 88.7%(2,802건)가 사고이고 질병이환은 11.9%(356건)이다.

<표 IV-9> 2013년~2017년 연도별 재해 건수

(단위: 건수, (%))

| 연도   | 사고부상자 및 사망자 | 질병이환자 및 사망자 | 계            |
|------|-------------|-------------|--------------|
| 2013 | 523(86.6)   | 81(13.4)    | 604(19.1)    |
| 2014 | 452(85.9)   | 74(13.9)    | 526(16.6)    |
| 2015 | 467(90.2)   | 51(9.8)     | 521(16.4)    |
| 2016 | 408(89.3)   | 49(10.7)    | 457(14.4)    |
| 2017 | 444(87.9)   | 60(11.5)    | 504(16.0)    |
| 2018 | 508(92.5)   | 41(7.5)     | 549(17.4)    |
| 계    | 2,802(88.7) | 356(11.1)   | 3,158(100.0) |



[그림 IV-7] 연도별 재해 건수 그래프(201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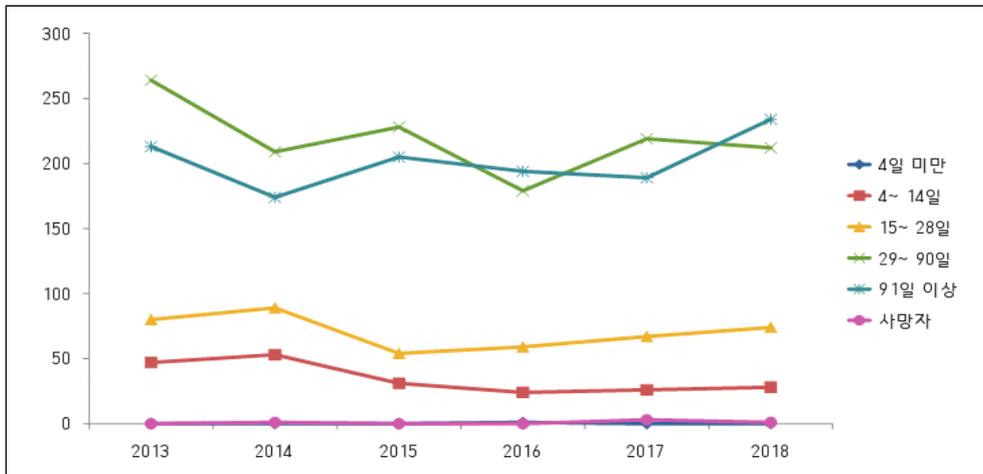
(2) 요양일수별 산업재해

요양일수 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9~90일이 42.0%(1,10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1일 이상 37.6%(993), 15~28일이 13.3%로 순으로 <표 IV-10> 나타났다. 90% 이상의 재해가 최소 15일 이상의 요양일 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요양일 수 별 재해 현황

(단위: 건수, (%))

| 연도   | 4일미만   | 4~ 14일   | 15~ 28일   | 29~ 90일     | 91일 이상      | 사망자    | 계     |
|------|--------|----------|-----------|-------------|-------------|--------|-------|
| 2013 | -      | 47(7.8)  | 80(13.2)  | 264(43.7)   | 213(35.3)   | -      | 604   |
| 2014 | -      | 53(10.1) | 89(16.9)  | 209(39.7)   | 174(33.1)   | 1(0.2) | 526   |
| 2015 | -      | 31(6.0)  | 54(10.4)  | 228(44.4)   | 205(39.6)   | -      | 518   |
| 2016 | 1(0.2) | 24(5.3)  | 59(12.9)  | 179(39.2)   | 194(42.5)   | -      | 457   |
| 2017 | -      | 26(5.2)  | 67(13.3)  | 219(43.5)   | 189(37.5)   | 3(0.6) | 504   |
| 2018 | -      | 28(5.1)  | 74(13.5)  | 212(38.6)   | 234(42.6)   | 1(0.2) | 549   |
| 계    | 1(0.0) | 209(6.6) | 423(13.4) | 1,311(41.5) | 1,209(38.3) | 5(0.2) | 3,158 |



[그림 IV-8] 요양일수별 재해 현황(201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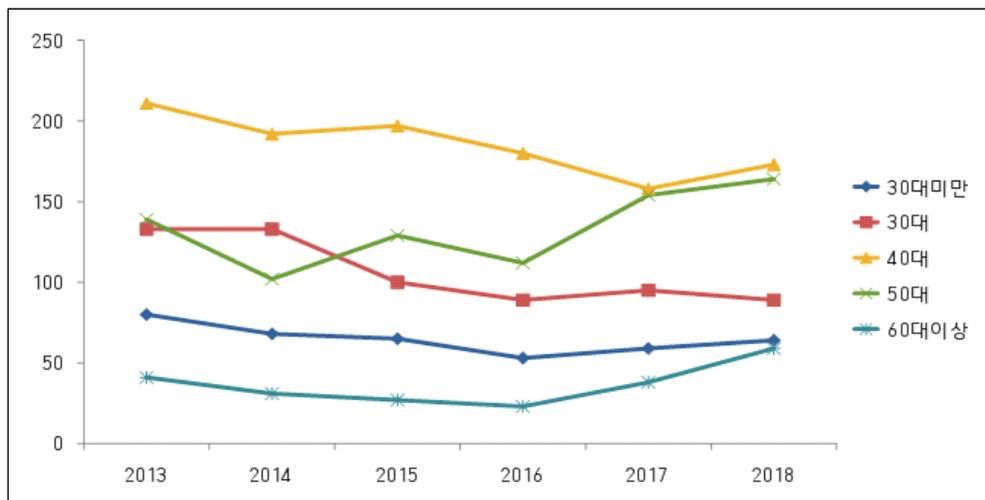
(3) 연령별 재해 현황

연령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5.2%(1,1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5.3%(800건), 30대 미만이 12.3(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약 60% 이상이 40-50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연령별 재해 현황**

(단위: 건수, (%))

| 연도   | 30대 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
|------|-----------|-----------|-------------|-----------|----------|--------------|
| 2013 | 80(13.2)  | 133(22.0) | 211(34.9)   | 139(23.0) | 41(6.8)  | 604(100.0)   |
| 2014 | 68(12.9)  | 133(25.3) | 192(36.5)   | 102(19.4) | 31(5.9)  | 526(100.0)   |
| 2015 | 65(12.5)  | 100(19.3) | 197(38.0)   | 129(24.9) | 27(5.2)  | 518(100.0)   |
| 2016 | 53(11.6)  | 89(19.5)  | 180(39.4)   | 112(24.5) | 23(5.0)  | 457(100.0)   |
| 2017 | 59(11.7)  | 95(18.8)  | 158(31.3)   | 154(30.6) | 38(7.5)  | 504(100.0)   |
| 2018 | 64(11.7)  | 89(16.2)  | 173(31.5)   | 164(29.9) | 59(10.7) | 549(100.0)   |
| 계    | 389(12.3) | 639(20.2) | 1,111(35.2) | 800(25.3) | 219(6.9) | 3,158(100.0) |



**[그림 IV-9] 연령별 재해 현황**

추가적으로 연령에 따른 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았으나 60대의 경우에는 넘어짐의 점유율이 47.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부딪힘 등 많은 활동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는 50대 이상(60대 부딪힘 3.2%)보다는 20~40대(30대 부딪힘 13.9%)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연령 별 재해 발생형태 현황**

(단위: 건수, (%))

| 발생형태             | 30대미만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이상 |      |
|------------------|-------|------|-----|------|-----|------|-----|------|-------|------|
|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 넘어짐              | 113   | 29.0 | 199 | 31.1 | 364 | 32.8 | 304 | 38.0 | 105   | 47.9 |
| 불균형 및<br>무리한동작   | 51    | 13.1 | 76  | 11.9 | 111 | 10.0 | 49  | 6.1  | 9     | 4.1  |
| 부딪힘              | 48    | 12.3 | 89  | 13.9 | 130 | 11.7 | 77  | 9.6  | 7     | 3.2  |
| 작업관련질병<br>(뇌심 등) | 37    | 9.5  | 75  | 11.7 | 140 | 12.6 | 82  | 10.2 | 13    | 5.9  |
| 이상온도 접촉          | 29    | 7.5  | 28  | 4.4  | 71  | 6.4  | 62  | 7.8  | 22    | 10.0 |
| 절단·베임·찢림         | 23    | 5.9  | 34  | 5.3  | 65  | 5.9  | 75  | 9.4  | 20    | 9.1  |
| 떨어짐              | 16    | 4.1  | 22  | 3.4  | 55  | 5.0  | 38  | 4.8  | 26    | 11.9 |
| 체육행사 등의<br>사고    | 15    | 3.9  | 30  | 4.7  | 59  | 5.3  | 22  | 2.8  | 1     | 0.5  |
| 끼임               | 13    | 3.3  | 23  | 3.6  | 38  | 3.4  | 31  | 3.9  | 7     | 3.2  |
| 물체에 맞음           | 13    | 3.3  | 24  | 3.8  | 38  | 3.4  | 28  | 3.5  | 4     | 1.8  |
| 사업장의교통<br>사고     | 12    | 3.1  | 25  | 3.9  | 21  | 1.9  | 12  | 1.5  | 4     | 1.8  |
| 깔림·뒤집힘           | 9     | 2.3  | 5   | 0.8  | 11  | 1.0  | 5   | 0.6  | -     | -    |
| 직업병<br>(진폐 제외)   | 4     | 1.0  | 2   | 0.3  | 2   | 0.2  | 1   | 0.1  | -     | -    |
| 폭력행위             | 3     | 0.8  | -   | -    | 1   | 0.1  | 4   | 0.5  | -     | -    |
| 화학물질누출·<br>접촉    | 2     | 0.5  | 1   | 0.2  | 1   | 0.1  | 2   | 0.2  | 1     | 0.50 |
| 동물상해             | 1     | 0.3  | 3   | 0.5  | 1   | 0.1  | 1   | 0.1  | -     | -    |
| 감전               | 0     | 0.0  | 1   | 0.2  | 1   | 0.1  | 2   | 0.2  | -     | -    |
| 기타               | 0     | 0.0  | 1   | 0.2  | 1   | 0.1  | 3   | 0.4  | -     | -    |
| 무너짐              | -     | -    | -   | -    | 0   | 0.0  | 2   | 0.2  | -     | -    |
| 분류불능             | -     | -    | -   | -    | 1   | 0.1  | -   | -    | -     | -    |
| 화재               | -     | -    | 1   | 0.2  | 0   | 0.0  | -   | -    | -     | -    |

연령별 질병이환자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근골격계질환이 30대 미만에서는 건수가 34건으로 점유율이 82.9%였다가 30대 이후에 급격하게 건수가 70건으로 증가하고 점유율도 90.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골격계질환은 보육교사로 취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동작에 노출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연령별 질병이환자 발생 유형**

(단위: 건수, (%))

| 직업병<br>유형      | 30대미만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이상 |      |
|----------------|-------|------|-----|------|-----|------|-----|------|-------|------|
|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 근골격계질환         | 34    | 82.9 | 70  | 90.9 | 135 | 95.1 | 79  | 95.2 | 12    | 92.3 |
| 뇌심혈관질환         | 1     | 2.4  | 2   | 2.6  | 2   | 1.4  | 2   | 2.4  | 1     | 7.7  |
| 생물학적인자         | 4     | 9.8  | 2   | 2.6  | 2   | 1.4  | 1   | 1.2  | 0     | 0.0  |
| 작업관련성<br>질환 기타 | 2     | 4.9  | 3   | 3.9  | 3   | 2.1  | 1   | 1.2  | 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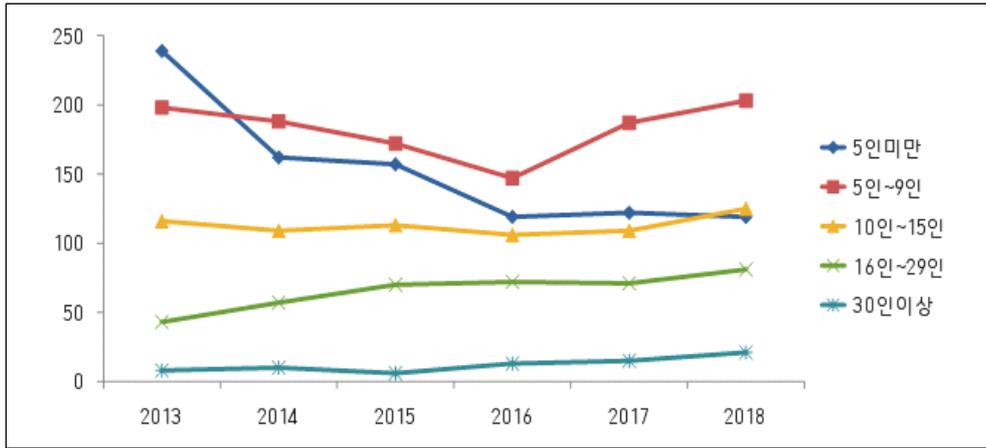
(4)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5-9인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34.7%(1,095건), 5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재해가 29.1%(918건)으로 9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

(단위: 건수, (%))

| 연도   | 5인 미만     | 5인 ~ 9인     | 10인 ~ 15인 | 16인 ~ 29인 | 30인 이상  | 계            |
|------|-----------|-------------|-----------|-----------|---------|--------------|
| 2013 | 239(39.6) | 198(32.8)   | 116(19.2) | 43(7.7)   | 8(1.3)  | 604(100.0)   |
| 2014 | 162(30.8) | 188(35.7)   | 109(20.7) | 57(10.8)  | 10(1.9) | 526(100.0)   |
| 2015 | 157(30.3) | 172(33.2)   | 113(21.8) | 70(13.5)  | 6(1.2)  | 518(100.0)   |
| 2016 | 119(26.0) | 147(32.2)   | 106(23.2) | 72(15.8)  | 13(2.8) | 457(100.0)   |
| 2017 | 122(24.2) | 187(37.1)   | 109(21.6) | 71(14.1)  | 15(3.0) | 504(100.0)   |
| 2018 | 119(21.7) | 203(37.0)   | 125(22.8) | 81(14.8)  | 21(3.8) | 549(100.0)   |
| 계    | 918(29.1) | 1,095(34.7) | 678(21.5) | 394(12.5) | 73(2.3) | 3,158(100.0) |



[그림 IV-10] 종사자 규모별 재해 현황

(5) 기인물별 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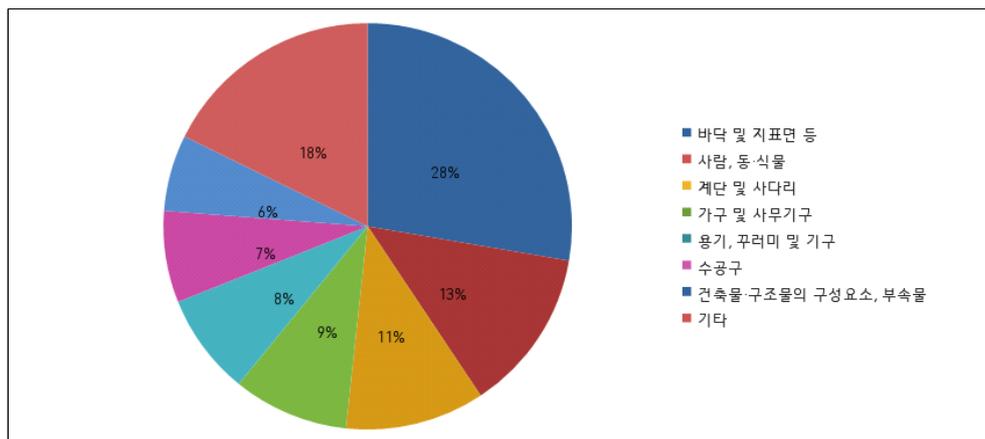
2013년~2018년도 어린이집 재해에서 기인물 현황을 살펴보면 바닥 및 지표면 등이 24.6%(77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람, 동·식물 11.5%(363건), 계단 및 사다리 9.8%(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기인물별 재해 현황

(단위: 건수, (%))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
| 1  | 바닥 및 지표면 등   | 776 | 27.7 | 15 | 전기설비, 부품       | 9  | 0.3 |
| 2  | 사람, 동·식물     | 363 | 13   | 16 | 재 료            | 8  | 0.3 |
| 3  | 계단 및 사다리     | 309 | 11   | 17 | 조각, 파편, 쓰레기    | 8  | 0.3 |
| 4  | 가구 및 사무기구    | 257 | 9.2  | 18 | 일반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 7  | 0.2 |
| 5  | 용기, 꾸러미 및 기구 | 226 | 8.1  | 19 | 특수공정 설비·기계     | 7  | 0.2 |
| 6  | 수공구          | 204 | 7.3  | 20 | 화학제품           | 7  | 0.2 |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
| 7  | 건축물·구조물의 구성요소, 부속물    | 170 | 6.1 | 21 | 비계 및 작업발판             | 6  | 0.2 |
| 8  | 육상교통수단                | 169 | 6   | 22 | 상세정보 부족한 부품, 부속물 및 재료 | 6  | 0.2 |
| 9  | 생활용품 및 기구             | 110 | 3.9 | 23 | 단부 및 개구부              | 5  | 0.2 |
| 10 | 기타 설비·기계              | 42  | 1.5 | 24 | 비금속광물 제품              | 5  | 0.2 |
| 11 | 기타 건물·구조물             | 37  | 1.3 | 25 | 운반, 인양 설비·기계          | 5  | 0.2 |
| 12 | 휴대용공구(동력)             | 22  | 0.8 | 26 | 기타 가설구조물              | 4  | 0.1 |
| 13 | 상세정보 부족한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 | 11  | 0.4 | 27 | 인력용기계기구               | 4  | 0.1 |
| 14 | 기타 용기, 용품, 가구 및 기구    | 9   | 0.3 | 28 | 농림어업용 설비·기계           | 3  | 0.1 |



[그림 IV-11] 기인물별 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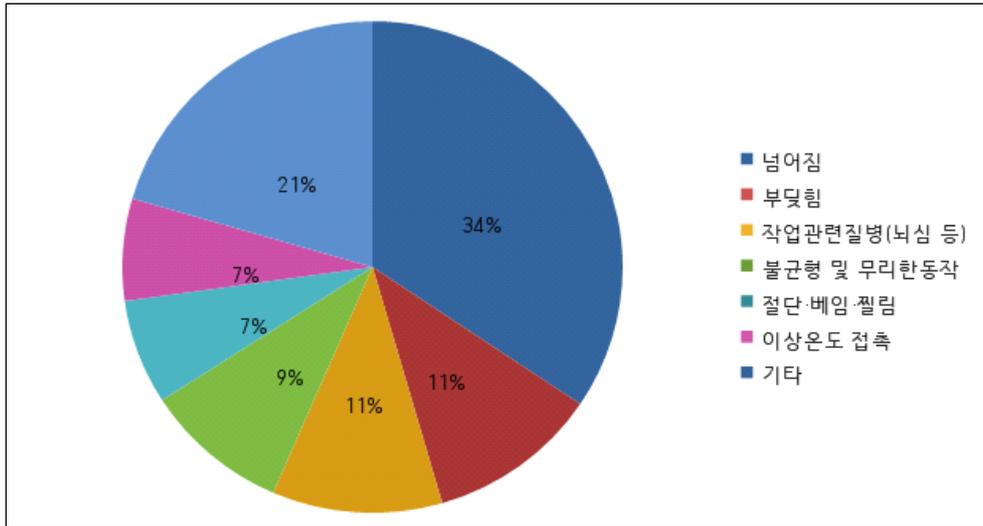
## (6)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2013년~2018년도 어린이집 재해의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넘어짐이 34.4%(1,0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 11.1(351건) 작업관련 질병(뇌심 등) 11.0(347), 부딪힘 10.9%(289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9.4(2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단위: 건수, (%))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순위 | 기인물            | 건수 | 점유율 |
|----|------------------|-------|------|----|----------------|----|-----|
| 1  | 넘어짐              | 1,085 | 34.4 | 12 | 깔림·뒤집힘         | 30 | 0.9 |
| 2  | 부딪힘              | 351   | 11.1 | 13 | 직업병<br>(진폐 제외) | 9  | 0.3 |
| 3  | 작업관련질<br>병(뇌심 등) | 347   | 11.0 | 14 | 폭력행위           | 8  | 0.3 |
| 4  | 불균형 및<br>무리한동작   | 296   | 9.4  | 15 | 화학물질누출·<br>접촉  | 7  | 0.2 |
| 5  | 절단·베임·<br>찔림     | 217   | 6.9  | 16 | 동물상해           | 6  | 0.2 |
| 6  | 이상온도<br>접촉       | 212   | 6.7  | 17 | 기타             | 5  | 0.2 |
| 7  | 떨어짐              | 157   | 5    | 18 | 감전             | 4  | 0.1 |
| 8  | 체육행사<br>등의 사고    | 127   | 4    | 19 | 무너짐            | 2  | 0.1 |
| 9  | 끼임               | 112   | 3.5  | 20 | 분류불능           | 1  | 0.0 |
| 10 | 물체에 맞음           | 107   | 3.4  | 21 | 화재             | 1  | 0.0 |
| 11 | 사업장외교<br>통사고     | 74    | 2.3  |    |                |    |     |



[그림 IV-11]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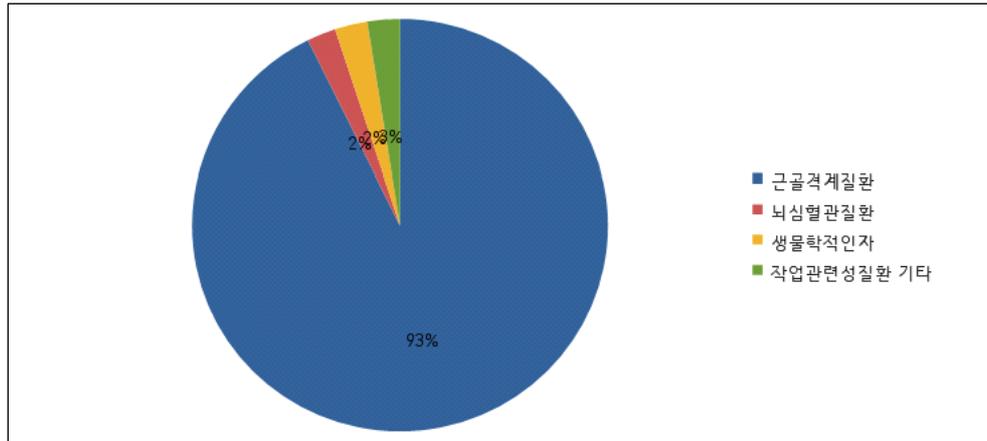
(7)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사고성 재해)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92.7%(29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인자 2.9%(9건), 뇌심혈관질환 2.2%(7건) 순으로 <표 IV-17> 나타났다.

<표 IV-17> 질병이환자 발병 유형

(단위: 건수, (%))

| 연도   | 근골격계질환    | 뇌심혈관질환 | 생물학적인자 | 작업관련성질환<br>기타 | 계   |
|------|-----------|--------|--------|---------------|-----|
| 2013 | 73(90.1)  | 2(2.5) | 5(6.2) | 1(1.2)        | 81  |
| 2014 | 71(95.9)  | 1(1.4) | -      | 2(2.7)        | 74  |
| 2015 | 50(98.0)  | -      | 1(2.0) | -             | 51  |
| 2016 | 47(95.9)  | 1(2.0) | -      | 1(2.0)        | 49  |
| 2017 | 51(85.0)  | 3(5.0) | 3(5.0) | 3(5.0)        | 60  |
| 2018 | 38(92.7)  | 1(2.4) | -      | 2(4.9)        | 41  |
| 계    | 330(92.7) | 8(2.2) | 9(2.5) | 9(2.5)        | 356 |



[그림 IV-13] 질병이환자 발병 유형

## 2) 발생형태별 대표 재해사례

### (1) 넘어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넘어짐 재해였다. 사고개요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의 대소변 등의 뒤처리 등의 업무로 인해 화장실 미끄럼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계단 등이 영유아에 맞춰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유아들이 우는 경우 급박하게 달래주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표 IV-18>에서 나타났다.

**<표 IV-18> 넘어짐 재해사례**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41 | 36       |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마친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가던 중 평소처럼 영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열려 있는 안전문에 발이 닿은 순간 미끄러져 안정이 벗겨지는등 심하게 넘어져 다침.              |
| 38 | 22       | 어린이집 부엌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다 넘어져서 다침.   |
| 38 | 148      | 어린이집에서 상기인이 3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1층 사무실로 내려오는 도중 발을 헛딛어 계단에서 넘어져 수상함  |
| 46 | 246      | 상기 재해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던중 12시30분경 어린이집 구내 화장실에서 아이들 소변 뒤처리를 도와주다 화장실바닥에 미끄러지며 주저앉아 우측 발목을 다쳐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임.    |
| 47 | 33       | 어린이집 내에서 아기 목욕을 시키던중에 비누에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같이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바닥을 집다가 부상을 입음.                                    |
| 52 | 241      | 만1세 교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급하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교실안에서 다리가 꼬이며 넘어지는 순간 아이들을 향해 안 넘어지려고 몸을 지탱하려다 무릎을 꿇어서 다침 |

## (2) 질병이환(근골격계)

질병이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주로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업어주고 안아주거나 배변을 위해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리 등에 디스크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차량 탑승을 위해서도 허리나 팔을 굽히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표 IV-19>에서 나타났다.

**<표 IV-19> 근골격계 재해 사례**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50 | 28       | 어린이집 내 화장실에서 영아를 배변하기 위해 변기에 앉히고 소변을 본 후 영아를 안아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  |
| 58 | 393      | 평소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영아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을 자주 하다가 10월 초에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음. 앉거나 허리를 기역자로 굽히면 통증이 없었으나 서거나 걷거나 할 때 통증이 심하였음. 며칠간 파스붙이고 자가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10.15. 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11.1. 퇴사함. 이후 대전우리병원에 가서 MRI 촬영한 바 디스크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 후 증세 호전됨.  |
| 38 | 27       | 소방서 견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 영아들을 차량에 태우며 인솔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남.  |
| 29 | 126      |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원아를 안아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상병명 “요추 제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관 부분 손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신청하고, 동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질병이 유발되었다며 상병명 “양측 고관절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및 삼출액”을 신청함   |
| 32 | 6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만2세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업무특성상 영아들을 안아주거나 환경정리등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동안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방사선 촬영을 통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고 틈틈이 업무와 치료를 병행했지만 잦은 야근과 철야업무를 하면서 통증은 심해졌고 직장이 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 일을 쉴수없었기에 진통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통증은 극에 달했고 MRI촬영결과 어깨 충돌증후군 및 염증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 받고 약물치료 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수술하지 않고 호전될 방법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

## (3) 부딪힘

부딪힘 사고는 교구 등을 이동하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들의 갑작스러운 장난 등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영유아를 대신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표 IV-20>에서 나타났다.

**<표 IV-20> 부딪힘 재해 사례**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47 | 42       | 어린이집 자료실에서 교구를 운반하던 중 문 모서리에 부딪침   |
| 41 | 49       | 교사는 오른손에 식판, 왼손은 아동이 계단에 넘어질까 팔을 뻗은 상태였으며, 1차 충격은 아동이 3층 계단으로 아동이 달려와 교사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버리면서 허리가 휘청거렸고, 다시 3층 계단을 조금 내려온 복도에서 2차 충격으로 밀어버려 허리가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고,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료교사께서 119에 신고하여 박병원 응급실로 오게되었습니다.   |
| 32 | 9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등원시간 입구에서 만 2세 아이의 신발을 벗겨주는 중에 뒤에 있던 만 4세 아이가 아는체하며 동작을 크게하던 중, 주먹으로 좌측 눈을 맞게 된 재해  |
| 40 | 36       |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생일행사 준비를 위해 생일상을 차리는 중 유희실에서 놀이하던 4세 아동이 가로67*높이56*너비25 무게 3.2kg가 되는 딱딱한 핑크색 티틀타익스 쇼핑카트로 밀며 놀이하던 중 3~4m거리를 달려와 뒤돌아서 상을 차리는 본인의 허리를 뒤에서 가격한 일입니다.유희실내에는 CCTV가 가동중이고 동료교사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허리의 강한 충격이 있었으나 직업의 특성상 아이들이 달려드는 일이 많아 괜찮아 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 이하 골반 다리에 저림과 극심한 통증이 있어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동료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하루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른쪽 허리이하 골반 다리끝까지 잠을 잘수도 없을만큼 고통이 심해 진통제를 먹고 버티다가 다음날 원장님이 병원에 가길 권유해서 진료받았습니다. |
| 48 | 43       | 에어바운스(놀이기구)에서 3세 아이가 점프하며 뛰면서 머리가 교사 손목 뼈에 부딪혀 손목 통증과 팔과 손이 통증이 발생함  |

## (4) (불균형) 무리한 동작(작업자세)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은 어린이집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중 교사들의 이동이 많아지거나, 무리한 자세로 사진 촬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리한 동작이 발생해 재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 IV-21>에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안고 일어서는 행동을 반복할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IV-21>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례**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40 | 68       | 사업장내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중 계단에서 이동시 발을 접질림   |
| 22 | 79       | 위 일시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의 간식을 챙겨주기전 앉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물뜨러 가다가 다리절입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좌측 발을 접질러 부상입음.  |
| 40 | 28       |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우는 영아를 달래기 위해 일어나서 안고 있었다. 영아가 잘 다래지지 않아서 장시간 안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영아를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껴서 다른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됨  |
| 26 | 56       | 어린이집에서 새학기 맞이 교실정리를 하던 중 동료교사와 함께 계단에서 교구장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더 부상을 당함.   |
| 47 | 136      | 청소년회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발표회 행사를 하였고 업무의 일부로 유아들의 발표회 활동모습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느라 수십차례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꼈음 부종을 동반한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되어 행사를 끝내고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 접수하여 대기중 하다 응급환자의 수가 많아 진료가 늦어져 일단 귀가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게되었고 좌측무릎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권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음 |

## (5) 절단·베임·찔림

절단·베임·찔림은 수업준비를 위해 교구를 제작하거나 어린이집 환경 정비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 IV-22>에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체험 활동 등을 하는 경우 농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lt;표 IV-22&gt; 절단·베임·찔림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22 | 129      | 옥상 앞 3층 계단에서 평가를 위한 원내 환경 정비를 위해 벽면 먼지와 등위의 먼지를 제거하라고 하여 오른손으로 긴 밀대걸레를 들고 천정에 있는 등위 먼지를 제거하려고 닦던 중 밀대걸레가 등에 부딪혀 깨져서 떨어지는 것을 아래에 있는 교사들이 다칠까봐 왼손으로 받는 과정에서 깨진 등에 의해 왼손을 다침 |
| 25 | 23       | 수업재료 준비 중 모루를 가위로 자르다가 왼손 검지의 구부러지는 두번째 마디 윗부분을 V자 형태로 잘림   |
| 47 | 42       | 어린이집에서 유리창에 붙어있는 찌팅지 잔해를 벗기는 작업시 밀칼에 오른손 엄지를 다쳤음  |
| 41 | 20       | 원아들을 위한 교구 제작시 카트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베임.   |
| 37 | 61       | 어린이집 아이들과 고구마캐기 체험을 위해 미리 고구마 줄기를 낮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왼손 두번째 손가락을 베임. 바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하고 수술을 하였음.  |

## (6)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 발생

보육교사의 사고가 또한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야외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이다. 야외 활동시 진드기 등 감염체에 노출되어 찌르거나 무시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야외활동 시 활동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이동 중에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야외활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표 IV-23> 야외활동 지도로 인한 사고**

| 연령 | 요양<br>일수 | 사고개요  |
|----|----------|---|
| 55 | 13       | 의자마을에 도착하여 소속 어린이들과 견학할 당시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동년 10.15.부터 목이 아프고 오한이 생겼고, 다음날부터 열과 목 주변에 발진이 있었으며, 저녁이 되면 오한과 발진이 있었지만 단 순히 감기인줄 알고 자택에서 가까운 강남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후 복용하였는데도 호전이 없었고, 10.21.의원에 내원하니 왼쪽 옆구리와 등에 병변이 생겼음이 확인되어 의원 주치의가 대학교병원을 내원할 권유(소견서 작성)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니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음.                                   |
| 28 | 16       |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1~2회 1시간정도 매일 바깥놀이를 진행합니다. 잔디밭을 아이들과 매일 가는데 그곳에서 등에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에 걸렸습니다  |
| 57 | 사망       | 당일 야외 체험수업이 있어서 원생과 교사 모두 칠곡에 가서 사과따기 등 체험행사를 마치고 16:00경 어린이집으로 복귀하여 원생들 퇴원시킨후 17:00경 몸이 고단해 교사휴게실에서 쉰 다음 신협에 있는 샤워장에서 샤워후 어린이집에 복귀하여 원감 책상에서 잠시 쉬다가 18:20경 보육교사에게 어지럽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며, 119구급차로 병원에 가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회복이 되지않아 2016. 10. 26. 병원으로 이송하여 2016. 10. 30. 뇌실 외 배액술 시행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016. 11. 6.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
| 46 | 29       |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1.16 (수) 11시경 키즈랜드에 견학(야외 활동)을 갔음. 그 곳 실내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아이들 놀이 장소와 바닥사이 일정한 높이가 있음) 목을 심하게 접질러 부상을 당함.   |
| 36 | 8        | 야외활동 수업중 놀이 시설을 위험하게 이용하게 있던 유아를 받다가 사고남  |

## 6. 소결

앞에서 기타사업(대)의 종사자 재해 현황,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의 종사자 재해 현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처리 현황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IV장의 가장 핵심은 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가 산재 건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와 ②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가 상해보험 급여처리 건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③ 상해보험 청구 건수를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1)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대상과 산재보험 청구대상 비교

#### (1)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대상 및 지급<sup>70)</sup>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대상의 경우 앞의 II장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부분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정의 및 종류에서 검토한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원,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활동 및 보육 외 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상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청구인)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와 어린이집내외 업무수행 중, 기타 통상적인 보육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에 발생한 피해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1)</sup>

70) 금융감독원, 상해보험급여 지급 및 기준 매뉴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7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상해공제 약관(2016.02.29.)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자료.

### (2) 산재보험 청구대상 및 지급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즉 보육교직원이 산재보험 청구대상인지는 V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사무원은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면서 청구대상이다. 즉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종사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이다.<sup>72)</sup>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근로자(종사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sup>73)</sup>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 지급의 종류는 평균임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sup>74)</sup>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사례 별로 청구가 가능하다.

### (3) 산재보험 청구대상 적격 여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사무원 등)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산재보험 청구 대상이다.

## 2)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와 처리건수 동일 여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와 처리건수가 동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급여청구 처리 절차 및 서류 제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제급여시

7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의 산업재해 설명(<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7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의 산업재해 설명(<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7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의 산업재해 설명(<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시스템으로 초진차트(응급실 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공제급여시스템 기입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서류 제출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IV-]참조).

그리고 보육교직원 상해공제 약관(2016.02.29.) 제18조(공제급여의 지급)에 따라 공제급여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5)</sup>

결과적으로 앞의 모든 사항에 부합한다면 상해보험 급여청구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가 산재 건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와 ② 상해보험 급여 청구 건수가 상해보험 급여처리 건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앞에서 2가지 논란의 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 청구 대상이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가 아닌 산재보험에 산재신청·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산재 건수에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를 포함하여, 정확한 산재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업재해 발생 유형 분석 결과

앞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2014년~2018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요양 일수, 연령별, 규모별, 기인물별, 발생형태별, 질병이환자의 발병 유형 등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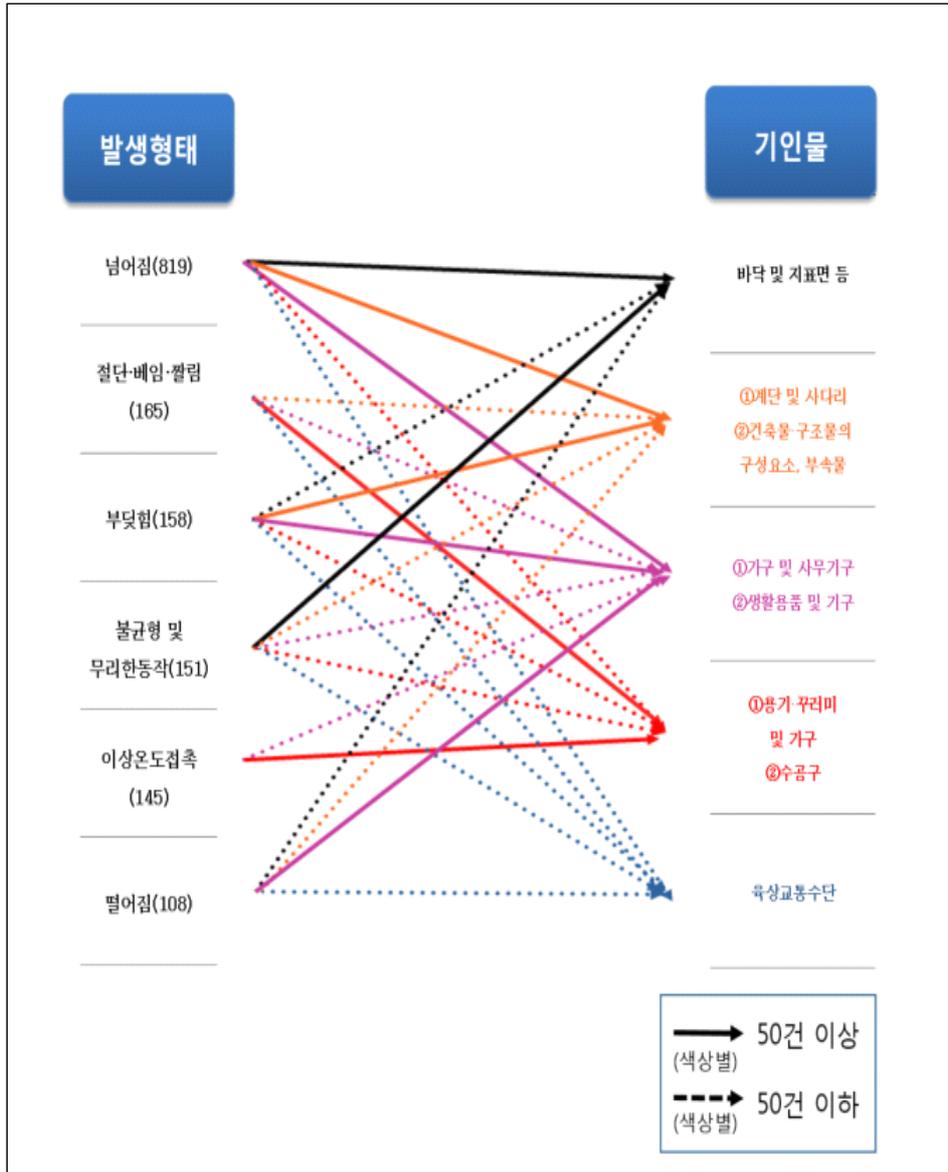
75) 보육교직원상해공제 약관 제18조 제4항

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유형별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면서, 연관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산업재해 발생형태 및 기인물 분석 결과

산업재해 통계자료 중에서 발생형태와 기인물로 분류하여, 발생빈도(건수)를 연계<sup>76)</sup>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IV-14]와 같이 넘어짐(819건), 절단·베임·찢림(165건), 부딪힘(158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51건), 이상온도접촉(145건), 떨어짐(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관성 및 연계성이 있는 기인물은 바닥 및 지표면 등, 계단 및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의 구성요소(부속물), 가구 및 사무기구, 생활용품 및 기구, 용기·꾸러미 및 가구, 수공구, 육상교통수단 등의 순으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V-14 참조].

76) 임진석,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12, 184면~186면 참조.



[그림 IV-14] 산업재해 발생형태 및 기인물 연계성 분석 결과

[그림 IV-14]은 화살표(색깔 및 점선)는 발생형태와 기인물의 연계성을 표기하면서, 발생건수 및 빈도 등을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정색 화살표는 50건 이상(점선 50건 이하)으로 발생형태에서 넘어짐과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이며, 기인물의 바닥 및 지표면과 연계되어 있음을 표시하였다.

둘째, 주황색 화살표는 50건 이상(점선 50건 이하)은 발생형태의 넘어짐과 부딪힘이며, 기인물의 계단 및 사다리, 건축물 구조물의 구성요소(부속물)와 연계성이 있는 것을 표기하였다.

셋째, 빨강색 화살표는 50건 이상(점선 50건 이하)으로 구분하여 발생형태 넘어짐, 절단·베임·찔림과 부딪힘이며, 기인물은 용기·꾸러미 및 가구, 수공구와 연계되는 것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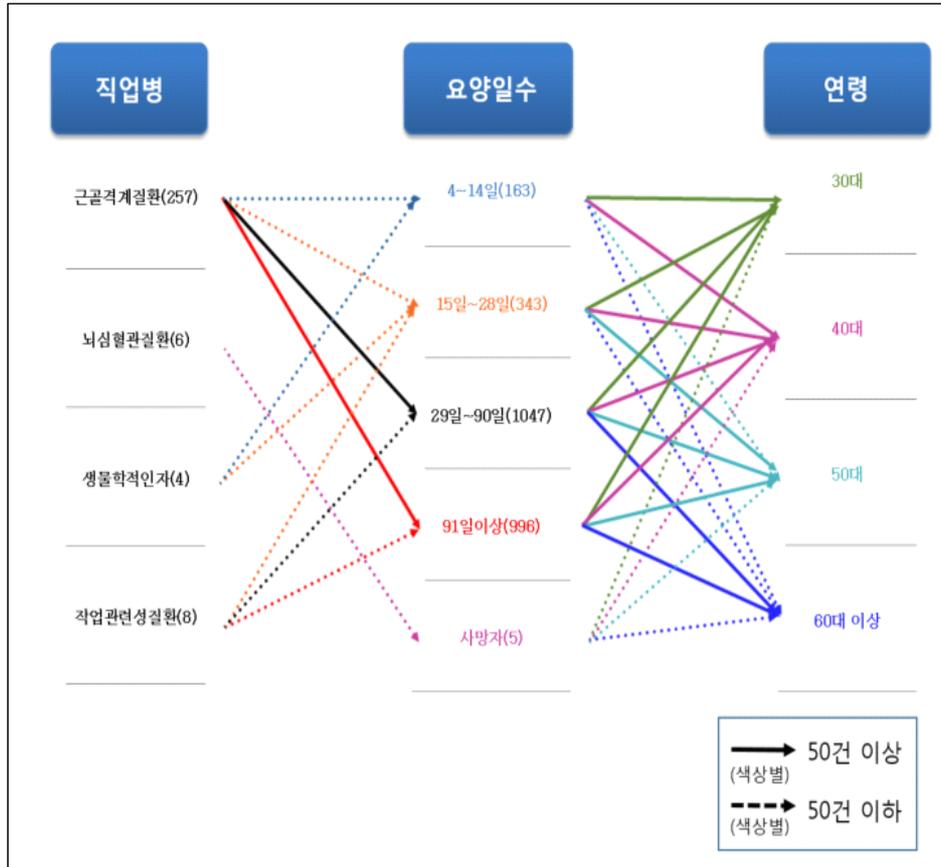
넷째, 보라색 화살표는 발생형태의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이상온도접촉이며, 기인물의 가구 및 사구기구, 생활용품 및 기구와 연관성이 있음을 표기하였다.

마지막, 파랑색 화살표는 발생형태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부딪힘,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떨어짐과 기인물의 육상교통수단과 연계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림 IV- 참조].

## (2) 직업병 및 요양일수·연령 분석 결과

산업재해 통계자료 중에서 직업병, 요양일수, 연령으로 분류하여, 발생빈도(건수)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IV-15]와 같이 근골격계질환(257건), 뇌심혈관질환(6건), 생물학적인자(4건), 직업 관련성 질환(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과 연계되는 요양일수를 확인한 결과 4일~14일(163건), 15일~28일(343건), 29일~90일(1,047건), 91일 이상(996건), 사망자(5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직업병 및 요양일수와 연계하여, 연령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직업병, 요양일수의 발생빈도(건수)가 연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77)</sup>

77) 임진석,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12, 184면~186면 참조.



[그림 IV-15] 산업재해 직업병 및 요양일수 · 연령 연계성 분석 결과

[그림 IV-15]은 화살표(색깔 및 점선)는 직업병, 요양일수, 연령의 연계성을 표기하면서, 발생건수 및 빈도 등을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직업병과 요양일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은색 화살표 및 검은색 점선 50건 이상(점선 50건 이하)은 직업병으로는 근골격계질환(257건)과 작업관련성질환으로 요양일수 29일~90일(1,047건)으로 확인되었다. 즉 요양일수 29일~90일의 근골격계질환과 작업관련성질환은 중상해의 판단기준인 진단 4주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이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빨간색 화살표 50건 이상(점선 50건 이하) 역시 직업병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일수 91일(996건)로 이점 역시 고려하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보라색 점선 화살표는 6건으로 요양일수 사망자(5건)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파랑색 및 주황색 점선 화살표는 근골격계질환과 생물학적인자으로 나누어지고, 요양일수로는 4일~14일(163건)과 15일~28일(343건)으로 나타났다.

요양일수와 연령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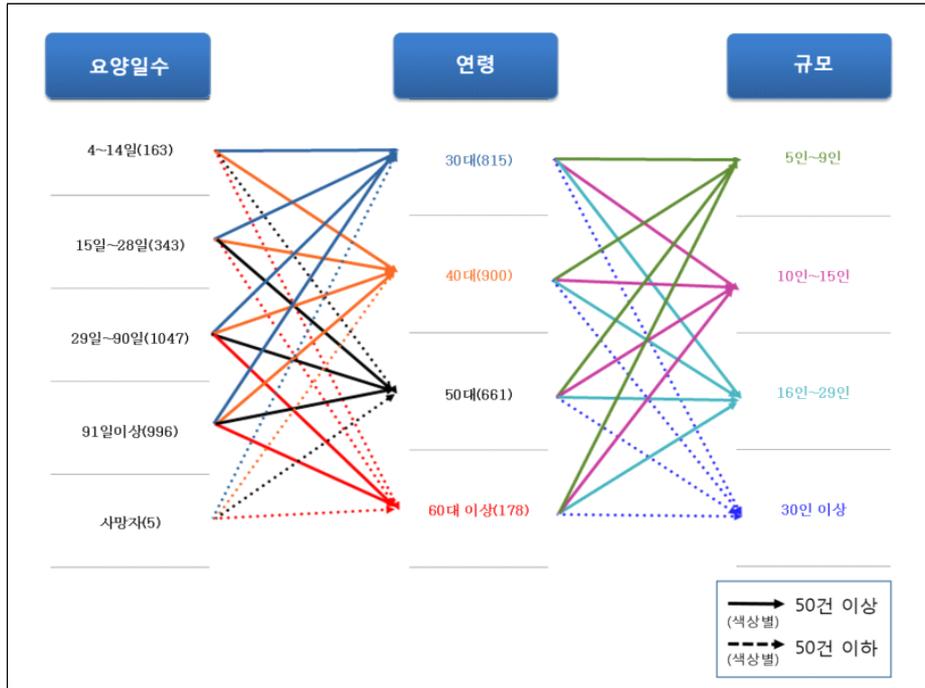
첫째, 초록색 및 보라색 화살표는 요양일수 4일~14일(163건)과 15일~28일(343건)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파랑색 및 하늘색 화살표는 요양일수 29일~90일(1,047건)과 91일 이상(996건), 사망(5건)으로 발생한 연령은 50대와 60대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30대의 요양일수는 4일~14일, 15일~28일, 29일~90일, 91일이상, 사망까지 모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역시 30대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 요양일수 및 연령과 규모 분석 결과

산업재해 통계자료 중에 요양일수, 연령, 규모의 연관성 및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 IV-16]과 같이 나타났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규모별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래 [그림 IV-16]과 같이 요양일수, 연령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6] 산업재해 요양일수, 연령, 규모 연계성 분석 결과

## V.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 1. 보육통계상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통계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 마다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계된 통계자료이며, 국가승인 통계(보건복지부 통계)이다. 이러한 보육통계의 내용은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조사는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이용현황, 어린이집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보육교직원의 실태, 어린이집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보육 내용과 보육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이용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sup>78)</sup>

#### 1)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현황

전국단위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집 중 2018년 기준 총 39,171개소를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 있다.<sup>79)</sup> 이러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연도별 설치 현황은 아래 <표 V-1>와 같다.

7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통계(<http://www.mohw.go.kr/>)

7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통계(<http://www.mohw.go.kr/>)

**<표 V-1>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단위 :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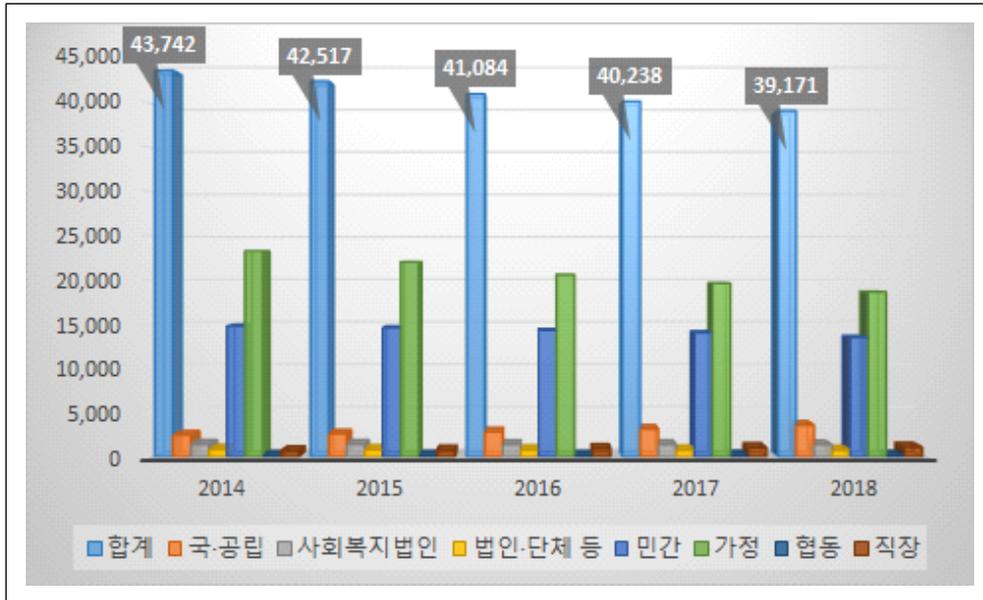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합계 (%)  | 43,742<br>(100%)  | 42,517<br>(100%)  | 41,084<br>(100%)  | 40,238<br>(100%)  | 39,171<br>(100%)  |
| 국·공립    | 2,489<br>(5.7%)   | 2,629<br>(6.2%)   | 2,859<br>(7.0%)   | 3,157<br>(7.8%)   | 3,602<br>(9.2%)   |
| 사회복지법인  | 1,420<br>(3.2%)   | 1,414<br>(3.3%)   | 1,402<br>(3.4%)   | 1,392<br>(3.5%)   | 1,377<br>(3.5%)   |
| 법인·단체 등 | 852<br>(1.9%)     | 834<br>(1.96%)    | 804<br>(2.0%)     | 771<br>(1.9%)     | 748<br>(1.9%)     |
| 민간      | 14,822<br>(33.9%) | 14,626<br>(34.4%) | 14,316<br>(34.8%) | 14,045<br>(34.9%) | 13,518<br>(34.5%) |
| 가정      | 23,318<br>(53.3%) | 22,074<br>(51.9%) | 20,598<br>(50.1%) | 19,656<br>(48.8%) | 18,651<br>(47.6%) |
| 협동      | 149<br>(0.3%)     | 155<br>(0.4%)     | 157<br>(0.4%)     | 164<br>(0.4%)     | 164<br>(0.4%)     |
| 직장      | 692<br>(1.6%)     | 785<br>(1.8%)     | 948<br>(2.3%)     | 1,053<br>(2.6%)   | 1,111<br>(2.8%)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위 <표 V-1>상에서 2014년 43,742개소, 2015년, 42,517개소, 2016년 41,084개소, 2017년 40,238개소, 2018년 39,171개소로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602개소(9.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377개소(3.5%), 법인·단체 어린이집 748개소(1.9%), 민간어린이집 13,518개소(34.5%), 가정어린이집 18,651개소(47.6%), 협동어린이집 164개소(0.4%), 직장어린이집 1,111개소(2.8%) 총 39,171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분포도는 [그림 V-1]와 같다.



[그림 V-1]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현황

[그림 V-1]에서 확인하였듯이 2014년~2018년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약 50%로 차지하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35%,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현황자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에서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이며,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특수보육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현황, 보육교직원, 보육료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되기 위한 통계자료이다.<sup>80)</sup>

80) 보건복지부 승인통계 메뉴

조사방법은 전국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 자료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총 333,420명인 보육교직원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 V-2>와 같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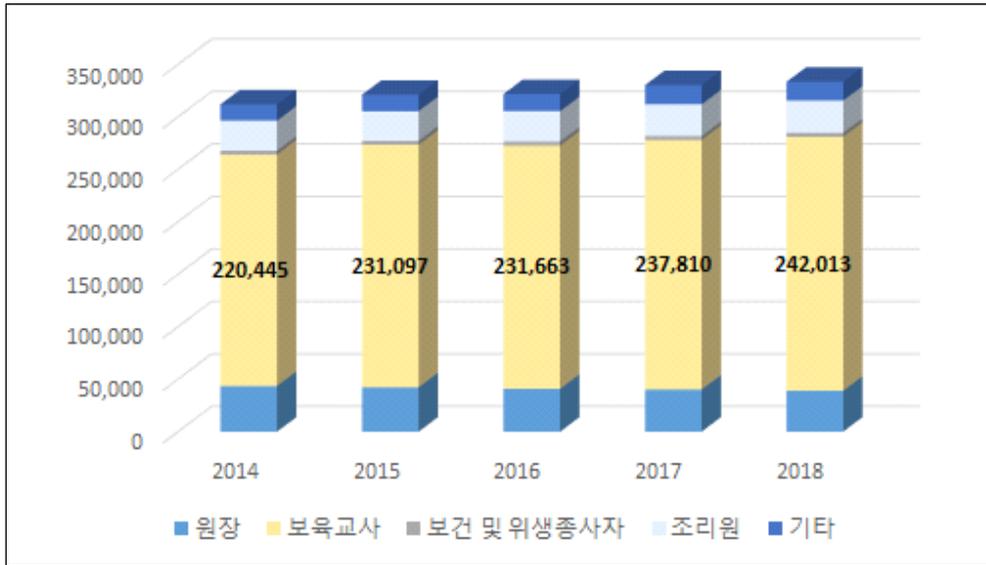
**<표 V-2> 2014년~2018년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단위 :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합계 (%)    | 311,817<br>(100%) | 321,067<br>(100%)  | 321,766<br>(100%)  | 330,217<br>(100%)  | 333,420<br>(100%)  |                    |
| 보육<br>교직원 | 원장                | 43,532<br>(14.0%)  | 42,338<br>(13.0%)  | 40,901<br>(12.7%)  | 40,085<br>(12.1%)  | 38,975<br>(11.2%)  |
|           | 보육교사              | 218,589<br>(70.1%) | 229,116<br>(71.0%) | 229,548<br>(71.3%) | 235,704<br>(71.3%) | 239,996<br>(72.0%) |
|           | 특수교사              | 1,856<br>(0.6%)    | 1,981<br>(0.6%)    | 2,115<br>(0.7%)    | 2,106<br>(0.6%)    | 2,017<br>(0.6%)    |
|           | 치료사               | 546<br>(0.2%)      | 549<br>(0.2%)      | 567<br>(0.2%)      | 600<br>(0.2%)      | 633<br>(0.2%)      |
|           | 영양사               | 926<br>(0.3%)      | 914<br>(0.3%)      | 934<br>(0.3%)      | 944<br>(0.3%)      | 927<br>(0.3%)      |
|           | 간호사               | 1,254<br>(0.4%)    | 1,226<br>(0.4%)    | 1,296<br>(0.4%)    | 1,249<br>(0.4%)    | 1,170<br>(0.4%)    |
|           | 사무원               | 1,140<br>(0.4%)    | 1,154<br>(0.4%)    | 1,142<br>(0.4%)    | 1,135<br>(0.3%)    | 1,099<br>(0.3%)    |
|           | 조리원               | 28,568<br>(9.2%)   | 28,112<br>(8.8%)   | 28,999<br>(9.0%)   | 30,180<br>(9.2%)   | 30,634<br>(9.2%)   |
|           | 기타                | 15,406<br>(4.9%)   | 15,677<br>(4.9%)   | 16,264<br>(5.1%)   | 18,214<br>(5.5%)   | 17,968<br>(5.4%)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2018년 기준으로 총 33만 여명 중 보육교사가 239,996명(72.0%)으로 가장 많으며, 원장 38,975명(11.2%), 그리고 조리원 30,634명(9.2%), 기타 17,968명(5.4%), 특수교사, 간호사, 사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현황

[그림 V-2]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 기타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V-3>의 경우 보육교직원 중 원장을 제외할 경우, 2018년 기준 총 294,444명 중 보육교사가 239,996명(8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원의 경우 30,634명(10.4%), 기타 17,968명(6.1%)으로 차지하여, 약 전체 보육교직원 중 288,598명으로 전체 보육교직원의 약 98%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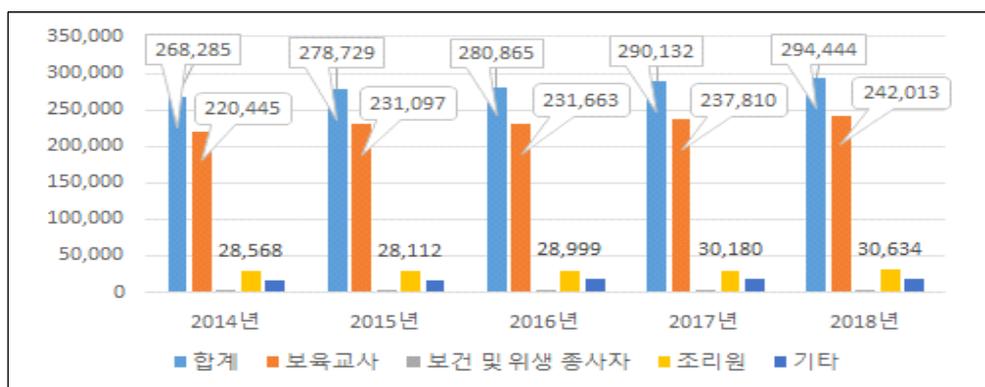
**<표 V-3>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중 원장 제외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단위 :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합계 (%)    | 268,285<br>(100%) | 278,729<br>(100%)  | 280,865<br>(100%)  | 290,132<br>(100%)  | 294,444<br>(100%)  |                    |
| 보육<br>교직원 | 보육교사              | 218,589<br>(81.5%) | 229,116<br>(82.0%) | 229,548<br>(82.0%) | 235,704<br>(81.2%) | 239,996<br>(81.5%) |
|           | 특수교사              | 1,856<br>(0.7%)    | 1,981<br>(0.71%)   | 2,115<br>(0.8%)    | 2,106<br>(0.7%)    | 2,017<br>(0.7%)    |
|           | 치료사               | 546<br>(0.2%)      | 549<br>(0.20%)     | 567<br>(0.2%)      | 600<br>(0.2%)      | 633<br>(0.2%)      |
|           | 영양사               | 926<br>(0.3%)      | 914<br>(0.33%)     | 934<br>(0.3%)      | 944<br>(0.3%)      | 927<br>(0.3%)      |
|           | 간호사               | 1,254<br>(0.5%)    | 1,226<br>(0.44%)   | 1,296<br>(0.5%)    | 1,249<br>(0.4%)    | 1,170<br>(0.4%)    |
|           | 사무원               | 1,140<br>(0.4%)    | 1,154<br>(0.41%)   | 1,142<br>(0.4%)    | 1,135<br>(0.4%)    | 1,099<br>(0.4%)    |
|           | 조리원               | 28,568<br>(10.6%)  | 28,112<br>(10.09%) | 28,999<br>(10.3%)  | 30,180<br>(10.4%)  | 30,634<br>(10.4%)  |
|           | 기타                | 15,406<br>(5.7%)   | 15,677<br>(5.62%)  | 16,264<br>(5.8%)   | 18,214<br>(6.3%)   | 17,968<br>(6.1%)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또한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교사, 사무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아래 [그림 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3]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원장 제외 현황**

##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계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81)</sup>

#### (1) 적용 및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이란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는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인 범위를 의미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sup>82)</sup>

그리고 당연 적용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3)</sup>

#### (2)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 활동하는 것,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sup>84)</sup>

81)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82)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83)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8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적용 대상 근로자<sup>85)</sup>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첫째,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중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고용보험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이며,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2019.01.15.시행)이 된다.

둘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

셋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한다(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넷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이 된다.

여섯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위의 6가지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산재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

8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제도 안내 메뉴(<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 보장보험제도이다.<sup>86)</sup>

#### (1) 적용 및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과 동일하고 다만,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sup>87)</sup>

#### (2) 적용 제외 대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은 고용보험과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둘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셋째, 가구 내 고용활동

넷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위의 4가지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다.<sup>88)</sup>

#### (3) 적용 대상 근로자<sup>89)</sup>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첫째, 65세 이후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86)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메뉴(<https://www.kcomwel.or.kr>)

8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메뉴(<https://www.kcomwel.or.kr>)

88)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메뉴(<https://www.kcomwel.or.kr>)

89)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상 메뉴(<https://www.kcomwel.or.kr>)

둘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포함)

셋째, 외국인근로자 중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산재보험에 적용 대상이다.

넷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다섯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다.

여섯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위의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다.

###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가입 현황

2018년 기준으로 기타 사업(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업체는 1,678,961개소이며, 가입 종사자는 10,058,930명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중)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업체는 149,945개소이고, 가입 종사자는 1,550,008명이고,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40,896개소, 가입 근로자는 263,347명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V-4>와 같다.

**<표 V-4>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 기타 사업(대)  |            | 보건 및<br>사회복지서비스업(중) |           | 보육시설<br>운영업(어린이집)(소) |         |
|------|-----------|------------|---------------------|-----------|----------------------|---------|
|      | 업체        | 종사자        | 업체                  | 종사자       | 업체                   | 종사자     |
| 2018 | 1,678,961 | 10,058,930 | 149,945             | 1,550,008 | 40,896               | 263,347 |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통계

하지만 2018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승인통계)상 보육교직원(원장을 제외한)이 294,444명으로 아래 <표 V-4>처럼 확인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약 31,097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약 31,097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이다.

**<표 V-5> 2014년~2018년 보육교직원 중 원장 제외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단위 :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합계 (%)    | 268,285<br>(100%) | 278,729<br>(100%)  | 280,865<br>(100%)  | 290,132<br>(100%)  | 294,444<br>(100%)  |                    |
| 보육<br>교직원 | 보육교사              | 218,589<br>(81.5%) | 229,116<br>(82.0%) | 229,548<br>(82.0%) | 235,704<br>(81.2%) | 239,996<br>(81.5%) |
|           | 특수교사              | 1,856<br>(0.7%)    | 1,981<br>(0.71%)   | 2,115<br>(0.8%)    | 2,106<br>(0.7%)    | 2,017<br>(0.7%)    |
|           | 치료사               | 546<br>(0.2%)      | 549<br>(0.20%)     | 567<br>(0.2%)      | 600<br>(0.2%)      | 633<br>(0.2%)      |
|           | 영양사               | 926<br>(0.3%)      | 914<br>(0.33%)     | 934<br>(0.3%)      | 944<br>(0.3%)      | 927<br>(0.3%)      |
|           | 간호사               | 1,254<br>(0.5%)    | 1,226<br>(0.44%)   | 1,296<br>(0.5%)    | 1,249<br>(0.4%)    | 1,170<br>(0.4%)    |
|           | 사무원               | 1,140<br>(0.4%)    | 1,154<br>(0.41%)   | 1,142<br>(0.4%)    | 1,135<br>(0.4%)    | 1,099<br>(0.4%)    |
|           | 조리원               | 28,568<br>(10.6%)  | 28,112<br>(10.09%) | 28,999<br>(10.3%)  | 30,180<br>(10.4%)  | 30,634<br>(10.4%)  |
|           | 기타                | 15,406<br>(5.7%)   | 15,677<br>(5.62%)  | 16,264<br>(5.8%)   | 18,214<br>(6.3%)   | 17,968<br>(6.1%)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

### 3. 소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육통계상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계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로 정리하였다.

① 2018년 보육통계 기준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총 39,171개소로 확인되었으나, 2018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자료로 확인한 결과 총 40,896개소로 나타났다. 즉 보육통계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통계상 약 1,725개소가 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어느 통계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② 2018년 보육통계 기준으로는 보육교직원 중 원장(사업주만)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이 총 294,444명으로 나타났고,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통계상에는 총 263,347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 31,097명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로 볼 수 있고, 이는 곧 약 31,097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놓은 보육교직원이라 할 수 있다.

## VI.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조사 현황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실태조사 개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의 약 10% 수준인 300명의 보육교사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시작단계는 2018년도 보육실태 표본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보육교사 노동조합 등에서 보육실태조사 표본을 활용할 경우 원장을 경유하여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원장을 경유하지 않은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수교육 기관 등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시설유형별 표본을 살펴보면 국공립이 8.6%, 사회복지 3.5%, 법인단체 1.9%, 민간, 34.9%, 가정 48.3%, 직장이 2.8%이다.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도 이를 모표본으로 하여 3,400개의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유형별 모표본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할 경우, 조사 규모가 크지 않은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만 표본만 추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국공립, 사회복지 및 법인, 민간 및 가정 직장어린이집이 각각 10% 이상이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본 2018년 보육실태조사 표본의 조사지역 비율에 맞춰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최대한 조사지역에 맞춰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VI-1> 시설유형별 목표본**

(단위 : 개소, %)

| 지역규모        | 시설유형           |                |              |                  |                  |                | 합계                |
|-------------|----------------|----------------|--------------|------------------|------------------|----------------|-------------------|
|             | 국공립            | 사회복지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직장             |                   |
| 대도시         | 1,905          | 370            | 227          | 5,000            | 6,397            | 508            | 14,407            |
| 중소도시        | 825            | 275            | 183          | 5,572            | 9,831            | 379            | 17065             |
| 농어촌         | 674            | 734            | 341          | 3,107            | 2,721            | 210            | 7787              |
| 합계<br>(구성비) | 3,404<br>(8.6) | 1,379<br>(3.5) | 751<br>(1.9) | 13,679<br>(34.9) | 18,949<br>(48.3) | 1,097<br>(2.8) | 39,259<br>(100.0) |

출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1:4)를 토대로 재구성

당초 조사 표본 계획은 총 300개를 목표로 2018년 보육실태 조사에 지역별 표본 규모에 비례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최종표본은 392개로 당초 목표로 했던 목표를 초과하여 조사하였다.

**<표 VI-2> 표본 설계 및 연구의 최종표본**

(단위 : 개, %)

| 조사지역        | 조사 목표 표본 |       | 본 연구의 표본 |       |
|-------------|----------|-------|----------|-------|
|             | 빈도       | %     | 빈도       | %     |
| 전체          | 300      | 100.0 | 392      | 100.0 |
| 서울·인천·경기    | 143      | 47.7  | 189      | 48.2  |
| 부산·울산·경남    | 43       | 14.3  | 48       | 12.2  |
| 대구·경북       | 27       | 9.0   | 36       | 9.2   |
| 대전·충북·충남·세종 | 38       | 12.7  | 52       | 13.3  |
| 광주·전북·전남    | 35       | 11.7  | 41       | 10.5  |
| 강원          | 10       | 3.3   | 14       | 3.6   |
| 제주          | 5        | 1.7   | 12       | 3.1   |

조사가 완료된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73.0%였으며 중소도시 23.5%, 읍면지역은 3.6%였다. 기관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 19.6%, 사회복지 및 법인 24.0%, 민간 및 가정 42.3%, 직장 14.0%였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 9.7%, 6-10명 45.4%, 11-20명 34.2%, 21-30명 5.4%, 30명 초과는 5.4%였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영아반 66.1%, 유아반 31.9%, 장애아반 2.0%였다.

**<표 VI-3> 표본 설계 및 연구의 최종표본**

(단위 : 개, %)

| 구분        | 사례수 | 비율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392 | 100.0 | 종사자 규모   |     |      |
| 지역크기      |     |       | 5명 이하    | 38  | 9.7  |
| 대도시       | 286 | 73.0  | 6 ~ 10명  | 178 | 45.4 |
| 중소도시      | 92  | 23.5  | 11 ~ 20명 | 134 | 34.2 |
| 읍면        | 14  | 3.6   | 21 ~ 30명 | 21  | 5.4  |
| 기관유형      |     |       | 30명 초과   | 21  | 5.4  |
| 국공립       | 77  | 19.6  | 담당반      |     |      |
| 사회복지 및 법인 | 94  | 24.0  | 영아반      | 259 | 66.1 |
| 민간 및 가정   | 166 | 42.3  | 유아반      | 125 | 31.9 |
| 직장        | 55  | 14.0  | 장애아반     | 8   | 2.0  |

조사내용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어린이집 근로계약 형태, 안전 교육, 소음,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등 근로 환경, 스트레스 수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여부, 언어폭력,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결근한 날, 산재 발생 여부, 산재 처리 방법 등이었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부록에 기재하였다.

**<표 VI-4> 표본실태조사 항목**

| 구분               | 조사 항목   |
|------------------|---|
| I. 근로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간</li> <li>• 당직근로시간</li> <li>• 근로계약 유형</li> <li>• 야근시간</li> <li>•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제공</li> <li>• 안전교육 수강여부</li> <li>• 작업 위험도 평가</li> </ul> |
| II. 업무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인자 노출정도</li> <li>• 업무상황</li> </ul>   |
| III. 건강상태 및 산재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의 문제</li> <li>• 건강상의 문제 업무상 관련여부</li> <li>• 폭력노출 현황</li> <li>• 업무상 재해 경험 여부 및 횟수</li> <li>• 치료기간</li> <li>• 처리방법</li> </ul>                   |

보육교사 대상으로 보육교사 직종의 근무의 위험요소, 업무 강도, 근로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은 수도권, 강원도,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VI-5> 심층면담 현황**

| 순서      | 어린이집 유형 | 연령 | 경력  | 업무상 재해 여부 |
|---------|---------|----|-----|-----------|
| 보육교사 1  | 국공립어린이집 | 55 | 25년 |           |
| 보육교사 2  | 국공립어린이집 | 51 | 22년 | 척각 손실     |
| 보육교사 3  | 민간어린이집  | 45 | 15년 |           |
| 보육교사 4  | 민간어린이집  | 35 | 10년 |           |
| 보육교사 5  | 가정어린이집  | 31 | 9년  | 만성 스트레스   |
| 보육교사 6  | 직장어린이집  | 28 | 3년  | 허리디스크     |
| 보육교사 7  | 국공립어린이집 | 51 | 23년 | 허리디스크     |
| 보육교사 8  | 국공립어린이집 | 45 | 16년 |           |
| 보육교사 9  | 국공립어린이집 | 40 | 10년 |           |
| 보육교사 10 | 국공립어린이집 | 37 | 8년  |           |
| 보육교사 11 | 직장어린이집  | 25 | 1년  |           |
| 보육교사 12 | 직장어린이집  | 26 | 2년  |           |
| 보육교사 13 | 직장어린이집  | 28 | 4년  |           |
| 보육교사 14 | 사회복지법인  | 42 | 13년 | 손목 부상     |
| 보육교사 15 | 사회복지법인  | 39 | 9년  | 손가락 부상    |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 1) 근로조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체 평균 8.14시간,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1.5%,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50.3%, 8시간 초과는 38.3%로 나타나 반절 정도의 종사가 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519.42분(8.6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491.81분(8.20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이 482.47분(8.04시간)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21~30명 규모의 시설이 518.57분(8.64시간)로 가장 긴 시간 근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30명 초과 규모의 시설이 518.57분(8.64시간), 6~10명 규모의 시설이 495.39분(8.2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설 규모가 큰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반의 특징에 따라서는 장애아반이 513.75분(8.5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영아반 488.80분(8.15시간), 유아반이 486분(8.1시간) 순이었다.

**<표 VI-6> 총 근로시간**

(단위: %(명), 분)

| 구분      | 8시간 미만 | 8시간  | 8시간 초과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11.5   | 50.3 | 38.3   | 100.0(392) | 488.41 | 86.8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10.4   | 64.9 | 24.7   | 100.0( 77) | 482.47 | 64.14  |
| 사회복지·법인 | 7.4    | 62.8 | 29.8   | 100.0( 94) | 491.81 | 65.88  |
| 민간·가정   | 18.1   | 37.3 | 44.6   | 100.0(166) | 478.98 | 110.06 |
| 직장      | 0.0    | 47.3 | 52.7   | 100.0( 55) | 519.42 | 54.57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21.1   | 47.4 | 31.6   | 100.0( 38) | 458.16 | 103.58 |
| 6 ~ 10명 | 10.7   | 50.0 | 39.3   | 100.0(178) | 495.39 | 82.72  |

| 구분       | 8시간 미만 | 8시간  | 8시간 초과 | 계(수)       | 평균     | SD    |
|----------|--------|------|--------|------------|--------|-------|
| 11 ~ 20명 | 12.7   | 52.2 | 35.1   | 100.0(134) | 480.43 | 88.99 |
| 21 ~ 30명 | 0.0    | 38.1 | 61.9   | 100.0( 21) | 518.57 | 43.39 |
| 30명 초과   | 4.8    | 57.1 | 38.1   | 100.0( 21) | 504.76 | 92.66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9.7    | 52.9 | 37.5   | 100.0(259) | 488.80 | 86.62 |
| 유아반      | 16.0   | 44.8 | 39.2   | 100.0(125) | 486.00 | 89.45 |
| 장애아반     | 0.0    | 50.0 | 50.0   | 100.0( 8)  | 513.75 | 43.73 |

1일 총 휴게시간은 영유아와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는 점심시간과 영유아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루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85.5%로 보고되었으며, 평균 59.73분으로 나타나,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4.5%의 종사자는 하루 중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가 직장이 98.2%,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93.6%, 국공립어린이집이 84.4%,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77.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게시간은 사회복지 및 법인이 66.22분, 직장어린이집이 65.27분, 국공립어린이집이 63.70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52.38분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21~30명과 30명 초과 시설이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명 이하 시설이 76.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21~30명 규모가 63.10분으로 가장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11~20명 규모 시설이 61.90분, 6~10명 규모의 경우 58.76분, 5명 이하의 경우 55.66분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휴게시간을 위한 여유 인력 운영이 가능하여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30명 초과 시설의 경우 58.10분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4시간 근무로 법정휴게시간이 30분이 주어지는 보조인력들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당반의 경우에는 장애아반의 경우 100%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휴게시간도 101.25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영아반은 87.3%가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59.69분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아반은 80.8%가 휴게시간이 있으며 평균 57.16분으로 나타났다.

**<표 VI-7> 1일 총 휴게시간**

(단위: %(명), 분)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85.5  | 14.5 | 100.0(392) | 59.73  | 36.8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84.4  | 15.6 | 100.0( 77) | 63.70  | 40.44 |
| 사회복지 및 법인 | 93.6  | 6.4  | 100.0( 94) | 66.22  | 30.67 |
| 민간 및 가정   | 77.1  | 22.9 | 100.0(166) | 52.38  | 39.62 |
| 직장        | 98.2  | 1.8  | 100.0( 55) | 65.27  | 28.34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76.3  | 23.7 | 100.0( 38) | 55.66  | 41.10 |
| 6 ~ 10명   | 85.4  | 14.6 | 100.0(178) | 58.76  | 36.85 |
| 11 ~ 20명  | 85.1  | 14.9 | 100.0(134) | 61.90  | 37.69 |
| 21 ~ 30명  | 95.2  | 4.8  | 100.0( 21) | 63.10  | 34.00 |
| 30명 초과    | 95.2  | 4.8  | 100.0( 21) | 58.10  | 25.8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87.3  | 12.7 | 100.0(259) | 59.69  | 33.84 |
| 유아반       | 80.8  | 19.2 | 100.0(125) | 57.16  | 41.26 |
| 장애아반      | 100.0 | 0.0  | 100.0( 8)  | 101.25 | 35.63 |

점심시간은 영유아와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는 점심시간을 의미하며, 69.1%의 시설에 영유아와 별도로 식사가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는 30.9%의 경우에도 평균 시간이 15.57분으로 나타나 보육 종사자의 점심시간 운영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8> 점심식사 시간**

(단위: %(명), 분)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30.9 | 69.1 | 100.0(392) | 15.57 | 25.68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36.4 | 63.6 | 100.0( 77) | 18.57 | 26.95 |
| 사회복지 및 법인 | 25.5 | 74.5 | 100.0( 94) | 14.36 | 25.55 |
| 민간 및 가정   | 35.5 | 64.5 | 100.0(166) | 16.78 | 25.64 |
| 직장        | 18.2 | 81.8 | 100.0( 55) | 9.82  | 23.84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47.4 | 52.6 | 100.0( 38) | 20.39 | 25.05 |
| 6 ~ 10명   | 28.7 | 71.3 | 100.0(178) | 14.02 | 24.68 |
| 11 ~ 20명  | 29.9 | 70.1 | 100.0(134) | 16.57 | 26.67 |
| 21 ~ 30명  | 38.1 | 61.9 | 100.0( 21) | 20.71 | 33.03 |
| 30명 초과    | 19.0 | 81.0 | 100.0( 21) | 8.57  | 19.3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29.0 | 71.0 | 100.0(259) | 13.44 | 23.34 |
| 유아반       | 32.0 | 68.0 | 100.0(125) | 18.12 | 28.58 |
| 장애아반      | 75.0 | 25.0 | 100.0( 8)  | 45.00 | 32.07 |

휴게시간은 영유아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79.8%의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44.16분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98.2%의 직장어린이집의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90.4%, 국공립 어린이집이 80.5%,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67.6%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휴게시간이 주어진 경우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55.45분,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51.86분, 국공립 어린이집이 45.13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35.60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어린이집 종사자에게 6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었으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적고, 휴게시

간이 있는 경우에도 35.6분으로 적은 시간이 부여되어 열악한 환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반에 따라서 살펴보면, 장애아반이 87.5%, 영아반이 82.6%, 유아반이 73.6% 순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장애아반이 56.25분, 영아반이 46.25분, 유아반이 39.04분으로 나타나 유아반이 가장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I-9> 휴게 시간**

(단위: %(명), 분)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79.8 | 20.2 | 100.0(392) | 44.16 | 25.93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80.5 | 19.5 | 100.0( 77) | 45.13 | 27.96 |
| 사회복지 및 법인 | 90.4 | 9.6  | 100.0( 94) | 51.86 | 19.51 |
| 민간 및 가정   | 67.5 | 32.5 | 100.0(166) | 35.60 | 27.88 |
| 직장        | 98.2 | 1.8  | 100.0( 55) | 55.45 | 16.6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65.8 | 34.2 | 100.0( 38) | 35.26 | 27.58 |
| 6 ~ 10명   | 79.2 | 20.8 | 100.0(178) | 44.75 | 26.48 |
| 11 ~ 20명  | 82.1 | 17.9 | 100.0(134) | 45.34 | 25.72 |
| 21 ~ 30명  | 81.0 | 19.0 | 100.0( 21) | 42.38 | 24.27 |
| 30명 초과    | 95.2 | 4.8  | 100.0( 21) | 49.52 | 18.57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82.6 | 17.4 | 100.0(259) | 46.25 | 24.45 |
| 유아반       | 73.6 | 26.4 | 100.0(125) | 39.04 | 27.69 |
| 장애아반      | 87.5 | 12.5 | 100.0( 8)  | 56.25 | 33.78 |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휴게시간에 휴게 장소로 활용하는 곳은 교사실이 34.9%, 휴게실이 26.6%, 외부 장소가 6.3%, 기타가 3.6%로 나타나, 종사자들이 주로 휴게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교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명 초과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50%의 시설이 별도의 휴게공간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게장소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46.95%의 종사자가 휴게장소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도 10명 이하 시설의 경우 38.2%(6~10명 규모), 31.0%(5명 이하)로 나타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과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더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10> 휴게 장소**

(단위: %(명))

| 구분          | 교사실  | 휴게실  | 외부   | 기타  | 휴게장소<br>없음 | 계(수)       |
|-------------|------|------|------|-----|------------|------------|
| 전체          | 34.9 | 26.6 | 6.3  | 3.6 | 28.7       | 100.0(335)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40.0 | 32.3 | 1.5  | 3.1 | 23.1       | 100.0( 65) |
| 사회복지·법인     | 38.6 | 33.0 | 10.2 | 3.4 | 14.8       | 100.0( 88) |
| 민간·가정<br>직장 | 20.3 | 19.5 | 7.8  | 5.5 | 46.9       | 100.0(128) |
| 직장          | 57.4 | 25.9 | 1.9  | 0.0 | 14.8       | 100.0( 54)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24.1 | 27.6 | 17.2 | 0.0 | 31.0       | 100.0( 29) |
| 6 ~ 10명     | 31.6 | 20.4 | 5.3  | 4.6 | 38.2       | 100.0(152) |
| 11 ~ 20명    | 40.4 | 29.8 | 7.0  | 3.5 | 19.3       | 100.0(114) |
| 21 ~ 30명    | 45.0 | 30.0 | 0.0  | 0.0 | 25.0       | 100.0( 20) |
| 30명 초과      | 35.0 | 50.0 | 0.0  | 5.0 | 10.0       | 100.0( 20)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34.5 | 23.0 | 8.4  | 5.3 | 28.8       | 100.0(226) |
| 유아반         | 33.7 | 34.7 | 2.0  | 0.0 | 29.7       | 100.0(101) |
| 장애아반        | 62.5 | 25.0 | 0.0  | 0.0 | 12.5       | 100.0( 8)  |

당직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는 58.7%, 평균 4.9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르면 당직 근로는 직장이 81.8%, 국공립이 61.0%,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58.5%,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50.0%로 나타났으며, 시간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5.82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직장어린이집(5.04시간), 사회복지 및 법인(4.33시간), 국공립(3.8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규모에 따르면 규모가 클수록 당직 근로시간이 있는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21~30명 규모가 7.24시간으로 가장 긴 당직 근로시간을 보였고, 그 외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담당반에 따라서는 유아반이 당직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도 69.6%로 가장 높고, 시간도 7.69시간으로 현저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11> 당직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58.7 | 41.3 | 100.0(392) | 4.97 | 10.48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1.0 | 39.0 | 100.0( 77) | 3.86 | 8.0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8.5 | 41.5 | 100.0( 94) | 4.33 | 7.76  |
| 민간 및 가정   | 50.0 | 50.0 | 100.0(166) | 5.82 | 13.13 |
| 직장        | 81.8 | 18.2 | 100.0( 55) | 5.04 | 8.27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44.7 | 55.3 | 100.0( 38) | 4.66 | 11.09 |
| 6 ~ 10명   | 52.2 | 47.8 | 100.0(178) | 4.97 | 10.77 |
| 11 ~ 20명  | 67.2 | 32.8 | 100.0(134) | 4.72 | 10.04 |
| 21 ~ 30명  | 66.7 | 33.3 | 100.0( 21) | 7.24 | 11.87 |
| 30명 초과    | 76.2 | 23.8 | 100.0( 21) | 4.76 | 8.55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53.7 | 46.3 | 100.0(259) | 3.70 | 8.39  |
| 유아반       | 69.6 | 30.4 | 100.0(125) | 7.69 | 13.69 |
| 장애아반      | 50.0 | 50.0 | 100.0( 8)  | 3.50 | 4.38  |

최근 한 달 야근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의 비율은 49.0%였다. 평균 야근일 수는 3.65일이었다. 야근한 비율이 가장 높은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고 62.3%가 야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야근 일 수는 4.92일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일수록 평균 야근 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6%, 평균 야근 일수 5.08일로 영아반에 비해 야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야근 일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한달 평균 야근한 일 수**

(단위: %(명), 일)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평균   | SD   |
|-----------|------|------|------------|------|------|
| 전체        | 49.0 | 51.0 | 100.0(392) | 3.65 | 5.99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2.3 | 37.7 | 100.0( 77) | 4.92 | 6.56 |
| 사회복지 및 법인 | 44.7 | 55.3 | 100.0( 94) | 3.34 | 5.77 |
| 민간 및 가정   | 42.2 | 57.8 | 100.0(166) | 2.93 | 5.79 |
| 직장        | 58.2 | 41.8 | 100.0( 55) | 4.56 | 5.90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26.3 | 73.7 | 100.0( 38) | 1.18 | 2.87 |
| 6 ~ 10명   | 38.2 | 61.8 | 100.0(178) | 2.56 | 5.23 |
| 11 ~ 20명  | 64.9 | 35.1 | 100.0(134) | 4.61 | 6.26 |
| 21 ~ 30명  | 76.2 | 23.8 | 100.0( 21) | 7.19 | 5.67 |
| 30명 초과    | 52.4 | 47.6 | 100.0( 21) | 7.62 | 9.70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42.9 | 57.1 | 100.0(259) | 2.95 | 5.20 |
| 유아반       | 61.6 | 38.4 | 100.0(125) | 5.08 | 7.15 |
| 장애아반      | 50.0 | 50.0 | 100.0( 8)  | 3.88 | 7.06 |

## 2)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본 조사의 응답자의 80.4%가 정규직으로 나타났고, 기간제 17.1%, 파트 및 단시간이 2.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 상 이러한 비율을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 비율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94.5%로 가장 높은 정규직 비율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71.1%로 가장 낮은 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또한, 종사자 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정규직 비율이 65.8%, 장애아 담당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인 반면 유아반은 76.0%로 응답자 평균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VI-13> 근로 계약 유형**

(단위: %, (명))

|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         | 계(수)       |
|-----------|-------|------|---------|------------|
|           |       | 기간제  | 파트, 단시간 |            |
| 전체        | 80.4  | 17.1 | 2.6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국공립       | 83.1  | 14.3 | 2.6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86.2  | 13.8 | 0.0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71.1  | 24.1 | 4.8     | 100.0(166) |
| 직장        | 94.5  | 5.5  | 0.0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5명 이하     | 65.8  | 28.9 | 5.3     | 100.0( 38) |
| 6 ~ 10명   | 80.9  | 17.4 | 1.7     | 100.0(178) |
| 11 ~ 20명  | 81.3  | 14.9 | 3.7     | 100.0(134) |
| 21 ~ 30명  | 90.5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85.7  | 14.3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영아반       | 81.9  | 16.2 | 1.9     | 100.0(259) |
| 유아반       | 76.0  | 20.0 | 4.0     | 100.0(125) |
| 장애아반      | 100.0 | 0.0  | 0.0     | 100.0( 8)  |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55.8%로 가장 많으며,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5%, 2년 이상이 10.4%, 6개월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종사자 규모에서는 5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서만 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 나타나고 있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소규모 시설이 특히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14> 비정규직 계약 기간**

(단위: %(명))

| 구분        | 6개월 미만 | 6개월~<br>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상 | 계(수)      |
|-----------|--------|---------------|-------|-------|-----------|
| 전체        | 1.3    | 32.5          | 55.8  | 10.4  | 100.0(77)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0.0    | 23.1          | 69.2  | 7.7   | 100.0(13) |
| 사회복지 및 법인 | 0.0    | 30.8          | 53.8  | 15.4  | 100.0(13) |
| 민간 및 가정   | 2.1    | 35.4          | 54.2  | 8.3   | 100.0(48) |
| 직장        | 0.0    | 33.3          | 33.3  | 33.3  | 100.0( 3)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7.7    | 23.1          | 53.8  | 15.4  | 100.0(13) |
| 6 ~ 10명   | 0.0    | 38.2          | 52.9  | 8.8   | 100.0(34) |
| 11 ~ 20명  | 0.0    | 24.0          | 64.0  | 12.0  | 100.0(25) |
| 21 ~ 30명  | 0.0    | 50.0          | 50.0  | 0.0   | 100.0( 2) |
| 30명 초과    | 0.0    | 66.7          | 33.3  | 0.0   | 100.0( 3)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2.1    | 29.8          | 63.8  | 4.3   | 100.0(47) |
| 유아반       | 0.0    | 36.7          | 43.3  | 20.0  | 100.0(30)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9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8%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1.8%의 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VI-15&gt;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98.2  | 1.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100.0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97.9  | 2.1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97.0  | 3.0 | 100.0(166) |
| 직장        | 100.0 | 0.0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97.4  | 2.6 | 100.0( 38) |
| 6 ~ 10명   | 98.9  | 1.1 | 100.0(178) |
| 11 ~ 20명  | 97.8  | 2.2 | 100.0(134) |
| 21 ~ 30명  | 100.0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95.2  | 4.8 | 100.0( 21) |
| 담당반       |       |     |            |
| 영아반       | 98.5  | 1.5 | 100.0(259) |
| 유아반       | 97.6  | 2.4 | 100.0(125) |
| 장애아반      | 100.0 | 0.0 | 100.0( 8)  |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6.2%, 근로시간 7.0%, 휴일 26.5%, 연월차수당 45.5%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 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보험 역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필수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6> 계약서 명시 항목**

(단위: %(명))

| 구분          | 4대<br>보험 | 임금    | 근로<br>시간 | 휴일   | 연월차<br>수당 | 직책<br>수당 | 특별<br>수당<br>(명절) | (수)   |
|-------------|----------|-------|----------|------|-----------|----------|------------------|-------|
| 전체          | 96.9     | 93.8  | 93.0     | 73.5 | 45.5      | 26.8     | 26.0             | (392) |
| 기관유형        |          |       |          |      |           |          |                  |       |
| 국공립         | 97.4     | 93.5  | 92.2     | 76.6 | 50.6      | 31.2     | 28.6             | ( 77) |
| 사회복지·법인     | 98.9     | 96.7  | 95.7     | 73.9 | 58.7      | 31.5     | 28.3             | ( 94) |
| 민간·가정<br>직장 | 96.3     | 90.1  | 90.1     | 66.5 | 26.7      | 13.7     | 21.7             | (166) |
| 직장          | 94.5     | 100.0 | 98.2     | 89.1 | 70.9      | 50.9     | 30.9             |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
| 5명 이하       | 97.3     | 97.3  | 94.6     | 70.3 | 35.1      | 18.9     | 21.6             | ( 38) |
| 6 ~ 10명     | 97.7     | 92.0  | 90.9     | 69.9 | 39.8      | 23.3     | 22.2             | (178) |
| 11 ~ 20명    | 96.9     | 93.9  | 94.7     | 75.6 | 51.1      | 29.0     | 29.0             | (134) |
| 21 ~ 30명    | 100.0    | 95.2  | 95.2     | 85.7 | 71.4      | 47.6     | 38.1             | ( 21) |
| 30명 초과      | 85.0     | 100.0 | 95.0     | 85.0 | 50.0      | 35.0     | 35.0             | ( 21) |
| 담당반         |          |       |          |      |           |          |                  |       |
| 영아반         | 96.5     | 94.5  | 94.1     | 75.3 | 45.1      | 25.1     | 25.1             | (259) |
| 유아반         | 97.5     | 91.8  | 90.2     | 68.9 | 45.1      | 28.7     | 25.4             | (125) |
| 장애아반        | 100.0    | 100.0 | 100.0    | 87.5 | 62.5      | 50.0     | 2.5              | ( 8)  |

### 3)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 관련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입된 보험 및 공제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6.9% 존재하였으며,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및 공제는 어린이집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공제(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공제회의 경우에 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당연 가입자로서 공제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필수 가입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57.9%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및 가정이 12.0%로 보험 미가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산재보험 가입률도 5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은

보험 및 공제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 가입률도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사자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명 이하 규모의 18.4% 가입된 보험 및 공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30명 초과 규모가 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5명 이하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도 4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1~30명 시설이 76.2%의 산재보험가입률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7> 가입된 보험 및 공제 내용**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집공제회<br>보육교직원공제 | 산업재해<br>보상보험 | 민간 보험 | 없음   | (수)   |
|-----------|--------------------|--------------|-------|------|-------|
| 전체        | 66.3               | 57.9         | 40.6  | 6.9  | (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3.6               | 53.2         | 46.8  | 5.2  | (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80.9               | 64.9         | 34.0  | 3.2  | ( 94) |
| 민간 및 가정   | 57.2               | 50.6         | 41.0  | 12.0 | (166) |
| 직장        | 72.7               | 74.5         | 41.8  | 0.0  |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57.9               | 44.7         | 28.9  | 18.4 | ( 38) |
| 6 ~ 10명   | 60.7               | 55.1         | 42.7  | 5.6  | (178) |
| 11 ~ 20명  | 72.4               | 61.2         | 41.8  | 5.2  | (134) |
| 21 ~ 30명  | 66.7               | 76.2         | 38.1  | 9.5  | ( 21) |
| 30명 초과    | 90.5               | 66.7         | 38.1  | 4.8  | (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68.3               | 59.1         | 40.5  | 5.8  | (259) |
| 유아반       | 60.0               | 56.0         | 42.4  | 9.6  | (125) |
| 장애아반      | 100.0              | 50.0         | 12.5  | 0.0  | ( 8)  |

#### 4) 근로조건 등에 고지 관련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의 9.4%가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79.6%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외는 근로계약 체결 후 및 근무 중에 설명을 듣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및 가정이 17.5%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장의 경우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살펴보면, 5명 이하의 규모가 13.2%, 11~20명 규모가 11.9% 순으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설명 여부**

(단위: %(명))

| 구분        | 없음   | 있음    | 설명 있음     |           |      | (수)   |
|-----------|------|-------|-----------|-----------|------|-------|
|           |      |       | 근로계약 체결 시 | 근로계약 체결 후 | 근무 중 |       |
| 전체        | 9.4  | 90.6  | 79.6      | 7.1       | 3.8  | (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5.2  | 94.8  | 79.2      | 9.1       | 6.5  | (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3  | 95.7  | 88.3      | 6.4       | 1.1  | ( 94) |
| 민간 및 가정   | 17.5 | 82.5  | 69.9      | 8.4       | 4.2  | (166) |
| 직장        | 0.0  | 100.0 | 94.5      | 1.8       | 3.6  |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13.2 | 86.8  | 73.7      | 13.2      | 0.0  | ( 38) |
| 6 ~ 10명   | 7.3  | 92.7  | 82.0      | 6.7       | 3.9  | (178) |
| 11 ~ 20명  | 11.9 | 88.1  | 73.9      | 8.2       | 6.0  | (134) |
| 21 ~ 30명  | 4.8  | 95.2  | 95.2      | 0.0       | 0.0  | ( 21) |
| 30명 초과    | 9.5  | 90.5  | 90.5      | 0.0       | 0.0  | (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9.3  | 90.7  | 81.1      | 7.7       | 1.9  | (259) |
| 유아반       | 10.4 | 89.6  | 75.2      | 6.4       | 8.0  | (125) |
| 장애아반      | 0.0  | 100.0 | 100.0     | 0.0       | 0.0  | ( 8)  |

건강 및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에 대해서 전체의 69.7%의 응답자가 잘 제공받는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38.8%가 별로 제공받지 못한다 이하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중 8.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비율을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살펴보

면 민간 및 가정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으로 응답한 비율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36.1%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있어서는 11~20명 규모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1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제공 정도**

(단위: %(명))

| 구분        | 매우 잘 제공 받는다 | 잘 제공받는 편이다 |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 무응답 | (수)   |
|-----------|-------------|------------|-----------------|-------------|-----|-------|
| 전체        | 16.6        | 43.1       | 30.4            | 8.4         | 1.5 | (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15.6        | 50.6       | 26.0            | 6.5         | 1.3 | (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22.3        | 46.8       | 22.3            | 5.3         | 3.2 | ( 94) |
| 민간 및 가정   | 12.7        | 36.7       | 36.1            | 13.3        | 1.2 | (166) |
| 직장        | 20.0        | 45.5       | 32.7            | 1.8         | 0.0 |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13.2        | 50.0       | 28.9            | 7.9         | 0.0 | ( 38) |
| 6 ~ 10명   | 17.4        | 42.1       | 32.0            | 6.7         | 1.7 | (178) |
| 11 ~ 20명  | 17.9        | 43.3       | 26.1            | 11.2        | 1.5 | (134) |
| 21 ~ 30명  | 9.5         | 33.3       | 47.6            | 9.5         | 0.0 | ( 21) |
| 30명 초과    | 14.3        | 47.6       | 28.6            | 4.8         | 4.8 | (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17.0        | 42.9       | 31.3            | 6.9         | 1.9 | (259) |
| 유아반       | 15.2        | 42.4       | 29.6            | 12.0        | .8  | (125) |
| 장애아반      | 25.0        | 62.5       | 12.5            | 0.0         | 0.0 | ( 8)  |

안전과 건강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예방 정보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화상 및 화재 예방 정보가 57.3%, 넘어짐, 미끄러짐 예방 정보가 53.0%, 교통사고 예방 정보가 34.2%,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정보가 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 및 건강에 관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화상 및 화재 예방 정보 순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I-20> 제공 받은 안전과 건강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단위: %(명))

| 구분        | 근골격계<br>질환 예방<br>정보 | 스트레스<br>예방 정보 | 넘어짐,<br>미끄러짐<br>예방 정보 | 교통사고<br>예방 정보 | 화상 및<br>화재 예방<br>정보 | (수)   |
|-----------|---------------------|---------------|-----------------------|---------------|---------------------|-------|
| 전체        | 26.5                | 70.1          | 53.0                  | 34.2          | 57.3                | (234)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31.4                | 60.8          | 51.0                  | 31.4          | 54.9                | ( 51) |
| 사회복지 및 법인 | 23.1                | 67.7          | 52.3                  | 40.0          | 63.1                | ( 65) |
| 민간 및 가정   | 29.3                | 68.3          | 47.6                  | 29.3          | 45.1                | ( 82) |
| 직장        | 19.4                | 91.7          | 69.4                  | 38.9          | 77.8                | ( 36)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29.2                | 79.2          | 66.7                  | 29.2          | 50.0                | ( 24) |
| 6 ~ 10명   | 17.9                | 67.9          | 45.3                  | 30.2          | 60.4                | (106) |
| 11 ~ 20명  | 34.1                | 65.9          | 52.4                  | 39.0          | 52.4                | ( 82) |
| 21 ~ 30명  | 33.3                | 88.9          | 77.8                  | 55.6          | 44.4                | ( 9)  |
| 30명 초과    | 38.5                | 84.6          | 76.9                  | 30.8          | 84.6                | ( 13)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26.5                | 70.3          | 52.3                  | 34.8          | 59.4                | (155) |
| 유아반       | 26.4                | 68.1          | 54.2                  | 34.7          | 51.4                | ( 72) |
| 장애아반      | 28.6                | 85.7          | 57.1                  | 14.3          | 71.4                | ( 7)  |

#### 5)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매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는 비율이 22.4%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년 받는 비율이 직장이 70.9%로 가장 높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3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없음의 비율 역시 직장이

14.5%로 가장 낮고, 민간 및 가정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 이하의 경우 전혀 없음이 36.8%로 가장 높았고, 30명 초과인 경우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21>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수강 여부**

(단위: %(명))

| 구분        | 매년 받는다 | 2-3년 마다 받는다 | 최초 1회 | 전혀 없음 | (수)   |
|-----------|--------|-------------|-------|-------|-------|
| 전체        | 54.3   | 11.5        | 11.7  | 22.4  | (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59.7   | 11.7        | 13.0  | 15.6  | (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68.1   | 12.8        | 4.3   | 14.9  | ( 94) |
| 민간 및 가정   | 38.6   | 14.5        | 14.5  | 32.5  | (166) |
| 직장        | 70.9   | 0.0         | 14.5  | 14.5  |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42.1   | 10.5        | 10.5  | 36.8  | ( 38) |
| 6 ~ 10명   | 56.2   | 10.1        | 11.2  | 22.5  | (178) |
| 11 ~ 20명  | 53.7   | 14.9        | 13.4  | 17.9  | (134) |
| 21 ~ 30명  | 47.6   | 4.8         | 14.3  | 33.3  | ( 21) |
| 30명 초과    | 71.4   | 9.5         | 4.8   | 14.3  | (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55.6   | 10.4        | 11.6  | 22.4  | (259) |
| 유아반       | 50.4   | 12.8        | 12.8  | 24.0  | (125) |
| 장애아반      | 75.0   | 25.0        | 0.0   | 0.0   | ( 8)  |

#### 6) 근로자 안전 및 건강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재 배치 여부

어린이집 근로자 관련 안전 및 건강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재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배치되어있는 경우가 64.8%로 나타나, 과반수의 어린이집에 관련 책자 및 교재가 배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22> 근로자 안전 및 건강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재 배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64.8 | 35.2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75.3 | 24.7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79.8 | 20.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52.4 | 47.6 | 100.0(166) |
| 직장        | 61.8 | 38.2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63.2 | 36.8 | 100.0( 38) |
| 6 ~ 10명   | 60.1 | 39.9 | 100.0(178) |
| 11 ~ 20명  | 71.6 | 28.4 | 100.0(134) |
| 21 ~ 30명  | 52.4 | 47.6 | 100.0( 21) |
| 30명 초과    | 76.2 | 23.8 | 100.0( 21) |
| 담당반       |      |      |            |
| 영아반       | 64.5 | 35.5 | 100.0(259) |
| 유아반       | 64.0 | 36.0 | 100.0(125) |
| 장애아반      | 87.5 | 12.5 | 100.0( 8)  |

책자가 비치된 경우, 안내 책자 및 교재를 이용한 설명 교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79.9%의 종사자가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경우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교육은 사회복지 및 법인에서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에서 7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배치비율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에서 안전 관련 책자 배치 및 관련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I-23> 배치된 안내 책자 및 교재를 활용한 설명 교육 여부**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계(수)       |
|-----------|------|------|------------|
| 전체        | 79.9 | 20.1 | 100.0(254)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75.9 | 24.1 | 100.0( 58) |
| 사회복지 및 법인 | 85.3 | 14.7 | 100.0( 75) |
| 민간 및 가정   | 77.0 | 23.0 | 100.0( 87) |
| 직장        | 82.4 | 17.6 | 100.0( 34)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83.3 | 16.7 | 100.0( 24) |
| 6 ~ 10명   | 81.3 | 18.7 | 100.0(107) |
| 11 ~ 20명  | 78.1 | 21.9 | 100.0( 96) |
| 21 ~ 30명  | 90.9 | 9.1  | 100.0( 11) |
| 30명 초과    | 68.8 | 31.3 | 100.0( 16) |
| 담당반       |      |      |            |
| 영아반       | 77.8 | 22.2 | 100.0(167) |
| 유아반       | 83.8 | 16.3 | 100.0( 80) |
| 장애아반      | 85.7 | 14.3 | 100.0( 7)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의 위험도를 평가하였을 때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가 63.5%로 나타나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직장어린이집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41.6%, 민간 및 가정이 35.5%, 사회복지 및 법인이 29.8%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21~30명이 57.1%, 5명 이하가 39.6%, 11명~20명 규모가 38.8%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반의 경우에는 영아반이 38.2%, 유아반이 34.4%, 장애반이 12.5%로 나타났다.

**<표 VI-24> 직업의 위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계(수)       |
|-----------|------|------|------------|
| 전체        | 36.5 | 63.5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41.6 | 58.4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29.8 | 70.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35.5 | 64.5 | 100.0(166) |
| 직장        | 43.6 | 56.4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39.5 | 60.5 | 100.0( 38) |
| 6 ~ 10명   | 32.0 | 68.0 | 100.0(178) |
| 11 ~ 20명  | 38.8 | 61.2 | 100.0(134) |
| 21 ~ 30명  | 57.1 | 42.9 | 100.0( 21) |
| 30명 초과    | 33.3 | 66.7 | 100.0( 21) |
| 담당반       |      |      |            |
| 영아반       | 38.2 | 61.8 | 100.0(259) |
| 유아반       | 34.4 | 65.6 | 100.0(125) |
| 장애아반      | 12.5 | 87.5 | 100.0( 8)  |

## 7) 근로환경(업무환경)

심한 소음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4%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54.6%)과 직장 어린이집(56.4%)이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41.4%)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42.1%)보다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5명 이하(34.2%)가 가장 낮았고, 21-30명(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유아반(62.4%)과 장애아반(62.5%)이 영아반(38.2%)보다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25> 노출정도: 심한 소음**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46.4          | 21.2        | 25.5         | 6.9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54.5          | 23.4        | 20.8         | 1.3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1.5          | 24.5        | 21.3         | 12.8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42.2          | 20.5        | 31.3         | 6.0          | 100.0(166) |
| 직장        | 56.4          | 14.5        | 21.8         | 7.3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34.2          | 26.3        | 28.9         | 10.5         | 100.0( 38) |
| 6 ~ 10명   | 38.2          | 23.6        | 29.8         | 8.4          | 100.0(178) |
| 11 ~ 20명  | 56.0          | 18.7        | 19.4         | 6.0          | 100.0(134) |
| 21 ~ 30명  | 71.4          | 19.0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9.5         | 38.1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38.2          | 24.3        | 30.1         | 7.3          | 100.0(259) |
| 유아반       | 62.4          | 15.2        | 16.8         | 5.6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12.5        | 12.5         | 12.5         | 100.0( 8)  |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국공립 어린이집(67.5%)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54.3%)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6-10명(53.4%)이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71.4%)에서 가장 높았다.

**<표 VI-26> 노출정도: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61.0          | 19.6        | 15.3         | 4.1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7.5          | 26.0        | 6.5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4.3          | 16.0        | 22.3         | 7.4          | 100.0( 94) |
| 민간 및 가정<br>직장 | 62.0          | 18.1        | 15.7         | 4.2          | 100.0(166) |
| 직장            | 60.0          | 21.8        | 14.5         | 3.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60.5          | 13.2        | 21.1         | 5.3          | 100.0( 38) |
| 6 ~ 10명       | 53.4          | 26.4        | 16.3         | 3.9          | 100.0(178) |
| 11 ~ 20명      | 68.7          | 14.9        | 11.2         | 5.2          | 100.0(134) |
| 21 ~ 30명      | 66.7          | 19.0        | 14.3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71.4          | 4.8         | 23.8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61.4          | 18.1        | 15.4         | 5.0          | 100.0(259) |
| 유아반           | 60.0          | 22.4        | 15.2         | 2.4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25.0        | 12.5         | 0.0          | 100.0( 8)  |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0.8%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66.2%)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38.3%)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5명 이하(44.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1-30명(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영아반(52.9%)이 유아반(44.0%)보다 높았고 장애아반(8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27> 노출정도: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킴**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50.8          | 27.0        | 16.1         | 6.1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6.2          | 24.7        | 6.5          | 2.6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38.3          | 29.8        | 20.2         | 11.7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52.4          | 26.5        | 16.3         | 4.8          | 100.0(166) |
| 직장        | 45.5          | 27.3        | 21.8         | 5.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44.7          | 31.6        | 15.8         | 7.9          | 100.0( 38) |
| 6 ~ 10명   | 50.6          | 27.0        | 17.4         | 5.1          | 100.0(178) |
| 11 ~ 20명  | 51.5          | 26.1        | 13.4         | 9.0          | 100.0(134) |
| 21 ~ 30명  | 57.1          | 38.1        | 4.8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14.3        | 33.3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52.9          | 26.6        | 13.9         | 6.6          | 100.0(259) |
| 유아반       | 44.0          | 28.8        | 21.6         | 5.6          | 100.0(125) |
| 장애아반      | 87.5          | 12.5        | 0.0          | 0.0          | 100.0( 8)  |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1/4이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3.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의 1/4이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국공립 어린이집(44.2%)에서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의 1/4이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유아반(37.6%)이 영아반(30.1%)보다 높았고 장애아반(62.5%)이 가장 높았다.

**<표 VI-28> 노출정도: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킴**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24.7          | 33.2        | 34.2         | 7.9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29.9          | 44.2        | 24.7         | 1.3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3.8          | 29.8        | 45.7         | 10.6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27.7          | 29.5        | 31.9         | 10.8         | 100.0(166) |
| 직장        | 27.3          | 34.5        | 34.5         | 3.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8.4          | 34.2        | 36.8         | 10.5         | 100.0( 38) |
| 6 ~ 10명   | 21.3          | 30.9        | 38.2         | 9.6          | 100.0(178) |
| 11 ~ 20명  | 26.9          | 35.1        | 31.3         | 6.7          | 100.0(134) |
| 21 ~ 30명  | 42.9          | 38.1        | 19.0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33.3          | 33.3        | 28.6         | 4.8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23.9          | 30.1        | 36.7         | 9.3          | 100.0(259) |
| 유아반       | 25.6          | 37.6        | 31.2         | 5.6          | 100.0(125) |
| 장애아반      | 37.5          | 62.5        | 0.0          | 0.0          | 100.0( 8)  |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8.5%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국공립 어린이집(54.5)에서 가장 높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44.6%)에서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5명 이하(39.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30명 초과(7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계속 서 있는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유아반(54.4%)이 영아반(45.2%)보다 높았고 장애아반(62.9%)에서 가장 높았다.

**<표 VI-29> 노출정도: 계속 서 있는 자세**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48.5          | 26.8        | 19.9         | 4.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54.5          | 29.9        | 15.6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1.1          | 20.2        | 20.2         | 8.5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44.6          | 30.1        | 20.5         | 4.8          | 100.0(166) |
| 직장        | 47.3          | 23.6        | 23.6         | 5.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39.5          | 23.7        | 31.6         | 5.3          | 100.0( 38) |
| 6 ~ 10명   | 48.9          | 30.3        | 15.7         | 5.1          | 100.0(178) |
| 11 ~ 20명  | 47.0          | 26.1        | 21.6         | 5.2          | 100.0(134) |
| 21 ~ 30명  | 47.6          | 23.8        | 23.8         | 4.8          | 100.0( 21) |
| 30명 초과    | 71.4          | 9.5         | 19.0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45.2          | 27.8        | 22.4         | 4.6          | 100.0(259) |
| 유아반       | 54.4          | 24.8        | 15.2         | 5.6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25.0        | 12.5         | 0.0          | 100.0( 8)  |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7%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5명 이하(50.0%)에서 가장 낮았고 21-30명(76.2%)이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영아반(60.6%)과 유아반(59.2%)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아반(87.5%)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30> 노출정도: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60.7          | 22.2        | 13.8         | 3.3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3.6          | 27.3        | 9.1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9.6          | 21.3        | 12.8         | 6.4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60.8          | 20.5        | 15.1         | 3.6          | 100.0(166) |
| 직장        | 58.2          | 21.8        | 18.2         | 1.8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50.0          | 23.7        | 21.1         | 5.3          | 100.0( 38) |
| 6 ~ 10명   | 62.4          | 20.2        | 15.2         | 2.2          | 100.0(178) |
| 11 ~ 20명  | 59.0          | 26.1        | 9.7          | 5.2          | 100.0(134) |
| 21 ~ 30명  | 76.2          | 14.3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61.9          | 19.0        | 19.0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60.6          | 20.8        | 14.3         | 4.2          | 100.0(259) |
| 유아반       | 59.2          | 26.4        | 12.8         | 1.6          | 100.0(125) |
| 장애아반      | 87.5          | 0.0         | 12.5         | 0.0          | 100.0( 8)  |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데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1/4이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5.0%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근무시간의 1/4이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20.5%)에서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36.4%)에서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의 1/4이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5명 이하(15.8%)에서 가장 낮았고 21-30명(33.3%)에서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의 1/4이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영아반(22.8%)이 유아반(30.4%)보나 낮았고 장애아반(1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I-31> 노출정도: 화가 난 부모를 상대**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16.1          | 25.0        | 50.5         | 8.4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14.3          | 28.6        | 53.2         | 3.9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4.9          | 23.4        | 48.9         | 12.8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20.5          | 20.5        | 51.2         | 7.8          | 100.0(166) |
| 직장        | 7.3           | 36.4        | 47.3         | 9.1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5.8          | 15.8        | 55.3         | 13.2         | 100.0( 38) |
| 6 ~ 10명   | 11.8          | 25.8        | 54.5         | 7.9          | 100.0(178) |
| 11 ~ 20명  | 19.4          | 24.6        | 47.8         | 8.2          | 100.0(134) |
| 21 ~ 30명  | 23.8          | 33.3        | 38.1         | 4.8          | 100.0( 21) |
| 30명 초과    | 23.8          | 28.6        | 38.1         | 9.5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13.1          | 22.8        | 55.6         | 8.5          | 100.0(259) |
| 유아반       | 21.6          | 30.4        | 40.0         | 8.0          | 100.0(125) |
| 장애아반      | 25.0          | 12.5        | 50.0         | 12.5         | 100.0( 8)  |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데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3.0%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59.6%)이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70.9%)이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6-10명(68.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20명(5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데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영아반(64.5%)에서 가장 높았다.

**<표 VI-32> 노출정도: 옳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 상대**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63.0          | 27.3        | 8.9          | .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66.2          | 32.5        | 1.3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9.6          | 26.6        | 13.8         | 0.0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60.8          | 27.1        | 10.8         | 1.2          | 100.0(166) |
| 직장        | 70.9          | 21.8        | 5.5          | 1.8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60.5          | 28.9        | 10.5         | 0.0          | 100.0( 38) |
| 6 ~ 10명   | 68.0          | 21.9        | 9.6          | .6           | 100.0(178) |
| 11 ~ 20명  | 56.7          | 35.1        | 6.7          | 1.5          | 100.0(134) |
| 21 ~ 30명  | 66.7          | 23.8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61.9          | 23.8        | 14.3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64.5          | 24.3        | 10.4         | .8           | 100.0(259) |
| 유아반       | 60.0          | 32.8        | 6.4          | .8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37.5        | 0.0          | 0.0          | 100.0( 8)  |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된 정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4.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국공립 어린이집(41.6%)에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29.8%)에서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5명 이하(21.1%)에서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52.4%)에서 가장 높았는데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근무시간의 절반이 정서적 불안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유아반(44.8%)이 영아반(28.2%)보다 높았고 장애아반(62.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33> 노출정도: 정서적 불안 상황**

(단위: %(명))

| 구분        | 근무시간<br>절반 이상 | 근무시간<br>1/4 | 거의 노출<br>안 됨 | 절대 노출<br>안 됨 | 계(수)       |
|-----------|---------------|-------------|--------------|--------------|------------|
| 전체        | 34.2          | 23.0        | 33.9         | 8.9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41.6          | 28.6        | 28.6         | 1.3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29.8          | 21.3        | 35.1         | 13.8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33.1          | 22.3        | 34.3         | 10.2         | 100.0(166) |
| 직장        | 34.5          | 20.0        | 38.2         | 7.3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21.1          | 26.3        | 36.8         | 15.8         | 100.0( 38) |
| 6 ~ 10명   | 31.5          | 23.6        | 37.6         | 7.3          | 100.0(178) |
| 11 ~ 20명  | 37.3          | 23.9        | 28.4         | 10.4         | 100.0(134) |
| 21 ~ 30명  | 42.9          | 19.0        | 28.6         | 9.5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9.5         | 38.1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28.2          | 27.0        | 34.7         | 10.0         | 100.0(259) |
| 유아반       | 44.8          | 16.0        | 32.0         | 7.2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0.0         | 37.5         | 0.0          | 100.0( 8)  |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4.6%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42.2%)이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49.1%)이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이하(34.2%)가 가장 낮았고 21-30명(52.4%) 및 30명 초과(52.4%)에서 가장 높았는데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영아반(44.4%) 및 유아반(44.0%)보다 장애아반(62.5%)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34> 업무상황: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 걱정함**

(단위: %(명))

| 구분        | 항상+<br>대부분 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44.6           | 32.7      | 22.7            | 2.67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46.8           | 31.2      | 22.1            | 2.64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4.7           | 34.0      | 21.3            | 2.66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42.2           | 36.7      | 21.1            | 2.66 | 100.0(166) |
| 직장        | 49.1           | 20.0      | 30.9            | 2.7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34.2           | 36.8      | 28.9            | 2.89 | 100.0( 38) |
| 6 ~ 10명   | 43.8           | 34.3      | 21.9            | 2.65 | 100.0(178) |
| 11 ~ 20명  | 46.3           | 32.1      | 21.6            | 2.67 | 100.0(134) |
| 21 ~ 30명  | 52.4           | 33.3      | 14.3            | 2.52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14.3      | 33.3            | 2.52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44.4           | 33.6      | 22.0            | 2.66 | 100.0(259) |
| 유아반       | 44.0           | 30.4      | 25.6            | 2.72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37.5      | 0.0             | 1.88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3.4%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40.4%)에서 가장 낮았고 직장 어린이집(50.9%)에서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이하(26.3%)가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52.4%)가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유아반(48.0%)이 영아반(40.5%)보다 높았고 장애아반(62.5%)이 가장 높았다.

**<표 VI-35> 업무상황: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함**

(단위: %(명))

| 구분        | 항상+대부분<br>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43.4          | 33.4      | 23.2            | 2.69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46.8          | 31.2      | 22.1            | 2.64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1.5          | 34.0      | 24.5            | 2.74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40.4          | 34.9      | 24.7            | 2.73 | 100.0(166) |
| 직장        | 50.9          | 30.9      | 18.2            | 2.5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26.3          | 36.8      | 36.8            | 3.13 | 100.0( 38) |
| 6 ~ 10명   | 44.4          | 36.0      | 19.7            | 2.62 | 100.0(178) |
| 11 ~ 20명  | 45.5          | 28.4      | 26.1            | 2.70 | 100.0(134) |
| 21 ~ 30명  | 42.9          | 38.1      | 19.0            | 2.71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33.3      | 14.3            | 2.33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40.5          | 35.5      | 23.9            | 2.75 | 100.0(259) |
| 유아반       | 48.0          | 28.8      | 23.2            | 2.59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37.5      | 0.0             | 2.38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업무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7.8%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32.5%)이 가장 높았고 직장 어린이집(23.6%)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이하(15.8%)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1-30명(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유아반(31.2%)이 영아반(25.1%)보다 높았고 장애아반(62.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36> 업무상황: 업무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 부족**

(단위: %(명))

| 구분        | 항상+대부분<br>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27.8          | 33.4      | 38.8            | 3.0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32.5          | 35.1      | 32.5            | 2.92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26.6          | 36.2      | 37.2            | 3.1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27.7          | 31.3      | 41.0            | 3.10 | 100.0(166) |
| 직장        | 23.6          | 32.7      | 43.6            | 3.1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5.8          | 26.3      | 57.9            | 3.42 | 100.0( 38) |
| 6 ~ 10명   | 27.0          | 32.6      | 40.4            | 3.10 | 100.0(178) |
| 11 ~ 20명  | 28.4          | 40.3      | 31.3            | 3.02 | 100.0(134) |
| 21 ~ 30명  | 42.9          | 19.0      | 38.1            | 2.90 | 100.0( 21) |
| 30명 초과    | 38.1          | 23.8      | 38.1            | 2.81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25.1          | 35.5      | 39.4            | 3.12 | 100.0(259) |
| 유아반       | 31.2          | 28.8      | 40.0            | 3.06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37.5      | 0.0             | 2.25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6.9%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71.4%)이 가장 높았고 직장 어린이집(40.0%)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20명(60.4%)이 가장 높았고 21-30명(47.6%) 및 30명 초과(47.6%)에서 가장 낮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장애아반(37.5%)이 가장 낮았다.

**<표 VI-37> 업무상황: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단위: %(명))

| 구분        | 항상+대부분<br>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16.1          | 27.0      | 56.9            | 3.60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11.7          | 16.9      | 71.4            | 3.82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7.0          | 38.3      | 44.7            | 3.44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16.9          | 20.5      | 62.7            | 3.71 | 100.0(166) |
| 직장        | 18.2          | 41.8      | 40.0            | 3.24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28.9          | 13.2      | 57.9            | 3.42 | 100.0( 38) |
| 6 ~ 10명   | 14.6          | 29.2      | 56.2            | 3.62 | 100.0(178) |
| 11 ~ 20명  | 14.9          | 24.6      | 60.4            | 3.67 | 100.0(134) |
| 21 ~ 30명  | 14.3          | 38.1      | 47.6            | 3.43 | 100.0( 21) |
| 30명 초과    | 14.3          | 38.1      | 47.6            | 3.43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15.8          | 27.4      | 56.8            | 3.62 | 100.0(259) |
| 유아반       | 16.0          | 25.6      | 58.4            | 3.59 | 100.0(125) |
| 장애아반      | 25.0          | 37.5      | 37.5            | 3.13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5.2%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국공립어린이집(48.1%)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41.5%)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이하(31.6%)가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52.4%)가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장애아반(12.5%)이 영아반(44.8%) 및 유아반(48.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표 VI-38> 업무상황: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음**

(단위: %(명))

| 구분        | 항상+대부분<br>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45.2          | 37.5      | 17.3            | 2.59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48.1          | 36.4      | 15.6            | 2.49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1.5          | 39.4      | 19.1            | 2.7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46.4          | 34.9      | 18.7            | 2.57 | 100.0(166) |
| 직장        | 43.6          | 43.6      | 12.7            | 2.58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31.6          | 47.4      | 21.1            | 2.87 | 100.0( 38) |
| 6 ~ 10명   | 46.6          | 39.9      | 13.5            | 2.53 | 100.0(178) |
| 11 ~ 20명  | 47.0          | 32.8      | 20.1            | 2.60 | 100.0(134) |
| 21 ~ 30명  | 38.1          | 42.9      | 19.0            | 2.81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23.8      | 23.8            | 2.38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44.8          | 37.8      | 17.4            | 2.59 | 100.0(259) |
| 유아반       | 48.0          | 34.4      | 17.6            | 2.57 | 100.0(125) |
| 장애아반      | 12.5          | 75.0      | 12.5            | 3.00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감정을 숨기고 일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9.4%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54.3%)이 가장 낮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62.7%)이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5명 이하(50.0%)가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66.7%)가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항상 그렇다 및 대부분 그렇다는 응답은 영아반(60.2%) 및 유아반(59.2%)보다 장애아반(37.5%)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표 VI-39> 업무상황: 감정을 숨기고 일함**

(단위: %(명))

| 구분        | 항상+대부분<br>그렇다 | 가끔<br>그렇다 | 별로+전혀<br>그렇지 않다 | 평균   | 계(수)       |
|-----------|---------------|-----------|-----------------|------|------------|
| 전체        | 59.4          | 25.5      | 15.1            | 2.31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58.4          | 26.0      | 15.6            | 2.32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4.3          | 27.7      | 18.1            | 2.46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62.7          | 22.9      | 14.5            | 2.23 | 100.0(166) |
| 직장        | 60.0          | 29.1      | 10.9            | 2.31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50.0          | 31.6      | 18.4            | 2.58 | 100.0( 38) |
| 6 ~ 10명   | 64.0          | 24.7      | 11.2            | 2.20 | 100.0(178) |
| 11 ~ 20명  | 56.0          | 26.1      | 17.9            | 2.38 | 100.0(134) |
| 21 ~ 30명  | 52.4          | 23.8      | 23.8            | 2.57 | 100.0( 21) |
| 30명 초과    | 66.7          | 19.0      | 14.3            | 2.1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60.2          | 23.2      | 16.6            | 2.31 | 100.0(259) |
| 유아반       | 59.2          | 29.6      | 11.2            | 2.29 | 100.0(125) |
| 장애아반      | 37.5          | 37.5      | 25.0            | 2.75 | 100.0( 8)  |

척도: ①항상그렇다 ~ ⑤전혀 그렇지 않다

업무수행 중 언어폭력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6.6%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22.1%)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10.6%)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5명 이하(10.5%)가 가장 낮았고 21-30명(33.3%) 및 30명 초과(33.3%)가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영아반(12.7%)보다 유아반(24.0%) 및 장애아반(25.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경우

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3%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만 3%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6%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7.8%)이 가장 높았고 직장 어린이집(3.6%)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6-10명(3.9%)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21-30명(9.5%) 및 30명 초과(9.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영아반(5.0%)보다 유아반(7.2%)이 높게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모욕적 행동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8%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6.4%)이 가장 낮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20.5%)이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5명 이하(10.5%)가 가장 낮았고 30명 초과(33.3%)가 가장 높았는데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40> 업무수행 중 폭력**

(단위: %(명))

| 구분        | 언어폭력 | 원하지 않은 성적 관심 | 위협  | 모욕적 행동 | (수)   |
|-----------|------|--------------|-----|--------|-------|
| 전체        | 16.6 | 1.3          | 5.6 | 15.8   | (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22.1 | 0.0          | 7.8 | 18.2   |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0.6 | 0.0          | 4.3 | 6.4    | (94)  |
| 민간 및 가정   | 17.5 | 3.0          | 6.0 | 20.5   | (166) |
| 직장        | 16.4 | 0.0          | 3.6 | 14.5   |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0.5 | 2.6          | 5.3 | 10.5   | (38)  |
| 6 ~ 10명   | 11.8 | 0.6          | 3.9 | 13.5   | (178) |

| 구분       | 언어폭력 | 원하지 않은 성적 관심 | 위협  | 모욕적 행동 | (수)   |
|----------|------|--------------|-----|--------|-------|
| 11 ~ 20명 | 19.4 | 1.5          | 6.7 | 16.4   | (134) |
| 21 ~ 30명 | 33.3 | 0.0          | 9.5 | 23.8   | (21)  |
| 30명 초과   | 33.3 | 4.8          | 9.5 | 33.3   |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12.7 | 1.5          | 5.0 | 15.4   | (259) |
| 유아반      | 24.0 | 0.8          | 7.2 | 17.6   | (125) |
| 장애아반     | 25.0 | 0.0          | 0.0 | 0.0    | (8)   |

업무수행 중 당한 언어폭력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원장 및 직장동료가 49.2%, 부모 등이 50.8%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국공립 어린이집(58.8%)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58.6%)이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30.0%)과 직장 어린이집(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모라는 응답은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70.0%)과 직장 어린이집(77.8%)이 국공립 어린이집(41.2%)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4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이 6-10명(61.9%)이 가장 높았고 11-20명(42.3%)이 가장 낮았는데 10명 이하의 소규모일수록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이 영아반(54.5%)에서 높았고 부모라는 응답은 유아반(56.7%)에서 높았다.

**<표 VI-41> 업무수행 중 폭력 : 언어폭력 주체**

(단위: %(명))

| 구분        | 원장/직장동료 | 부모 등 | (수)       |
|-----------|---------|------|-----------|
| 전체        | 49.2    | 50.8 | 100.0(65)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58.8    | 41.2 | 100.0(17) |
| 사회복지 및 법인 | 30.0    | 70.0 | 100.0(10) |
| 민간 및 가정   | 58.6    | 41.4 | 100.0(29) |
| 직장        | 22.2    | 77.8 | 100.0( 9)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50.0    | 50.0 | 100.0( 4) |
| 6 ~ 10명   | 61.9    | 38.1 | 100.0(21) |
| 11 ~ 20명  | 42.3    | 57.7 | 100.0(26) |
| 21 ~ 30명  | 42.9    | 57.1 | 100.0( 7) |
| 30명 초과    | 42.9    | 57.1 | 100.0( 7) |
| 담당반       |         |      |           |
| 영아반       | 54.5    | 45.5 | 100.0(33) |
| 유아반       | 43.3    | 56.7 | 100.0(30) |
| 장애아반      | 50.0    | 50.0 | 100.0( 2) |

업무 수행 중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받은 경우 그 주체에 대해서는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0%로 나타났다.

**<표 VI-42> 업무수행 중 폭력: 성적관심 주체**

(단위: %(명))

| 구분       | 원장/직장동료 | 부모 등 | (수)        |
|----------|---------|------|------------|
| 전체       | 80.0    | 20.0 | 100.0((5)) |
| 기관유형     |         |      |            |
| 민간 및 가정  | 80.0    | 20.0 | 100.0((5))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100.0   | 0.0  | 100.0((1)) |
| 6 ~ 10명  | 100.0   | 0.0  | 100.0((1)) |
| 11 ~ 20명 | 50.0    | 50.0 | 100.0((2)) |
| 30명 초과   | 100.0   | 0.0  | 100.0((1)) |
| 담당반      |         |      |            |
| 영아반      | 75.0    | 25.0 | 100.0((4)) |
| 유아반      | 100.0   | 0.0  | 100.0((1)) |

업무 수행 중 위협을 당한 경우 그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2%가 부모라고 응답하였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부모라는 응답은 영아반(76.9%)이 유아반(5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43> 업무수행 중 폭력: 위협 주체**

(단위: %(명))

| 구분        | 원장/직장동료 | 부모 등  | (수)       |
|-----------|---------|-------|-----------|
| 전체        | 31.8    | 68.2  | 100.0(2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33.3    | 66.7  | 100.0( 6) |
| 사회복지 및 법인 | 25.0    | 75.0  | 100.0( 4) |
| 민간 및 가정   | 40.0    | 60.0  | 100.0(10) |
| 직장        | 0.0     | 100.0 | 100.0( 2)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50.0    | 50.0  | 100.0( 2) |
| 6 ~ 10명   | 28.6    | 71.4  | 100.0( 7) |
| 11 ~ 20명  | 33.3    | 66.7  | 100.0( 9) |
| 21 ~ 30명  | 50.0    | 50.0  | 100.0( 2) |
| 30명 초과    | 0.0     | 100.0 | 100.0( 2) |
| 담당반       |         |       |           |
| 영아반       | 23.1    | 76.9  | 100.0(13) |
| 유아반       | 44.4    | 55.6  | 100.0( 9) |

업무 수행 중 모욕적 행동을 당한 경우 그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원장 및 직장동료(50.0%)와 부모(50.0%)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83.3%)에서 가장 높았고 부모라는 응답은 직장 어린이집(100%)에서 가장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부모라는 응답은 6-10명(62.5%)에서 가장 높았고 부모라는 응답은 30명 초과(100%)에서 가장 높았다. 담당반 기준으로는 부모라는 응답은 영아반(55.0%)에서 높았고 원장 및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유아반(59.1%)에서 높았다.

**<표 VI-44> 업무수행 중 폭력: 모욕적 행동 주체**

(단위: %(명))

| 구분        | 원장/직장동료 | 부모 등  | (수)  |
|-----------|---------|-------|------|
| 전체        | 50.0    | 50.0  | (6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50.0    | 50.0  | (14) |
| 사회복지 및 법인 | 83.3    | 16.7  | (6)  |
| 민간 및 가정   | 52.9    | 47.1  | (34) |
| 직장        | 12.5    | 87.5  | (8)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50.0    | 50.0  | (4)  |
| 6 ~ 10명   | 62.5    | 37.5  | (24) |
| 11 ~ 20명  | 50.0    | 50.0  | (22) |
| 21 ~ 30명  | 60.0    | 40.0  | (5)  |
| 30명 초과    | 0.0     | 100.0 | (7)  |
| 담당반       |         |       |      |
| 영아반       | 45.0    | 55.0  | (40) |
| 유아반       | 59.1    | 40.9  | (22) |

## 8) 보육교사 건강상태 및 업무상 재해 관련

보육교사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6.4%,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8.3%,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2.9%, 나쁜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7%, 매우 나쁜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0.8%였다. 전체 평균은 2.62점으로 보통보다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는 사회복지 및 법인 어린이집이 2.49점으로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평균이 2.69점으로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1-30명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2.90점으로 다른 종사자 규모의 어린이집보다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반 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다.

**<표 VI-45>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 매우<br>좋다 | 좋은<br>편이다 | 보통이다 | 나쁜<br>편이다 | 매우<br>나쁘다 | 계(수)       |
|-----------|----------|-----------|------|-----------|-----------|------------|
| 전체        | 6.4      | 38.3      | 42.9 | 11.7      | 0.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7.8      | 37.7      | 42.9 | 11.7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8.5      | 47.9      | 30.9 | 11.7      | 1.1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3.6      | 35.5      | 49.4 | 10.8      | 0.6       | 100.0(166) |
| 직장        | 9.1      | 30.9      | 43.6 | 14.5      | 1.8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7.9      | 44.7      | 39.5 | 7.9       | 0.0       | 100.0( 38) |
| 6 ~ 10명   | 3.9      | 39.9      | 46.1 | 9.6       | 0.6       | 100.0(178) |
| 11 ~ 20명  | 7.5      | 39.6      | 38.8 | 13.4      | .7        | 100.0(134) |
| 21 ~ 30명  | 9.5      | 9.5       | 66.7 | 9.5       | 4.8       | 100.0( 21) |
| 30명 초과    | 14.3     | 33.3      | 23.8 | 28.6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5.8      | 39.8      | 40.9 | 12.4      | 1.2       | 100.0(259) |
| 유아반       | 8.0      | 34.4      | 46.4 | 11.2      | 0.0       | 100.0(125) |
| 장애아반      | 0.0      | 50.0      | 50.0 | 0.0       | 0.0       | 100.0( 8)  |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5%가 상지근육 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신피로 65.8%, 두통 눈의 피로 53.8%, 하지근육통 50.3%, 요통 3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46>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 1

(단위: %(명))

| 구분        | 청력   | 피부   | 요통   | 상지 근육통 | 하지 근육통 | 계(수)       |
|-----------|------|------|------|--------|--------|------------|
| 전체        | 7.7  | 14.5 | 36.7 | 67.6   | 50.3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7.8  | 19.5 | 44.2 | 64.9   | 57.1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6.4  | 11.7 | 19.1 | 56.4   | 37.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9.0  | 11.4 | 43.4 | 76.5   | 56.6   | 100.0(166) |
| 직장        | 5.5  | 21.8 | 36.4 | 63.6   | 43.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7.9  | 5.3  | 36.8 | 71.1   | 60.5   | 100.0( 38) |
| 6 ~ 10명   | 5.6  | 9.0  | 34.3 | 68.5   | 50.0   | 100.0(178) |
| 11 ~ 20명  | 11.2 | 20.1 | 39.6 | 62.7   | 46.3   | 100.0(134) |
| 21 ~ 30명  | 4.8  | 28.6 | 38.1 | 71.4   | 57.1   | 100.0( 21) |
| 30명 초과    | 4.8  | 28.6 | 38.1 | 81.0   | 52.4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7.7  | 13.1 | 37.5 | 70.7   | 51.0   | 100.0(259) |
| 유아반       | 8.0  | 16.8 | 35.2 | 61.6   | 50.4   | 100.0(125) |
| 장애아반      | -    | 25.0 | 37.5 | 62.5   | 25.0   | 100.0( 8)  |

<표 VI-47>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 2

(단위: %(명))

| 구분        | 두통, 눈의 피로 | 손상   | 우울감  | 불안감  | 전신 피로 | 불면증  | 계(수)       |
|-----------|-----------|------|------|------|-------|------|------------|
| 전체        | 53.8      | 10.5 | 25.0 | 23.5 | 65.8  | 19.6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 국공립       | 57.1      | 14.3 | 31.2 | 29.9 | 72.7  | 23.4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5.7      | 6.4  | 14.9 | 9.6  | 50.0  | 9.6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57.2      | 10.8 | 27.7 | 29.5 | 73.5  | 23.5 | 100.0(166) |
| 직장        | 52.7      | 10.9 | 25.5 | 20.0 | 60.0  | 20.0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 5명 이하     | 39.5      | 13.2 | 26.3 | 26.3 | 63.2  | 23.7 | 100.0( 38) |
| 6 ~ 10명   | 56.2      | 7.3  | 21.3 | 19.7 | 68.0  | 18.0 | 100.0(178) |
| 11 ~ 20명  | 53.0      | 10.4 | 24.6 | 23.9 | 64.2  | 15.7 | 100.0(134) |
| 21 ~ 30명  | 66.7      | 19.0 | 38.1 | 42.9 | 61.9  | 33.3 | 100.0( 21) |
| 30명 초과    | 52.4      | 23.8 | 42.9 | 28.6 | 66.7  | 38.1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 영아반       | 51.7      | 8.1  | 22.0 | 21.2 | 67.2  | 19.3 | 100.0(259) |
| 유아반       | 58.4      | 15.2 | 31.2 | 27.2 | 62.4  | 20.8 | 100.0(125) |
| 장애아반      | 50.0      | 12.5 | 25.0 | 37.5 | 75.0  | 12.5 | 100.0( 8)  |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으며 전체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1.18일을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반이 8.0%로 영아반 3.5%에 비해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8>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 경험**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평균 - 일 | 표준편차 | 계(수)       |
|-----------|------|-------|--------|------|------------|
| 전체        | 5.1  | 94.9  | 1.18   | 2.26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9.1  | 90.9  | 1.41   | 2.55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6.4  | 93.6  | 1.93   | 3.10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3.0  | 97.0  | .40    | .82  | 100.0(166) |
| 직장        | 3.6  | 96.4  | 1.33   | 2.1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2.6  | 97.4  | .20    | .45  | 100.0( 38) |
| 6 ~ 10명   | 3.9  | 96.1  | 1.50   | 2.63 | 100.0(178) |
| 11 ~ 20명  | 8.2  | 91.8  | 1.60   | 2.55 | 100.0(134) |
| 21 ~ 30명  | 4.8  | 95.2  | .40    | .89  | 100.0( 21) |
| 30명 초과    | 0.0  | 100.0 | 0.00   | 0.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3.5  | 96.5  | 1.12   | 2.26 | 100.0(259) |
| 유아반       | 8.0  | 92.0  | 1.16   | 2.31 | 100.0(125) |
| 장애아반      | 12.5 | 87.5  | 3.00   | -    | 100.0( 8)  |

업무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결근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였으며 평균 결근일 수는 3.04일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19.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30명 초과인 기관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6%로 다른 규모의 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유아반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영아반 교사보다 높았다. 하지만 평균 결근일 수는 영아반 교사가 3.44일로 유아반 교사 평균 2.42일에 비해 높았다.

### <표 VI-49> 업무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결근 경험

(단위: %(명))

| 구분        | 있음   | 없음   | 평균 - 일 | 표준편차 | 계(수)       |
|-----------|------|------|--------|------|------------|
| 전체        | 13.3 | 86.7 | 3.04   | 3.66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19.5 | 80.5 | 2.41   | 2.55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1.7 | 88.3 | 2.14   | 2.51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12.0 | 88.0 | 4.55   | 5.07 | 100.0(166) |
| 직장        | 10.9 | 89.1 | 1.83   | .7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3.2 | 86.8 | 2.20   | .45  | 100.0( 38) |
| 6 ~ 10명   | 7.9  | 92.1 | 3.56   | 5.12 | 100.0(178) |
| 11 ~ 20명  | 16.4 | 83.6 | 2.68   | 2.79 | 100.0(134) |
| 21 ~ 30명  | 23.8 | 76.2 | 1.20   | .45  | 100.0( 21) |
| 30명 초과    | 28.6 | 71.4 | 5.33   | 4.63 | 100.0( 21)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9.3  | 90.7 | 3.44   | 4.55 | 100.0(259) |
| 유아반       | 21.6 | 78.4 | 2.42   | 2.29 | 100.0(125) |
| 장애아반      | 12.5 | 87.5 | 12.00  | -    | 100.0( 8)  |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매우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다른 기관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반 별로 살펴보면 유아반이 63.2% 영아반 57.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0>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
| 전체        | 59.2 | 40.8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국공립       | 66.2 | 33.8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42.6 | 57.4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66.9 | 33.1 | 100.0(166) |
| 직장        | 54.5 | 45.5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5명 이하     | 52.6 | 47.4 | 100.0( 38) |
| 6 ~ 10명   | 59.0 | 41.0 | 100.0(178) |
| 11 ~ 20명  | 59.7 | 40.3 | 100.0(134) |
| 21 ~ 30명  | 71.4 | 28.6 | 100.0( 21) |
| 30명 초과    | 57.1 | 42.9 | 100.0( 21) |
| 담당반       |      |      |            |
| 영아반       | 57.1 | 42.9 | 100.0(259) |
| 유아반       | 63.2 | 36.8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37.5 | 100.0( 8)  |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체교사 부재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프다는 말조차 못한 경우 29.7%, 원장 재량 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51>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

(단위: %(명))

| 구분        | 대체교사 부재 | 원장 재량 | 불이익 때문 | (아프 다는) 말조차 못한 경우 | 기타   | 계(수)       |
|-----------|---------|-------|--------|-------------------|------|------------|
| 전체        | 49.6    | 7.8   | 4.7    | 29.7              | 8.2  | 100.0(23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45.1    | 7.8   | 7.8    | 35.3              | 3.9  | 100.0( 51) |
| 사회복지 및 법인 | 55.0    | 10.0  | 2.5    | 22.5              | 10.0 | 100.0( 40) |
| 민간 및 가정   | 50.5    | 9.0   | 5.4    | 28.8              | 6.3  | 100.0(111) |
| 직장        | 46.7    | 0.0   | 0.0    | 33.3              | 20.0 | 100.0( 30)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60.0    | 5.0   | 0.0    | 30.0              | 5.0  | 100.0( 20) |
| 6 ~ 10명   | 54.3    | 7.6   | 5.7    | 27.6              | 4.8  | 100.0(105) |
| 11 ~ 20명  | 46.3    | 8.8   | 5.0    | 30.0              | 10.0 | 100.0( 80) |
| 21 ~ 30명  | 46.7    | 13.3  | 6.7    | 13.3              | 20.0 | 100.0( 15) |
| 30명 초과    | 16.7    | 0.0   | 0.0    | 66.7              | 16.7 | 100.0( 12)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50.7    | 7.4   | 4.1    | 29.7              | 8.1  | 100.0(148) |
| 유아반       | 49.4    | 7.6   | 6.3    | 30.4              | 6.3  | 100.0( 79) |
| 장애아반      | 20.0    | 20.0  | 0.0    | 20.0              | 40.0 | 100.0( 5)  |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일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3일 49.6%, 4-10일 40.1%, 10일 초과 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8.90일이었다. 기관유형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22.8일로 가장 많으며 종사자 규모에서는 21-30명 규모의 어린이집 21.87일, 영아반 10.22일로 다른 규모나 담당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2>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날**

(단위: %(명))

| 구분        | 1일-3일<br>이하 | 4일-<br>10일<br>이하 | 10일<br>초과 | 평균 - 일 | 표준편차  | 계(수)       |
|-----------|-------------|------------------|-----------|--------|-------|------------|
| 전체        | 49.6        | 40.1             | 10.3      | 8.90   | 28.21 | 100.0(23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31.4        | 31.4             | 13.7      | 8.90   | 13.94 | 100.0( 51) |
| 사회복지 및 법인 | 72.5        | 7.5              | 5.0       | 3.88   | 4.35  | 100.0( 40) |
| 민간 및 가정   | 52.3        | 19.8             | 9.9       | 6.95   | 11.71 | 100.0(111) |
| 직장        | 40.0        | 26.7             | 10.0      | 22.80  | 72.19 | 100.0( 30)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40.0        | 25.0             | 5.0       | 5.70   | 3.80  | 100.0( 20) |
| 6 ~ 10명   | 54.3        | 20.0             | 10.5      | 9.65   | 36.49 | 100.0(105) |
| 11 ~ 20명  | 46.3        | 23.8             | 6.3       | 5.31   | 4.55  | 100.0( 80) |
| 21 ~ 30명  | 53.3        | 26.7             | 13.3      | 21.87  | 50.34 | 100.0( 15) |
| 30명 초과    | 41.7        | 0.0              | 33.3      | 15.42  | 18.27 | 100.0( 12)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49.3        | 20.9             | 10.8      | 10.22  | 34.30 | 100.0(148) |
| 유아반       | 49.4        | 22.8             | 8.9       | 6.70   | 11.42 | 100.0( 79) |
| 장애아반      | 60.0        | 0.0              | 0.0       | 4.80   | 3.96  | 100.0( 5)  |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3%로 나타났다. 1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 2건 3.3%, 3건 2.3%, 5건 1.5%였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비율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종사자 규모가 11-20명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19.4%로 다른 규모에 비해 높았으며 유아반 교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로 영아반 교사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I-53> 업무상 재해 경험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 구분        | 없음   | 있음   | 1건   | 2건  | 3건  | 5건  | 계(수)       |
|-----------|------|------|------|-----|-----|-----|------------|
| 전체        | 84.7 | 15.3 | 7.9  | 3.3 | 2.3 | 1.5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 국공립       | 14.3 | 85.7 | 10.4 | 3.9 | 0.0 | 0.0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16.0 | 84.0 | 10.6 | 1.1 | 1.1 | 3.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18.1 | 81.9 | 7.2  | 5.4 | 3.6 | 1.8 | 100.0(166) |
| 직장        | 7.3  | 92.7 | 1.8  | 0.0 | 3.6 | 0.0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 5명 이하     | 13.2 | 86.8 | 5.3  | 5.3 | 0.0 | 2.6 | 100.0( 38) |
| 6 ~ 10명   | 13.5 | 86.5 | 6.2  | 3.4 | 3.4 | .6  | 100.0(178) |
| 11 ~ 20명  | 19.4 | 80.6 | 11.9 | 3.7 | 0.0 | 3.0 | 100.0(134) |
| 21 ~ 30명  | 9.5  | 90.5 | 0.0  | 0.0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14.3 | 85.7 | 9.5  | 0.0 | 4.8 | 0.0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 영아반       | 13.1 | 86.9 | 6.6  | 3.1 | 1.9 | 1.2 | 100.0(259) |
| 유아반       | 20.0 | 80.0 | 10.4 | 4.0 | 3.2 | 2.4 | 100.0(125) |
| 장애아반      | 12.5 | 87.5 | 12.5 | 0.0 | 0.0 | 0.0 | 100.0( 8)  |

보육교사가 응답한 전체 업무상 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부딪힘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넘어짐 17.1%,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13.3% 순이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재해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어린이집은 부딪힘 사고가 가장 많았다.

**<표 VI-54> 업무상 재해 발생형태**

(단위: %(명))

| 구분        | 넘어짐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부딪힘  | 절단/베임/찢림 | 이상 온도 접촉 (화상 등) | 계(수)       |
|-----------|-------|--------------|------|----------|-----------------|------------|
| 전체        | 17.1  | 13.3         | 22.9 | 5.7      | 6.7             | 100.0(105)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21.4  | 21.4         | 28.6 | 0.0      | 0.0             | 100.0( 14) |
| 사회복지 및 법인 | 8.3   | 4.2          | 29.2 | 12.5     | 16.7            | 100.0( 24) |
| 민간 및 가정   | 17.5  | 15.8         | 15.8 | 5.3      | 5.3             | 100.0( 57) |
| 직장        | 30.0  | 10.0         | 40.0 | 0.0      | 0.0             | 100.0( 10)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33.3  | 11.1         | 33.3 | 11.1     | 0.0             | 100.0( 9)  |
| 6 ~ 10명   | 13.6  | 18.2         | 11.4 | 4.5      | 4.5             | 100.0( 44) |
| 11 ~ 20명  | 17.1  | 9.8          | 34.1 | 7.3      | 9.8             | 100.0( 41) |
| 21 ~ 30명  | 33.3  | 16.7         | 16.7 | 0.0      | 0.0             | 100.0( 6)  |
| 30명 초과    | 0.0   | 0.0          | 20.0 | 0.0      | 20.0            | 100.0( 5)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15.0  | 13.3         | 20.0 | 3.3      | 8.3             | 100.0( 60) |
| 유아반       | 18.2  | 13.6         | 27.3 | 9.1      | 4.5             | 100.0( 44) |
| 장애아반      | 100.0 | 0.0          | 0.0  | 0.0      | 0.0             | 100.0( 1)  |

업무상재해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4일 미만인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14일 32.4%, 15-28일 3.8%, 29-90일 3.8%, 91일 이상이 1.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사고가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의 비율이 56.1%로 나타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반의 경우가 유아반의 경우보다 치료기간이 긴 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55> 업무상 재해 치료기간**

(단위: %(명))

| 구분        | 4일<br>미만 | 4-<br>14일 | 15-<br>28일 | 29-<br>90일 | 91일<br>이상 | 계(수)       |
|-----------|----------|-----------|------------|------------|-----------|------------|
| 전체        | 58.1     | 32.4      | 3.8        | 3.8        | 1.9       | 100.0(105)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92.9     | 7.1       | 0.0        | 0.0        | 0.0       | 100.0( 14) |
| 사회복지 및 법인 | 75.0     | 12.5      | 8.3        | 4.2        | 0.0       | 100.0( 24) |
| 민간 및 가정   | 43.9     | 49.1      | 3.5        | 1.8        | 1.8       | 100.0( 57) |
| 직장        | 50.0     | 20.0      | 0.0        | 20.0       | 10.0      | 100.0( 10)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88.9     | 0.0       | 11.1       | 0.0        | 0.0       | 100.0( 9)  |
| 6 ~ 10명   | 52.3     | 43.2      | 2.3        | 0.0        | 2.3       | 100.0( 44) |
| 11 ~ 20명  | 65.9     | 26.8      | 4.9        | 2.4        | 0.0       | 100.0( 41) |
| 21 ~ 30명  | 33.3     | 33.3      | 0.0        | 16.7       | 16.7      | 100.0( 6)  |
| 30명 초과    | 20.0     | 40.0      | 0.0        | 40.0       | 0.0       | 100.0( 5)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50.0     | 33.3      | 6.7        | 6.7        | 3.3       | 100.0( 60) |
| 유아반       | 70.5     | 29.5      | 0.0        | 0.0        | 0.0       | 100.0( 44) |
| 장애아반      | 0.0      | 100.0     | 0.0        | 0.0        | 0.0       | 100.0( 1)  |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개인이 부담(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VI-56> 업무상 재해 처리방법**

(단위: %(명))

| 구분            | 산재 처리 | 어린이집<br>안전공제회<br>신청 | 공상처리 | 개인부담<br>(건강 보험<br>또는 민간보험<br>활용 포함) | 계(수)       |
|---------------|-------|---------------------|------|-------------------------------------|------------|
| 전체            | 13.3  | 7.6                 | 2.9  | 76.2                                | 100.0(105) |
| 기관유형          |       |                     |      |                                     |            |
| 국공립           | 14.3  | 7.1                 | 0.0  | 78.6                                | 100.0( 14) |
| 사회복지 및 법인     | 20.8  | 20.8                | 8.3  | 50.0                                | 100.0( 24) |
| 민간 및 가정<br>직장 | 10.5  | 3.5                 | 1.8  | 84.2                                | 100.0( 57) |
| 직장            | 10.0  | 0.0                 | 0.0  | 90.0                                | 100.0( 10) |
| 종사자 규모        |       |                     |      |                                     |            |
| 5명 이하         | 11.1  | 11.1                | 11.1 | 66.7                                | 100.0( 9)  |
| 6 ~ 10명       | 15.9  | 4.5                 | 2.3  | 77.3                                | 100.0( 44) |
| 11 ~ 20명      | 12.2  | 12.2                | 2.4  | 73.2                                | 100.0( 41) |
| 21 ~ 30명      | 0.0   | 0.0                 | 0.0  | 100.0                               | 100.0( 6)  |
| 30명 초과        | 20.0  | 0.0                 | 0.0  | 80.0                                | 100.0( 5)  |
| 담당반           |       |                     |      |                                     |            |
| 영아반           | 10.0  | 3.3                 | 1.7  | 85.0                                | 100.0( 60) |
| 유아반           | 15.9  | 13.6                | 4.5  | 65.9                                | 100.0( 44) |
| 장애아반          | 100.0 | 0.0                 | 0.0  | 0.0                                 | 100.0( 1)  |

업무상 재해 후 근무 지속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통원치료 받으면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였으며 휴가 후 복직 19.0%,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가 8.6%였다.

**<표 VI-57> 업무상 재해 후 근무 지속 여부**

(단위: %(명))

| 구분        | 산재 처리 | 어린이집<br>안전공제회<br>신청 | 공상처리  | 계(수)       |
|-----------|-------|---------------------|-------|------------|
| 전체        | 8.6   | 19.0                | 72.4  | 100.0(105) |
| 기관유형      |       |                     |       |            |
| 국공립       | 7.1   | 21.4                | 71.4  | 100.0( 14) |
| 사회복지 및 법인 | 12.5  | 25.0                | 62.5  | 100.0( 24) |
| 민간 및 가정   | 8.8   | 17.5                | 73.7  | 100.0( 57) |
| 직장        | 0.0   | 10.0                | 90.0  | 100.0( 10) |
| 종사자 규모    |       |                     |       |            |
| 5명 이하     | 11.1  | 11.1                | 77.8  | 100.0( 9)  |
| 6 ~ 10명   | 13.6  | 22.7                | 63.6  | 100.0( 44) |
| 11 ~ 20명  | 4.9   | 17.1                | 78.0  | 100.0( 41) |
| 21 ~ 30명  | 0.0   | 0.0                 | 100.0 | 100.0( 6)  |
| 30명 초과    | 0.0   | 40.0                | 60.0  | 100.0( 5)  |
| 담당반       |       |                     |       |            |
| 영아반       | 10.0  | 16.7                | 73.3  | 100.0( 60) |
| 유아반       | 6.8   | 20.5                | 72.7  | 100.0( 44) |
| 장애아반      | 0.0   | 100.0               | 0.0   | 100.0( 1)  |

현재 어린이집에서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견딜만한 질병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작은 질병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 사고는 산재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3%, 산재보험을 몰라 모든/질병, 사고에 대해 교사 본인이 자비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산재보험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58>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 참고 넘어감 | 교사 자비 부담 | 공상 처리 | 큰질병/ 사고만 산재 처리 | 산재 보험 처리 | 계(수)       |
|-----------|--------|----------|-------|----------------|----------|------------|
| 전체        | 64.3   | 6.4      | 2.6   | 14.3           | 3.6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63.6   | 6.5      | 3.9   | 15.6           | 2.6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53.2   | 4.3      | 4.3   | 20.2           | 3.2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70.5   | 7.8      | 1.8   | 7.2            | 4.2      | 100.0(166) |
| 직장        | 65.5   | 5.5      | 0.0   | 23.6           | 3.6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71.1   | 5.3      | 2.6   | 7.9            | 5.3      | 100.0( 38) |
| 6 ~ 10명   | 62.4   | 6.7      | 2.2   | 14.6           | 5.1      | 100.0(178) |
| 11 ~ 20명  | 64.2   | 7.5      | 3.0   | 14.2           | 1.5      | 100.0(134) |
| 21 ~ 30명  | 71.4   | 4.8      | 4.8   | 9.5            | 0.0      | 100.0( 21) |
| 30명 초과    | 61.9   | 0.0      | 0.0   | 28.6           | 4.8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64.1   | 5.0      | 1.5   | 15.1           | 3.5      | 100.0(259) |
| 유아반       | 64.8   | 8.0      | 4.8   | 13.6           | 4.0      | 100.0(125) |
| 장애아반      | 62.5   | 25.0     | 0.0   | 0.0            | 0.0      | 100.0( 8)  |

근무시 병원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장 및 동료 선생님의 눈치가 17.6%, 기타 13.3%, 가까운 곳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음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59> 근무 시 병의원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 치료비 부담 | 병원 갈 (치료 할) 시간이 없음 | 가까운 곳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음 | 원장 (시설 장) 및 동료 선생님의 눈치 | 기타   | 계(수)       |
|-----------|--------|--------------------|---------------------|------------------------|------|------------|
| 전체        | 2.8    | 59.9               | 6.4                 | 17.6                   | 13.3 | 100.0(392) |
| 기관유형      |        |                    |                     |                        |      |            |
| 국공립       | 2.6    | 67.5               | 10.4                | 13.0                   | 6.5  | 100.0( 77) |
| 사회복지 및 법인 | 0.0    | 60.6               | 5.3                 | 17.0                   | 17.0 | 100.0( 94) |
| 민간 및 가정   | 5.4    | 57.8               | 4.2                 | 21.1                   | 11.4 | 100.0(166) |
| 직장        | 0.0    | 54.5               | 9.1                 | 14.5                   | 21.8 | 100.0( 55) |
| 종사자 규모    |        |                    |                     |                        |      |            |
| 5명 이하     | 7.9    | 60.5               | 2.6                 | 13.2                   | 15.8 | 100.0( 38) |
| 6 ~ 10명   | 2.8    | 61.8               | 5.1                 | 16.3                   | 14.0 | 100.0(178) |
| 11 ~ 20명  | 2.2    | 60.4               | 9.0                 | 17.9                   | 10.4 | 100.0(134) |
| 21 ~ 30명  | 0.0    | 61.9               | 0.0                 | 28.6                   | 9.5  | 100.0( 21) |
| 30명 초과    | 0.0    | 38.1               | 14.3                | 23.8                   | 23.8 | 100.0( 21) |
| 담당반       |        |                    |                     |                        |      |            |
| 영아반       | 3.1    | 59.8               | 4.2                 | 17.8                   | 15.1 | 100.0(259) |
| 유아반       | 2.4    | 61.6               | 10.4                | 16.0                   | 9.6  | 100.0(125) |
| 장애아반      | 0.0    | 37.5               | 12.5                | 37.5                   | 12.5 | 100.0( 8)  |

### 3.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심층면담 결과

#### 1) 어린이집 재해 발생 위험성

##### (1) 넘어짐 사고 관련

보육교사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등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말리기 위해 급히 달려가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하원 지도 하는 경우도 사고가 발생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에 신학기 때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업어주거나 안아주거나, 신 학기 때 아이들 적응시키기 위해서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 달려다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고...(보육교사 1)

아이들 등하원 지도하면서 비가 오거나 할 때 길이 미끄럽거나,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할 때 미끄러져서 다리 골절상을 입는 경우....(보육교사 2)

##### (2) 교통사고

차량운행으로 인한 접촉사고도 발생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등하원 지도 시 영유아를 등하원 지도를 위해 보육교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영유아에 비해 부상당할 위험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 차에 태우고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교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럴 때 차량 접촉 사고가 생긴다거나 이래 되면 선생님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보육교사 2).

5분간격으로 아동들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가끔씩 안전벨트 메는 것을 잊는 경우도 있어요...(보육교사 4).

### (3) 근골격계 질환

영유아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놔다 하는 행동을 자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아이를 들다가 뭐 허리가 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까지고 허리 아이를 영아들은 많이 들었다가 놔다가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들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를 들을 때 허리가 갑자기 뚝 하고나면 또 치료를 한참동안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보육교사 1)

유아들은 주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영아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육체적으로 좀 많이 ...아이들을 보살필 때 신체적인 것들을 많이 쓰니까 안아주고 하다보면 팔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골절 당하고 아니면 은 차량 이동할 때 골절 당하고. 아무래도 우리 영아들은 들었다 놔다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보육교사 3).

보육교사로 일한지 1년 6개월 정도 돼서 허리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니 허리디스크 탈출증이었어요(보육교사 6.)

특히 영아반을 자주 담당했던 보육교사들은 허리디스크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치료를 산재처리를 받지 못해 본인 부담을 치료 받는 경우가 있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경우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는데 너무 일 할 수 없는 지경여 가지고 11월 말 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학기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치료하고 새 학기 시작했었어요(보육교사 8.)

### (4) 화상 사고

영유아 교재교구 등을 제작하기 위해 글루건 등을 이용하는 경우 화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 조금 있고 만들기 할 때, 글루건에 잠깐씩 앓 뜨거워 할 때? (보육교사 7)

## (5) 감정보동

보육교사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부모님들의 비합리적인 요구, 폭언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어려우니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애들과 관계에서는 애들이 예쁘고 하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상대하는 거를 다 어려워하죠. 또 부모님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만족도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걸 서비스하는데도. 부모님들 중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상식적이신 못하신 부분. 부모님들도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정신적으로 결핍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보육교사 5).

어른들간 어떤 상호작용에서 부모님들 대하고 하는 것에서, 특히 3월달이 가장 많이 힘들죠. (입학 때) 네, 애들도 성향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부모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님들간에 관계가 이제 3,4월달에 조금 힘들고 5월달에 되면 이렇게 부모님도 저한테 마찬가지로, 아직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이렇게 색안경을 끼는 경우도 있고 의심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처음 보내다보니까, 누구나 자기 자녀는 소중하잖아요?(보육교사 2)

## (6) CCTV로 인한 긴장감

아동학대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인해 보육교사는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행동이 CCTV로 인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육관련 행동이 학대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 하는 경우도 많고,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 더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응답하였다.

때로는 애들 재우면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또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물건을 가지러 갈 때... 그래서 글썽 것들 때문에 CCTV를 보자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선생님들이 뭐 잘하고 있어도 CCTV에는 말이 안 나오고 행동만 나오니까 그냥 봐서 이렇게 안고 오는데도 조금 동작을 빨리하면 아이를 확 낚아채는 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자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보육교사 4).

그것도 뭐 네, 지금도 항상 집에가면 누군가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만큼, 하지만 있으니까 저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어요(보육교사 2).

#### (7) 청각 장애 위험성

보육교사는 장기간 시끄러운 시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청각이 손실된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한 보육교사의 경우는 실제로 귀가 자주 아프고 소리가 가끔씩 안들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직업병인지 인제 귀가 좀 잘 안들려가.... 원장님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는 괜찬는데, 애들을 보고는 이렇게 소리가 크니까요(보육교사 2).

### 2) 근로환경 및 안전교육 실태

#### (1) 단기 근로 계약 및 호봉 문제

보육교사는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년 단위 근로 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다 계약직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년수가 길지 않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7.8% 있는 데가 한 5년 정도 나오고, 그 외 민간 가정은 2년 정도 붓니다(보육교사 3).

그래서 주는 게 최저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국공립 교사들에 의하면 호봉표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민간 가정에게는 호봉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호봉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보육교사 5).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시간내서 읽을 수도 없어요.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 하더라도 바꿀순 없어요(보육교사 4).

## (2) 산재 신청의 어려움 및 산재 은폐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손실한 교사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재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적으로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발생하면 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단순히 교사 건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영양 교사 건 간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김스라도 하게 되면 풀기 전에는 (어려운...)... 온몸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주는 시한이 2주예요, 2주. 열흘. 2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을 경우에는 자동 해고입니다. 자동 해고이고, 공제회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이용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형식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교사들이 되게 많이, 이거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인 손목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교사들도 손목, 어깨 허리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데 거의 근골격계 질환을 신청할 수가 없죠(보육교사 3).

만약에, 얼마전에 어떤 교사가 0세반에서 골절이 났어요, 발가락 골절이. 그런데 0세반은 책상이 이만큼 낮잖아요.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낮아서 부딪혀서.) 네, 걸리면서 발가락 골절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 몇 개월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간 치료를 받으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일을 쉬고. 그랬더니 6개월간 대체해줄 인력이 없으니까 사직서 쓰고 나가라 라고 애 길 한 거죠, 그래서 사직서 쓰고 나오는 거예요(보육교사 4).

네, 혜택을 받지 못하죠. 정말 티 나게 어디가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개인 사비로, 애들이 눈병이 걸려서 결막염이 걸려와도 우리는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보육교사 15).

또한 허리디스크 등의 발생을 개인의 약한 신체적인 구조 탓으로 돌리는 등 원인이 산업재해 및 보험 체계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산재로 인한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 부담 처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디스크를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산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원래 허리가 약했기 때문에 디스크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를 거의 1년 넘게 받았고 치료비용으로 월급이 다 나갔어요. 산재처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보육교사 6).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재취업 영향을 줄 수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였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아파도 참고 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왜냐면 꾸준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을 가서도 소위 블랙리스트(따라 다니잖아요.)라고, 전화해서 힘들게 해버리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꺼려하거든요. (보육교사 11).

또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사 상품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도 안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안내도 따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전에 저희 원에 아이가 빠진 적이 있어서 그걸 병원에 다녀오고 다친 일지를 작성하다가 근데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안 들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육교사 14).

### (3) 안전 교육 미비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교육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보육교사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법적 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교육 등을 주말에 한꺼번에 받아서 진행하고 보육교사 건강에 대한 전문가 교육은 실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교육. 6대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아이들 안전 교육은 의무 교육이라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해가지고 한번씩 교직원들 한 3000명 정도해가지고 받아요(보육교사 2).

#### (4) 보육교사 휴게시간 제공의 어려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휴게 시간 제공은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휴게시간을 보장하더라도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고, 휴게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를 돌보지 않고 맘편히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잘 지키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쉬 수 있는 휴게실도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거의 한 99%가 아마 교사 휴게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 인정해서 교사 휴게실을 두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기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거든요? 우리도 위층에 인제 조그맣게 휴게실이라고 명패는 달아놨지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어려울 뿐더러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을 놔두고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고 한 시간 동안거기 앉아서 누워있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냥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뭐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볼일이 많을 거잖아요. 은행 볼일이라든지 병원갈 일이라든지, 뭐 아이들 학교 상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휴게시간 이용해서 하라고 그렇게는 하고 있죠(보육교사 2).

네 타이트한 것도 있고 애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 옆에 선생님께 맡기고 썼었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휴게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조정해가지고 차라리 조금 한 시간 늦게 오는 팀과 한 시간 빨리 가는 팀, 그게 더 효율적이예요. 그때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중간에 나가는 거는 정말 애들이 아무리 자는 시간이라도 나가기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보육교사 4)

#### (5) 교사에게 불편한 시설

어린이집 책상과 의자가 모두 영유아에 맞춰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대부분은

불편한 자세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근골격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해서 아예 어른 책상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좀 더 권위적이고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아이들 이랑 활동하는 경우도 작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요. 그런 제일 큰 것은 책상하고 의자? 그게 제일 불편하고. 그래도 저희는 어른 화장실이랑 어른 손씻는데가 있어서 다 행인데 책상 때문에 허리가(보육교사8)

또한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가 없어 영유아가 자는 시간에 영유아실 바닥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반은 모두 좌식이예요. 무조건 앉아서 근무해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책상이 아니라 노트북을 바닥에 놓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타 이핑을 쳐요(보육교사 6).

세면대도 성인용이 없어 구부리고 씻는 경우가 많아 허리디스크를 앓는 교사의 경우 세면대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면대가 아이들 높이 맞아서 낮아지고 많이 수그리고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허리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죠. (보육교사 12).

(6) 어린이집 공사 보조작업에 투입 및 행사 준비로 인한 부상 발생  
보육교사의 주업무가 아닌 어린이집 보수공사에도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업 때문에 실제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공사에도 투입이 되었어요. 공사를 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동료 교사도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팔 근육 손상을 심하게 입었지만 산재처리를 해주진 않으셨어요. 공사할 땐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데 원장님께서 마스크 쓰란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마인드세요(보육교사 6)

네, 어제 저희 같은 경우 오늘 부모 모니터링단 이라고 감사 비슷하게 나와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또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방충망 거미줄 제거하신다고 올라가셨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부어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 이라고 웃고 넘어갔어요(보육교사 1).

### 3) 심층면담 소결

#### (1)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제외하고 안전교육은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안전교육은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2) 안전시설 설치 지원

넘어짐과 관련된 사고 발생이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모서리 보호대, 손끼임 방지 기구 같은 지원도 보육교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네... 미끄럼 있고, 미끄럼 방지 같은 거(보육교사 5)

건물 실내에서는 손 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같은 것, 미끄럼 방지, 그런 소소한 것들? 소소히 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 지원해 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보육교사 1).

### (3)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부모님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줄이고 보육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어린이집도 다른 서비스업에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포스터, 리플렛,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것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다 정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는 교사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도, 다 집에 가면 한 사람의 아내고 엄마고,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큼 소중한 데 인제 선생님들 대할 때 자기감정 표현을 다 하거나 요구를 많이 한다거나,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한다거나 하면 그만큼 선생님이 힘들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한다 하면 어머님들도 많이 참여 안하세요. (그렇죠.)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니까 우리가 부모교육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져 있어서 하려고 하지만 부모님들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인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엄마들이 많은 정보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굳이 원에 와서 원에서 초청하는 강사한테 얘기를 안 들어도 검색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다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별로 원에 오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도 고쳐지지 않고. (보육교사 1).

### (4) 산재시 대체교사 지원

산재로 인해 보육교사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해고의 위험성 때문에 산재 신청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산재신청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제도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몸이 아픈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체교사를 배치해주는 곳도 있었다.

채워질 때까지 출근을 하고 그 저희가 대체교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있는 대체교사 지원제도는 교사의 아까 말씀드린 직무교육을 우선순위로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조사. 그 다음 순위가 경조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 이 신청자체를 두 달 전에, 두 달에 한번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3월에 휴가를 나간다 그러면 12월에 신

청 기간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원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이 커팅하면 신청이 안되는 거죠(보육교사 4).

저희가 산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누군가 빠지면 정말 누구 하나 투입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는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전에 제가 조금 전에 넘어지면서 다쳐서 보육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입원하려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런 갑작스러운 경우는 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해 주실 수 있다고, 진단서만 있으면(보육교사 8).

#### (5) 엘리베이터 설치

2층 이상이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에 비해 계단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이 거의 없고 급·간식 등으로 인한 무리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급간식이 모두 엘리베이터로 다 2층까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 교사가 그 전에 어린이집에서는 복도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우리 교사들이 쟁반째 들고 올라갔어요. 그 부분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층 생활을 하는데, 오전 간식도, 점심도, 오후 간식도 올라오고, 혹시나 애들 교재도 엘리베이터도 올라오니깐(보육교사 9)

## 4.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개요

보육시설 운영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실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 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9: 257).

## 2)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설비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58-259).

이러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이미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태조사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설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58-259).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기준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배제되어 있다. 앞으로 사무실, 휴게실 등 보육교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표 VI-6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설치기준**

| 조 문            | 내 용  |
|----------------|--|
| 영유아보육법<br>제15조 |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br>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

| 조 문   | 내 용  |
|---|--|
| 영유아보육법<br>시행규칙 제9조                            | <p>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p> <p>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
| 영유아보육법<br>시행규칙 제9조<br>별표 1<br>(어린이집의<br>설치기준) | <p>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p> <p>가. 일반기준</p> <p>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다) 목욕실</p> <p>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마) 교사실</p> <p>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바) 놀이터</p> <p>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p> <p>(i)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p> |

| 조 문                                  | 내 용   |
|--------------------------------------|---|
|                                      | <p>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p> <p>(v)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아) 비상재해대비시설</p> <p>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p> <p>(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p> <p>(ii)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p> |
| <p>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p> | <p>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p> <p>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li> </ul>   |

| 조 문                                | 내 용   |
|------------------------------------|---|
|                                    | <p>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를 원칙으로 함</p> <p>⑦ <u>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u></p>  |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 <p>①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함</p> <p>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p> <p>*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p> <p>③ <u>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u></p> <p>④ <u>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u></p> |

## 5. 소결

앞의 실태조사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업무환경, 업무상 재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일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공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것과 달리 보육교사 대상 조사에서는 기관유형, 종사자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산업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을 살짝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 중 직장어린이집 근로시간이 가장 긴 약 8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으나 휴게시간이 없는 기관도 약 1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이 가장 짧은 기관 유형은 민간 및 가정으로 나타났고, 기관 유형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장소는 교사실이나 휴게실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게장소가 없는 어린이집도 28.7%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장소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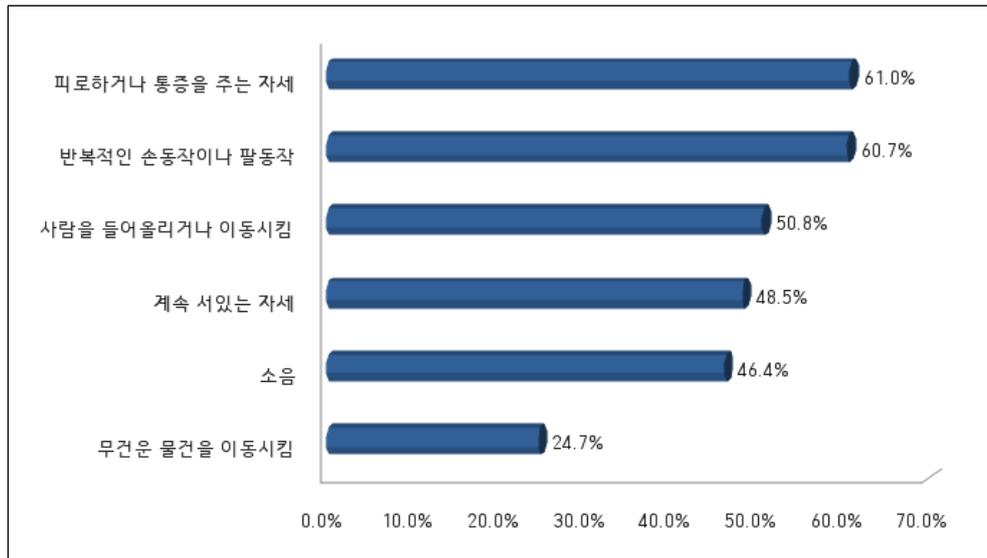
시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갖추기 어려웠다. 한달 평균 야근 일 수는 3.65일이었고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절반이었다.

② 근로계약 유형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정규직이었지만 계약기간은 약 90% 정도가 1년 정도였다. 근로계약서는 거의 대부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정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항목은 4대보험, 임금, 근로시간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연월차 수당, 직책수당, 특별 수당에 대해서는 명시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입된 보험 및 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공제회 보육교직원 공제가 66.3%, 산재보험 57.9%, 민간보험 40.6%가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약 9.4%가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잘 제공받지 못하는 비율이 약 40%였다. 가장 많이 제공받은 정보는 스트레스 예방정보였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정보에 대해서는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은 약 절반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였다. 직업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6.5%였다.

④ 위험요인의 노출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중 절반 이상 소음에 노출된 교사의 비율은 46.4%,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61.0%,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은 50.8%,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은 24.7%, 계속 서있는 자세 48.5%,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60.7% 정도였다. 소음은 기관 규모가 클수록 유아반인 경우 노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관련 위험요인 등은 영아반 보다는 유아반에서 노출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난 부모를 상대하는 시간이 근무시간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1%였으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화가난 부모를 오래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고 있거나 짜증난 영유아를 상대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0%였다. 정서적 불안 상황에 근무시간 절반이상 노출되는 비율은 34.2%였다.



[그림 VI-1] 근무시간 절반 이상 노출 비율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이 울거나 짜증나는 것을 달래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이로 인해 소음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근골격계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업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에 대해서 걱정한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을 하지 못한다에 대부분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원할 때 휴식 취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약 60% 정도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⑥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감정도동을 나타내는 감정을 숨기고 일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80% 이상이 감정을 숨기고 있다고 응답하여 감정도동에 대부분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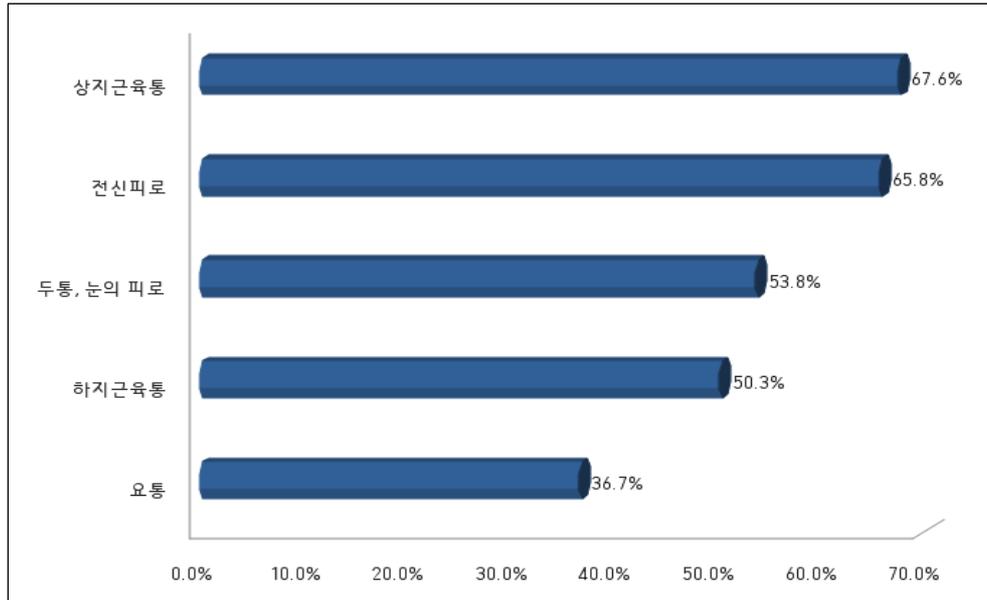
⑦ 폭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언어폭력을 당한 적있다가 16.6%, 모욕적 행동을 당한 적있다가 15.8%였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폭력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모욕적 행동 주체

는 원장/직장동료, 부모가 각각 절반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원하지 않은 성적관심, 위협 등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업무상 건강상에 문제를 조사한 결과 상지근육통을 앓고 있다가 6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신피로 65.8%, 두통, 눈의 피로 53.8%, 하지근육통 50.3%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증세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디스크의 전조 증상인 요통을 앓고 있는 비율도 36.7%였다.

⑨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 업무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의 문제로 결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3%였다. 또한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0%였다. 몸이 아픈데 나와서 일한 평균 일 수는 약 9일이었고 절반가량이 대체교사 부재로 인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⑩ 전체 보육교사 응답자 중 15.3%가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나 되었다.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응답한 전체 사고 105건 중에 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부딪힘이 22.9%, 넘어짐이 17.1%,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이 13.3%였다. 업무상 재해 치료기간은 4일 미만이 58.1%, 4-14일이 34.4%, 15일 이상이 9.5%였다.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은 개인 부담한다는 비율이 약 76%였으며 산재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였다. 업무상 재해 후 근무 지속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통원치료 받으면서 근무 한다가 7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가 후 복직 19.0%,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가 8.6% 순이었다.



**[그림 VI-2] 업무상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⑪ 현재 어린이집에서 업무상 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큰질병/사고만 산재처리한다 비율이 14.3%였고 산재 보험 처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⑫ 근무시 병원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원장의 눈치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⑬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는 근골격계 위험 요인, 소음 등에 노출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무상 상하지 근육통, 전신피로 등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이 요통 등 근골격계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1번이라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산재처리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VII.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

### 1. 산재보험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 1)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재율

2014년~2018년 5년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평균 약 500건 정도이며, <표 VII-1>과 [그림 VII-1]와 같다. 이 기준으로 산재통계율을 산출하면 보육통계상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0.19, 산재통계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0.21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급여청구 건수는 매년 평균 약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표 VII-1>과 [그림 VII-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집 공제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보육교사 대상 상해보험 급여 건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급여청구 건수가 15만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급여건수는 총 14만건<sup>90)</sup>으로 지급율이 약 94%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보육교직원 대상 상해보험 상품은 일반 의료실비보험과 청구요건, 구비서류가 동일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 건수는 실 지급된 급여청구 건수로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산재율을 계산하면, 보육통계 종사자 수를 모수로 하였을 경우 0.94, 산재통계 종사자 수를 근거로 하였을 때는 1.05로 2018년 발표한 산재율 0.5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미가입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약 45%를 된다는 것을 추정하였을 때 비전형적인 산재은폐가 되고 있는 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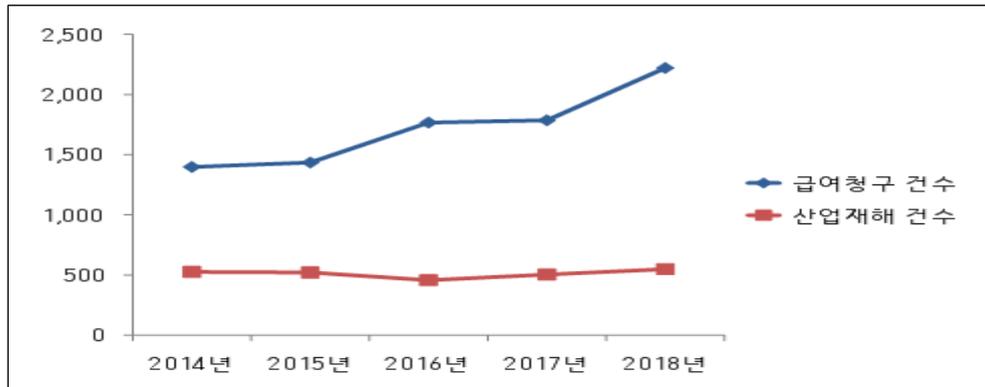
90) 헬스인뉴스, 2019. 11. 04일자 :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0>

**<표 VII-1> 2014년~2018년 산업재해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상해 처리 건수**

(단위: 건수, (%))

| 연도   | 업종(대)               | 업종(중)               | 보육시설 운영업 산재<br>건수(%) |             | 계      |
|------|---------------------|---------------------|----------------------|-------------|--------|
|      |                     |                     | 산재                   | 공제회         |        |
| 2014 | 기타의 사업<br>(157,861) | 보건 및 사회<br>(15,273) | 452(24.4)            | 1,398(75.6) | 1,850  |
| 2015 |                     |                     | 467(24.6)            | 1,435(75.4) | 1,902  |
| 2016 |                     |                     | 408(18.8)            | 1,767(81.2) | 2,175  |
| 2017 |                     |                     | 444(19.9)            | 1,786(80.1) | 2,230  |
| 2018 |                     |                     | 508(18.7)            | 2,221(81.3) | 2,729  |
| 계    |                     |                     | 2,279(21.0)          | 8,607(79.0) | 10,886 |

\* 자료출처 : 산재통계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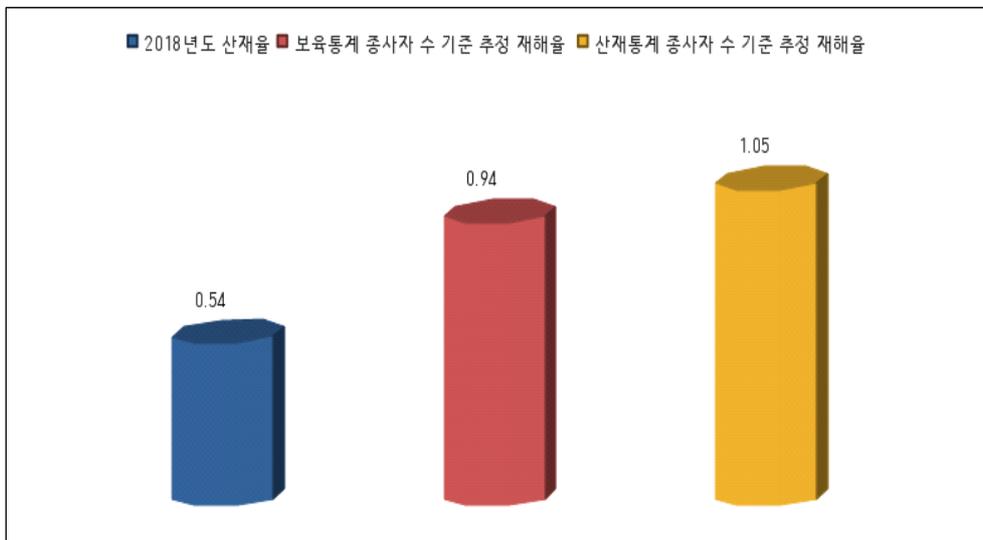


**[그림 VII-1] 연도별 급여청구 건수 및 산업재해 건수**

**<표 VII-2> 2018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추정 산재율 현황**

(단위 : 건수, %)

| 구분                               | 보육통계 종사자 수 | 산재통계 종사자 수 |
|----------------------------------|------------|------------|
| 종사자수                             | 294,249    | 263,347    |
| 산재건수                             | 549        |            |
| 산재율                              | 0.19       | 0.21       |
|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 건수<br>(비전형적 산재은폐 유형) | 2,221      |            |
| 추정 산재율(공제회 포함)                   | 0.94       | 1.05       |



**[그림 VII-2] 2018년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추정 산재율**

2) 추가적인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

더 많은 비전형적인 산재은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질병, 사고로 대체교사를 지원한 건수이다. 2017년 7월까지 질병 및 사고를 사유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진 않았으나

2017년 8월부터 지원해 준 결과 2018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7,194건으로 증가하였다. 물론 질병 및 사고로 신청한 건수가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으나 산재통계 건 수 및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자료이고,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 모두 대체교사 건수를 모두 지원하지 못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로 밝혀진 것 이외에 산재 관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VII-3> 연도별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 신청건수 현황**

| 지원사유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br>8월~12월 | 2018<br>1월~12월 |
|-------------------------|--------------|-------|-------|-----------------|----------------|
| 본인 질병 등<br>사고<br>(신청건수) | 해당 사유로 지원 안함 |       |       | 1,117           | 7,194          |

출처: 육아종합지원센터 통계자료

### 3) 소결

이렇게 산재보험이 아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는 산재가 많은 이유는 ① 보육교사 본인들이 상해 즉 재해시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해야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② 보육교사가 업무 중 다쳤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실비보험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점, ③ 산재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④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인해, 해고 위험이 있어서, 이야기 조차할 수 없는 점, ⑤ 산재보험은 오래 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은 급여 청구시 3일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 ⑥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만든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실비보험)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상해(산재)시

산재보험이 아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즉 보험 청구 이원화 등으로 앞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2. 정부 부처 요청사항

### 1) 고용노동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급여 청구하여 지급된 산재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를 통해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전국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보육통계(2018년 기준)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수 294,249명과 산재보험통계(2018년 기준)상 263,347명이므로 30,902명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종사자수를 파악하여,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을 찾아서 산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처리건수와 연계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산업재해 건수를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보건복지부

현재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안심보육정책 중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보장부분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과 관련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과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인한 이원화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가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보상 신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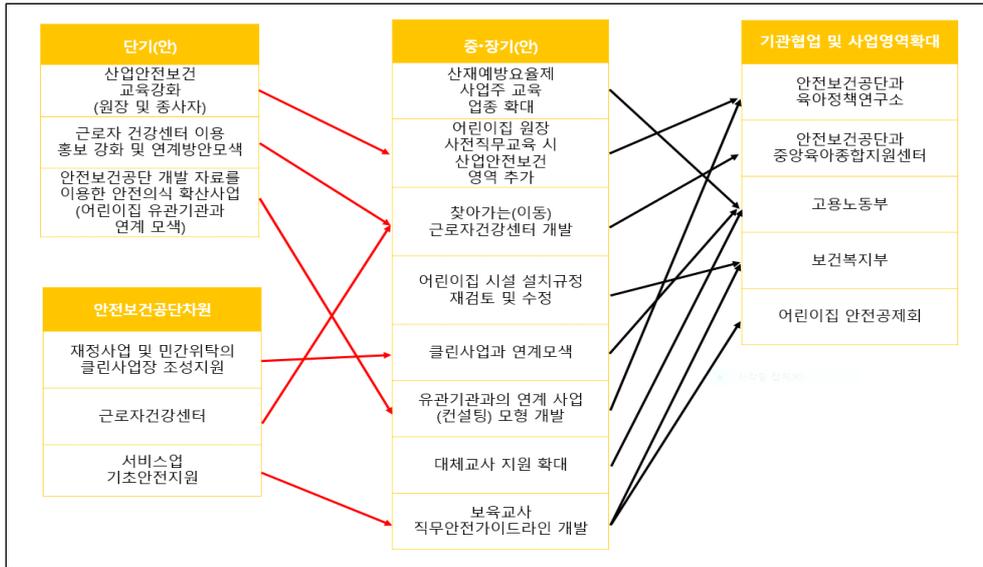
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부처 간 조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육통계와 고용노동통계상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사업장수 보육통계에서는 39,171개소이며, 고용노동통계에서는 40,896개소 약 1,725개소 차이가 발생하며, 관련 종사자수도 보육통계 294,249명, 고용노동통계 263,347명으로 약 3만 명이라는 수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 3.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특성 중에서 여성 종사자가 약 95%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現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VII-2]와 같이 단기(안), 중·장기(안), 안전보건공단 차원의 지원, 기관협업 및 사업영역 확대 등으로 체계적·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림 VII-2]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로드맵

#### 4. 안전보건공단 차원

##### 1) 단기(안)

######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원장 및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적용이 제외되어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나왔으나 실제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교육은 어린이 안전교육, 아동학대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면담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이집 원장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장 및 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린이집이 약 40,000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아동학대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사 직무교육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하여 건강보험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각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육교사 대상 직무교육 혹은 아동학대 교육 시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2) 재정사업 및 민간위탁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대상 중에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을 지원대상으로 편입시켜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안전시설, 산재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이집에서도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넘어짐 등이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클린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보육교사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아동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클린사업을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안전상의 조치품목, 작업환경 개선품목은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품목에 대한 조사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3) 근로자건강센터 활용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근로자가 대상임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해당됨에 따라 사업대상에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1개소)에서 수행하는 건강상담(작업 관련 뇌심 및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서비스업 기초안전지원

서비스업(기타의 사업) 사업장의 중상해 재해 다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안전검점을 수행하고 위험설비, 장소별 안전수칙 전파 및 해당 직종별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재해예방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기타의 사업)이 대상이고, 보육시설 운영업도 해당됨에 따라 사업대상에 편입시켜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5) 보육교사 직무안전가이드라인 개발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들어놓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가 있지만 현장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누락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은 영아반, 유아반 교사로 근무되고 각 반별로 업무와 위험요인이 다름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많은 영아반이기 때문에 영아반과 유아반을 순환해서 근무해야한다는 내용, 가장 중요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안전하게 앉는 법 등에 정보 등이 빠져 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개발한 뒤 어린이집에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 2) 중·장기(안)

### (1)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 홍보 강화 및 연계방안

심층면담 결과 보육교사 대부분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이용 가능대상이다. 특히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서비스하는 근골격계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예방실 등 보육교사의 직업성 질환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이 필요한 보육교사를 발굴하여 연계해주는 정책방안도 추진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 (2) 안전보건공단 개발 자료를 이용한 안전의식 확산 사업(어린이집 유관 기관과 연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보육교사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감정노동예방 자료 등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 모든 보육교사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보육교사 근로자 안전교육관련 자료도 전무하였다. 또한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높은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는 감정노동 예방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업종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진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영역확장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관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예방관련 자료 배포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3)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업종 확대

어린이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노동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사회복지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를 사회복지사업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 (4)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시 산업안전보건 영역 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과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보건복지부, 2014), 보육교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심층면담과 조사 결과에 나왔듯이 원장의 산재관련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장으로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직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의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5) 찾아가는(이동) 근로자건강센터 개발

조사결과에서 나왔듯이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식사 지도, 낮잠 지도 등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병원 방문이 힘든 보육교사를 통해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센터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교사 이외에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 해소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설치규정 재검토 및 수정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및 설치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은 영유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성인인 보육 교사의 안전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의 비상계단 설치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용할 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린이집의 사무용품 등의 구비 규정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성인용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설치, 성인을 위한 사무공간 설치 규정 등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설치규정 재개정시 종사자 안전이 고려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기관 협업 차원**

1) 안전보건공단과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보육실태조사(조사 주기 3년) 수행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및 보건분야의 전문 인력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

2) 안전보건공단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간 협업을 통해 보육교직원 상담 즉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상담 건수 등에 대한 데이터 교류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컨설팅) 모형 개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 모형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성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어린이집안전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대상 CARE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 컨설팅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인정 등과 결합한 사업 또는 컨설팅이 개발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4) 대체교사 지원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지원 부족이었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18년부터 개인 건강과 질병으로는 대체교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교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의 최대 일 수가 10일이기 때문에 실제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 대체교사 지원 사업 유형에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VIII. 결 론

최근 서비스업종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업종 중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통계청) 기준 전국에 약 40,00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이 성행(盛行)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만 2018년(통계청) 기준을 약 3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보육 종사자(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및 폭행과 관련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학대 및 아동 폭행이 발생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 종사자(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 이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보육 종사자(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에 논의이나 연구가 없던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양적 팽창과 종사자 증가 그리고 대부분이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약 15개의 관계 법령과 약 8개의 소관부처 등에서 소관업무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의 주체는 보육(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보육(영유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제만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육 종사자(보육교사)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며, 기초 연구라 할 수 있다.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보육교사)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원인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에 관한 이론적 고

찰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안전 관련 법령,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재해 현황,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종사자 중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과 함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원 로드맵 등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움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근로조건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1. 권경숙·박지영,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영아 안전교육,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201014(4), 7-31.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제75차 본위원회 중간보고 안건, 2011.
3. 김동현·이재모,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4;18(4), 419-435.
4. 김유선,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산업관계연구, 2009;19(2), 1-25.
5. 김은숙,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6.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1.
7.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2009.
8. 김인정. 보육시설 안전교육·안전사고 실태와 담임교사들의 안전교육 범위와 방법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2;14(4), 125-136.
9. 도남희·이윤진·조아라·박은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5.
10. 도남희·조혜주·최종화, 보육교직원(건강·영양·안전담당) 직무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4.
11. 박찬임·이승렬·윤자연·신현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3.
12. 방해순·조옥선,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직무소진과

-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 2017;21(3), 309-332.
1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8.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6.22.), 어린이집 교사의 수미일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15. 서문희·이미화·구미진.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 환경 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센터, 2006.
  16.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8;44, 86-116.
  17. 안세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1-12.
  18. 엄세진. 보육교사의 안전지식과 안전태도, 안전실천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2013;81, 111-128.
  19. 윤소영, ILO의 가사근로자 협약(CDWDW)비준을 위한 한국여성돌봄노동의 변화: 한국 YWCA돌봄사업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0. 윤숙현·이미정.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14-35.
  21. 윤자영·김경희·최영미·김양지영, 돌봄서비스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1.
  22. 이경미. 보육교사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23. 이미정·강란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실태 개선을 위한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2011;11(3), 27-44.
  24. 이은주·양성은.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이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2;;30(2), 121-136.
  25. 임진석,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ICT 융·복합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2, 184-186.
  26.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공제 약관.

27.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16, 86.
28. 정경진·윤혜미.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정감 및 이직 의도. 한국영유아보육학, 2016;96, 129-152.
29. 정명선.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4;26(1), 147-166.
30. 최윤이·이재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물리적 신변안전 환경실태와 개선책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007;49, 269-287.
31. 최효미·조미라·예한나·이택면·김영숙·이재경·권도연. 보육교사 휴게시간 활용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32. 황덕순·윤자영·윤정향,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2.
33. 황옥경.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12;8, 249-272.
34. 한국환경공단, “어린이 실내활동 공간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2010 .11, 한국환경공단.
35. 보건복지부,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10, 보건복지부
36.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 2007. 11, 여성가족부.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단체급식의 품질개선 연구”, 2007. 11, 식품의약품안전처.
38.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안전 심층조사 연구”, 2007. 10, 여성가족부
39.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2006. 12, 여성가족부
40. 육아정책개발센터, “지역사회 영유아 건강영양안전 지원 시범사업”, 2006. 12, 육아정책개발센터
41. 여성부, “보육시설 안전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정책에 대한 연구”, 2004. 12, 여성부

42. 대통령비서실, “어린이 안전점검활동 평가 및 실천전략” 2004. 02, 대통령비서실
43.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안전매뉴얼 연구”, 2008. 11, 보건복지부
4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통학, 학원버스운전자를 위한 주머니 속의 교통안전”, 2007. 0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45. 학교보건진흥원, “유치원 환경위생 관리 매뉴얼”, 2007.06, 학교보건진흥원
46.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지침”, 2006. 06, 경찰청
47. 서울소방방재본부, “안전교육 강사를 위한 유아용 소방안전교범”, 2006. 01, 서울소방방재본부
48.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운영 매뉴얼 및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보호”, 2005. 01, 서울특별시
49. 여성부, “보육시설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교육 프로그램”, 2004. 09, 여성부
50. 서울특별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2004. 09, 서울특별시
51. 교육인적자원부,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2003. 12, 교육인적자원부
5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5.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2012.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형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2)”, 2008.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 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2007.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 취약계층 분석 : 2014년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중심으로”, 2014.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취약계층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 특성 연구”, 2011.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취약계층 근로자의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인식”,

2008.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재취약계층 실태분석” 2006. 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 국외문헌

60. Ackerman, D. J. (2006). The costs of being a child care teacher: Revisiting the problem of low wages. *Educational Policy*, 20(1), 85-112.
61. Child Australia(2012). *Work Health and Safety In Education and Care Services*, p. 10.
62. Budig, M. J., & Misra, J. (2010). How care work employment shapes earnings in cross 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41-460.
63. England, P., Budig, M., & Folbre, N.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4), 455-473.
64. Fair Work Ombudsman(2006).
65. Folbre, N. (2006). Measuring care: Gender, empowerment, and the care econom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2), 183-199.
66. Northern Kentucky Health Department(2015). *A Guide to worksite wellness and safety in the child care setting*, p 44.
67. Razavi, S., & Staab, S. (2010). Underpaid and overworked: A cross national perspective on care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07-422.
68.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Employees(State) Award, Fair Work Australia; Fair Work Ombudsman(2010).
69. Social, Community, Home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Industry Award 2010, Fair Work Australia.
70. WorkCover NSW(2012), *Guide to the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Act*, Safety Work Australia.

71. WorkCover QUEENSLAND Queensland Government hom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Electrical Safety Office Workers' Compensation Regulator.

### 3. 전자매체자료

72. <http://www.world-psi.org/en/swedish-municipal-workers-union-kommunal>

73. <http://www.csia.or.kr>

74.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

75. <https://www.ggdghor.nl/english/>

76. <https://www.mhlw.go.jp/index.html>

77. <http://www.pref.okayama.jp/page/592169.html>

78. <https://www.childcaredutchess.org>

79. <https://www.naeyc.org/academy/files/academy/file/AllCriteriaDocument.pdf>,  
P.71-97.

80.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81.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82. <http://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0>

## ABSTRACT

Study on safety management blind spot project and measures to ensure worker safety management system (1)

Jin-Seok Lim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lated laws and system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of child care worker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degrees of exposure to risk factors and unhealthy symptoms of child care worker.

Safety and health related laws for child care worker include the Child Care Act, the Child Welfare Act, the Building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Safety Management of Fire Facilities,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relevant laws, child care center were excluded from the regu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such as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head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and installation regulations for child care centers were legislated without considering child care workers, so they would be exposed to dangerous environments.

## Methods

Safety and health related national projects to protect child care centers have been carried out by child 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Child Care Support Center, but it has mainly been functioned to protect children excluding child care center worker. There are 3,158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last five years, average 500 accidents occurring every year. The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 in child care center account for about 17% of other health and social welfare industry. In addition, the number of claims through child 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s around 2,000 case per year.

The most occupational accidents occur in worker aged 40s. The most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 were falling down on the floor and surface. Also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falls, traffic accident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rough in-depth interview. Recently, it has been shown that child care workers suffer from stress caused by CCTV and emotional labor. In addition, 15% of the respondents from working condition survey for child care worker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occupational accident, but mostly did not cla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urance.

## Results

We suggest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tasks to improve system for protecting child care workers including strengthe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 care workers,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projec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 Keyword

Child Care Worker, Child Care Center, Coverage of Occupational Safety



문3. 귀하의 하루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주당 당직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   |                      |   |
|--|-----------------|--------|--------------------------------------|----------------------|----------------------|----------|----------------------|---|----------------------|---|
| 1) 1일 총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br>(* 1일 총 근로시간은 1-1) 보육시간 + 1-2) 보육준비 시간) | 하루              | 시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분                    |          |                      |   |                      |   |
| 2) 1일 총 휴게시간   | 하루              | 시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분                    |          |                      |   |                      |   |
| 2-1) 점심식사 시간<br>(* 영유아와 별도 공간에서 따로 식사하는 경우에만 작성)                 | 하루              | 시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분                    |          |                      |   |                      |   |
| 2-2) 휴게시간<br>(* 영유아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                      | 하루              | 시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분                    |          |                      |   |                      |   |
| 2-3) 휴게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br>(* 휴게시간이 1일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휴게시간1           | 시작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종료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  | 휴게시간2           | 시작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종료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  | 휴게시간3           | 시작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종료시간 | <input type="text"/> | 시 | <input type="text"/> | 분 |
| 2-4) 휴게 장소   | 1. 교사실<br>4. 외부 | 2. 휴게실 | 3. 별도의 휴게장소 없음<br>(기타(적을 것 : _____)) |                      |                      |          |                      |   |                      |   |
| 3) 당직 근로시간<br>(* 초과근무 시간 포함, 주당 평균 시간으로 응답)                      | 주당              | 시간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                      |   |

문4. 귀하가 현 어린이집과 체결한 계약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정규직 계약
- ② 비정규직 계약(기간제) (→ 문4-1로)
- ③ 비정규직 계약(파트타임, 단시간 근로계약) (→ 문4-1로)

문4-1. 만일 비정규직 계약이라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④ 2년 이상

문5.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① 예 (→ 문5-1로)
- ② 아니오

문5-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다음의 내용 중 명시되어 있었던 항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4대보험
- ② 임금
- ③ 근로시간
- ④ 휴일
- ⑤ 연월차수당
- ⑥ 직책수당
- ⑦ 특별수당(명절)

문6.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및 공제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 ② 어린이집공제회 보육교직원공제
- ③ 민간 보험(의료실비, 생명보험 등)
- ④ 가입된 보험이 없다

문7.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근로계약 체결시
- ② 근로계약 체결 후
- ③ 근무 중
- ④ 전혀 없음

문8. 귀하의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습니까?

- ① 매우 잘 제공받는다 (→ 문8-1로)
- ② 잘 제공받는 편이다 (→ 문8-1로)
- ③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편이다
- ④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 ⑧ 모름/무응답
- ⑨ 거절



문14. 다음 각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업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문 항   | 항상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A.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한다<br>(결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B.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C. 업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D. 내가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E.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F. 나는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5.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 15-1. [있었다면] 그 문제는 귀하가 하시는 일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 문 항                                   | 문15. 건강상 문제 |    | 문15-1. 업무상 관련 여부 |     |
|---------------------------------------|-------------|----|------------------|-----|
|                                       | 있다          |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 A. 청력 문제                              | ①           | ②  | ①                | ②   |
| B. 피부 문제                              | ①           | ②  | ①                | ②   |
| C. 요통                                 | ①           | ②  | ①                | ②   |
| D.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윗몸의(상지) 근육통 | ①           | ②  | ①                | ②   |
| E.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아랫몸의(하지) 근육통      | ①           | ②  | ①                | ②   |
| F. 두통, 눈의 피로                          | ①           | ②  | ①                | ②   |
| G. 손상(사고로 다짐)                         | ①           | ②  | ①                | ②   |
| H. 우울감                                | ①           | ②  | ①                | ②   |
| I. 불안감                                | ①           | ②  | ①                | ②   |
| J. 정신 피로                              | ①           | ②  | ①                | ②   |
| K. <b>불면증 또는 수면장애</b>                 |             |    |                  |     |
| K. 기타( )                              | ①           | ②  | ①                | ②   |

문16.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업무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16-1. [있었다면] 그 일은 누구로부터 당한 것입니까?

| 문 항             | 문16. 업무 수행 중 당한 일 |    | 문16-1. 주체 |      |
|-----------------|-------------------|----|-----------|------|
|                 | 있다                | 없다 | 원장/직장동료   | 부모 등 |
| A. 언어폭력         | ①                 | ②  | ①         | ②    |
| B.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 ①                 | ②  | ①         | ②    |
| C. 위협           | ①                 | ②  | ①         | ②    |
| D. 모욕적 행동       | ①                 | ②  | ①         | ②    |

문17.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건강과 관련한 문제로 결근한 날이 모두 며칠입니까?

( )일

문17-1.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근한 날은 며칠입니까?

|                               |      |
|-------------------------------|------|
| A. 업무와 관련한 사고                 | ( )일 |
| B. 업무 때문이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는 제외) | ( )일 |



문21. 귀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및 사고를 주로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① 건달만한 질병은 그냥 참고 넘어 간다
  - ②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모든 질병·사고에 대해 교사 본인이 자비로 처리 한다
  - ③ 산재처리를 안하고 어린이집에서 치료비 및 공상처리를 한다
  - ④ 작은 질병·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질병·사고는 산재처리 한다
  - ⑤ 산재보험으로 처리 한다
  - 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공제받는다
  - ⑦ 기타( )
- ⇒ 항목 순서 변경

문22.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병·의원 이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치료비 부담
- ② 병원 갈(치료할) 시간이 없음
- ③ 가까운 곳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음
- ④ 원장(시절장) 및 동료 선생님의 눈치
- ⑤ 기타( )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책임자 : 임 진 석 (산업안전연구실 과장)

연 구 원 : 이 성 주 (산업안전연구실 실장)

연 구 원 : 양 정 열 (산업안전연구실 부장)

연구보조원 : 김 예 나 (산업안전연구실 위촉)

## 〈〈연 구 기 간〉〉

2019. 1. 1 ~ 2019. 11. 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  
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관리 체계  
확보 방안 연구(1) -보육시설 운영업을 중심으로-**

2019-연구원-1630

---

발 행 일: 2019년 11월 30일

발 행 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고 재 철

연구책임자: 산업안전연구실 임 진 석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052) 703-0846

F A X : (052) 703-0334

Homepage: <http://oshri.kosha.or.kr>

---